

# 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會會議錄

第28回平昌郡議會

第 4 號

平昌郡議會事務課

日時 : 1994年 12月 1日(木)10時17分

場所 : 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會會議場

議事日程 (第4次 監査活動)

1. 1994年度行政事務監査實施의件

審査된 案件

1. 1994年度行政事務監査實施의件(繼續)

가. 産業課

나. 農村指導所

다. 畜産課

라. 山林課

(10時17分監査實施)

○ 委員長 李致玉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평창군에 대한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 계속할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산업과, 농촌지도소 축산과, 산림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당부드리며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1. 1994年度行政事務監査實施의件(繼續)  
(10時19分)

○ 委員長 李致玉 :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견을 계속 상정합니다.

가. 産業課

먼저 산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94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의 엄정한 감사수행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4항에 의거하는 것으로 만일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時漢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94년도 행정사

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1994년 12월 1일

산업과장 김 시 한

( 산업과장 서명날인후 선서서 제출)

○ 委員長 李致玉 : 다음은 감사대상 사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時漢 : 산업과 9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 끝에실음 )

○ 委員長 李致玉 : 산업과장님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容泰 委員 : 박용태 위원입니다. 농업진흥지역 현황에 대해서 진흥지역은 매년 실시합니까? 몇년만에 합니까? 고시를.....,

○ 産業課長 金時漢 : 고시는 한번하면 끝납니다.

○ 朴容泰 委員 : 2년에 걸쳐서 했잖아요?  
요?

○ 産業課長 金時漢 : 그것은 추진기간이 그렇게 걸린거지요.

○ 朴容泰 委員 : 변동율 할수가 없습니까?

○ 産業課長 金時漢 : 변동사항이 있으면 법에 근거해서 해제요구를 할수가 있습니다.

○ 朴容泰 委員 : 그렇게 해야만 할수 있다, 그러면 불공평하게 진흥 지역이 많아서 주민들의 여론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물어본겁니다.

다음은 성장작목 종합시범단지 소득이 금년에 다공제하고 얼마가 나왔다고 그랬지요?

순소득이 2억8,200만원입니까?

○ 産業課長 金時漢 : 네.

○ 朴容泰 委員 : 일체 공제할것은 다 공제하고 순소득이지요?

○ 産業課長 金時漢 : 네.

○ 朴容泰 委員 :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더 장려시킬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 産業課長 金時漢 : 지금은 없습니다.

○ 朴容泰 委員 : 이것은 정책사업입니까?

○ 産業課長 金時漢 : 네.

○ 朴容泰 委員 : 농어민 후계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후계자를 뽑는것 아닙니까?

○ 産業課長 金時漢 : 네.

○ 朴容泰 委員 : 선정과정이 말입니다. 농어민 후계자들 보면 부실이 많이 나오는데 이주하거나 또 자금받아서 떨어되거나 이런 사람들의 회수조치는 어떻게 되는겁니까?

○ 産業課長 金時漢 : 그것은 부실후계자를 조사를 합니다. 1년에 한번씩 조사를 해가지고 부실후계자에 대해서는 자금회수조치를 합니다.

○ 朴容泰 委員 : 선정과정을 보면 채점에 의해서 하는데, 그사람을 채점할때 보면 본인의 성실도라던가 이런것은 채점에 들어가는 것이 없고 학교를 어디나 왔느냐, 몇평을 짓느냐 이런것만 가지고 채점을 하는데.....,

○ 産業課長 金時漢 : 영농의욕도 봅니다. 그런데 실지는 영농을 하다보면 부실후계자도 선정을 하는데 신중을 기하는데도 부실후계자가 하다보면 발생하는수가 있습니다.

○ 朴容泰 委員 :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1읍면 1특화 사업이라 해가지고 방림면에 보면 산채가공시설은 몇%가 되었다고 했습니까?

○ 産業課長 金時漢 : 이것은 건물을 지어서 산채가공 기계를 들여놔서 산채 가공만 방림에서 하는 것이고 미탄은 산채 및 산초재배 단지를 조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탄에는 비닐하우스 1,800평을 다짓고 현재 산초를 2말을 200평에다 파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에있는 산초를 채취해다가 심는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朴容泰 委員 : 그럼 방림에는 가공 시설공장을 짓습니까?

○ 産業課長 金時漢 : 네.

○ 朴容泰 委員 : 산채를 뜯어다가 가공하는.....,

○ 産業課長 金時漢 : 네.

○ 朴容泰 委員 : 위치가 어디입니까?

○ 産業課長 金時漢 : 계촌 2리 입니다.

○ 朴容泰 委員 : 완료가 아직 안되었군요.

○ 産業課長 金時漢 : 네.

○ 朴容泰 委員 : 그다음 농기계 반값 공급은 경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8종이라 했는데 경운기는 반값공급을 해주는데 그외에 가격이 비싼 농기계는 반값공급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 産業課長 金時漢 : 제목이 농기계 반값공급인데 200만원 기준으로 해서 200만원에 100만원만, 그러니까 소형기계, 소농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 사항입니다.

○ 朴容泰 委員 : 비싼것은 반값이 안되지요?

○ 産業課長 金時漢 : 100만원 이상은 안해주는 거지요.

○ 朴容泰 委員 : 반값공급이라 하니까 농민들은 무조건 반값해주는가 하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상입니다.

○ 李致玉 委員 : 이치옥 위원입니다.

군정질의나 기타 다른때에는 말씀드릴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시기에 이런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서 산업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모든 특화사업, 또 특화사업외에 기계화 영농단 구성이라던가, 기타 여러가지 그런 산업과에서 농민을 위한 많은 사업을 하시고 도와드리고 있는데 이것을 예산에다가 무더기로 어떤것을 보니까 평창군 이래 가지고 농민지원 해가지고 무더기로 세워 가지고 참 속된말로는 고운면은 더주고 미운면은 한푼도 안주고 사업을 안하는데 난 그렇게 이해를 하겠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을 예산에다가 전부 진부면 미탄면, 어느면 해가지고 지정을 해가지고 기본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지금 현황에도 보면 상당히 치중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균형발전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골고루 무슨 사업을 했으면 참 좋을것 같고, 또 산업과에서나 읍면사무소에서 어떤 충분한 조사

를 하고 여론수렴도 하고 신청도 받고 하겠지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두번째는 청과물 유통센터, 도암면에 지은것, 이것은 예산심의할때도 시끄럽게 떠들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습시다만, 원예조합이나 농업협동조합, 다시말해서 단위조합의 재정자립도가 또는 돈이 없는면은 평생가도 이런것 한번 못한다, 그러니까 원예조합에서 로비를 해가지고 미리 일을 전부 만들어 놓고 예산도 내려오게 만들어 놓고 그런다음에 국도비다 또 도비다 한다면 군비를 포함하도록 전부 만들어 놓고 설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전에도 저희들이 준공식에 가서 그런얘기를 했지만 평창군청과물유통센터가 아니고 도암면유통물센터란 말입니다. 내생각에 이것을 이런식으로 앞으로 계속하지 말고 우리 평창군에 고속도로변 센터가 정말 장평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각 단위조합에다가 이리이러한 사업을 하니까 이것을 본군에서도 책임

성 있는 분들하고 농협군지부 지부장님 하고 단위조합장님 하고 연석회의를 해가지고 너희들 조합에서 이리이러한 것을 평창군에 하니까 5,000만원씩 내라던지 1억씩 내라던지 해가지고 이것을 자부담하는것을 그렇게 해가지고 센타라면 중간을 얘기하는건데 장평에 세워야 합니다. 김종영 위원님께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이걸 원칙을 얘기한겁니다. 기 세워진건데 앞으로는 이런시설을 할 때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우리 미탄에서 배추실고 도암에 가나요? 못갑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야지, 된다고 좋다고 그렇게 아니란 말입니다.

도암에 못갑니다. 그러니까 장평쯤 지어놓으면 거기다가 보관했다가 실고 고속도로에 올라설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편중을 해가지고 하는것처럼 기분이 든다고요. 앞으로 할때에 신중을 기해서 어디 중간에다 지어놓으면 평창군에서 전체가 이용할수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 産業課長 金時漢 : 네, 알았습니다.

○ 李致玉 委員 : 그리고 관광농원 말이지요. 이것은 신청을 어떻게 받아가지고 하는건데 보면 방림에 누가 했는데 특혜를 받았다고 소문이 나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좀 해주십시오.

○ 産業課長 金時漢 : 관광농원은 농어촌발전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광농원 계획서를 전부 받았습니다. 지금현재 25개소가 있습니다.

신청받아 놓은것이.., 거기에 의해서 연차별로 저희들한테는 얼마가 배정이 될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배정에 의해서 점수를 줘서.....,

○ 李致玉 委員 : 그러니까 받기는 평창이고 도암이고 진부고 다 받으니까?

○ 産業課長 金時漢 : 네, 전부 받은것이 있습니다. 25개소 입니다.

○ 李致玉 委員 : 그런데 그쪽은 왜 안한다고 합니까?

○ 産業課長 金時漢 : 25개소를 받아가지고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사항 입니다. 그래가지고 94년도에

는 김재호가 선정이 되었고, 그다음 연차적으로 나는 95년도에 하겠다, 96년도에 하겠다, 97년도에 하겠다, 이런 원하는 년도에 받아놓은것이 있습니다.

○ 李致玉 委員 : 알았고, 본위원은 어떤생각을 했나하면 관광농원하면 관광객들이 와서 구경을 하면 예를들어 용평리조트에 갔다가 나오다가 어디에 들려서 어디로 들고 이렇게 하면 평창군을 찾는 관광객이나 농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호감이 가도록 할텐데, 예를들어 진부 오대산보고 관광농원 어디로 들고 하기는 불편할것 아니냐, 그러니까 평창군을 찾게 할려면 먹거리도 잘만들고 이렇게 해서 연계를 시킬것이 좋을텐데 방림에 있고 용평에 있고 그러니까 잘안될것 같아서, 자세히 내용을 몰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朴容泰 委員 : 봉평의 그사람은 지원을 안받고 했겠습니까?

○ 産業課長 金時漢 : 그것은 자력입니다.

○ 郭文春 委員 : 자력으로 할수있는

사람은 마음대로 할수 있습니까?

○ 産業課長 金時漢 : 아닙니다. 그것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입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25개소를 한거번에 다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실지 강원도의 배정물량이 1년에 7개내지 5개 이정도 밖에 배정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군에 몇개가 돌아 올려는지는 몰라도 그것은 산발적인것을 지양하기 위해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조금 완화가 될것 같습니다.

○ 郭文春 委員 : 예산때문에 강원도에 몇동 떨어지면 각군으로 배정하고 그러는 모양인데 여러조건이 맞아가지고 자력으로 할수 있다면 우선권을 줘야 하잖아요?

○ 産業課長 金時漢 : 그러니까 매년 농수산부에서 통제를 하는거지요.

우리가 올리면 도에서도 농어가 심의회원에서 결정해주는 거지요.

우리가 만약 3개 올렸다 하면 다른시군에서 올린것이 전부 21개다 이정도 되면

이중에서 5개를 뽑는다 하면 평창이 1개 뽑힐런지 올해 안뽑힐려는지는 모르지요

○ 朴容泰 委員 : 타도에 나가보면 웬만한곳은 관광농원입니다.

○ 郭文春 委員 : 그럼 그것은 농민들이라야 하고 다른사람은 할수가 없는 겁니까?

○ 産業課長 金時漢 : 네.

○ 金鍾永 委員 : 김종영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나온것중에서 공동퇴비 제조장이 지금 94년도에 2,000톤 생산계획이라 했는데 원료구입하는 관계에서 어려운점 하고 판매가격 문제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時漢 : 요전에 시료를 채취를 해가지고 갔습니다. 비료관리법에 의해서 도지사가 비료에 승인을 해주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판매를 못하고 있지요. 가격결정도 아마 도에서 해줄 겁니다. 그리고 원료 공급은 지금현재 철원에서 가지고 오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이 평창군에는 대규모 양계농가가 없

습니다. 그래서 요전에 조합장님하고도 말씀을 했는데 우리도 조합에서 지원을 해줘서 대규모 양계농가를 육성해서 거기서 원료를 조달하는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金鍾永 委員 : 항간에 얘기는 원료구입비가 워낙 비싸가지고 판매가격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경기도나 서울쪽에서 들어오는 계분이라던가 이렇게 보면 최고 포대당 3,000원 그런데 이것은 거기가 맞출수가 없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비싸면 물론 생산농가에도 피해도 가고 또 판매에도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봐서 원료구입 대책이라던가 그다음 판매가격이 적정선에서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봅니다.

만약 여기서 원료값이 비싸다 해서 비싸게 받는다면 농가가 구입도 잘 기피할것이고 또 공장이 잘 가동이 안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 産業課長 金時漢 : 판매가격은 통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도의 허가사항인



비료업 허가가 나면 판매가격도 거기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 金鍾永 委員 : 비료하고 같은 허가조건이 아니잖아요?

○ 産業課長 金時漢 : 같습니다.

○ 金鍾永 委員 : 그리고 농산물규격 출하사업에 있어서 거기에 품목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감자 저기 양채류 이런것은 해당이 안되나요?

○ 産業課長 金時漢 : 감자는 수요량이 많으니까 그래서 여기 토마토, 양배추, 당근, 피망, 호박, 풋고추, 느타리,

○ 金鍾永 委員 : 그런데 배추하고 양배추 이런것은 어떻게 많은양인데 들어가요?

○ 産業課長 金時漢 : 이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하나 하면 농협에 일단 받습니다 각농협에 공문을 내서 내년도 소요량을 받습니다. 그래서 소요량을 올리면 예산 범위내에서 조정이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다 원하는대로 해줄수는 없고 그래서 작년보다 10만매 더 늘었습니다. 계속 이것은 확대해 나갈겁니다.

○ 金鍾永 委員 : 그런데 감자는 좀 많다고 봐지더라도 양채류는 어느정도 지원이 되어 한다고 생각 하는데요.

그것은 양채류 재배도 점점 군내 확대가 되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어느정도 같이 공급이 되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産業課長 金時漢 : 알았습니다.

○ 朱泰元 委員 : 포장재 개선사업은 군에서 자체적으로 어떠한 품목을 개선사업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농수산부에서 지정해가지고 어떤 품목에 한해서 시행하고 있는것이 맞지요?

○ 産業課長 金時漢 : 네.

○ 朱泰元 委員 : 그러니 과장님 알아봤자 농수산부에서 안하는데.....,

○ 金鍾永 委員 : 아니 농수산부에서 지정하는 품목은 간단하잖아요?

그래도 해당되는 군에서 사실 이런것 이런것 더해야겠다고 건의를 하면 되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다른 특수작목에 대해서는 확대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석회질하고 규산질 공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석회질은 지금 품목하고 어떤방식으로 공급하고 규산질은 어떤 방법으로 공급하는지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産業課長 金時漢 : 내년도 소요량을 농가별로 받습니다. 소요량을 받아가지고 옛날에는 우리가 강제로 공급을 했는데 지금은 농가들이 사용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물량만큼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 金鍾永 委員 : 전액 보조인가요?

○ 産業課長 金時漢 : 아닙니다. 50%입니다.

○ 金鍾永 委員 : 그런데 이 석회질이 그냥 석회질이라고 했는데 어떤종류인지?

○ 産業課長 金時漢 : 석회가 두가지입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석회 고토분말을 선호하지 않는것 같습니다.

지금 50대50 정도 나옵니다 .

고토분말하고 소석회하고 두가지입니다

○ 金鍾永 委員 : 그다음 1읍면 특화사

업 작목개발에는 4개면 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할 계획입니까?

○ 産業課長 金時漢 : 읍면별로 1개씩은 다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金鍾永 委員 : 그럼 매년 1개면씩 추진하나요? 아니면 4개읍면 들어가 있잖아요?

○ 産業課長 金時漢 : 지금 현재로 봐서는 매년 1개면씩.....

○ 金鍾永 委員 : 당년에 8개읍면이 다 않되나요?

○ 産業課長 金時漢 : 그래서 지금 우리 계획으로는 95년도에 2개소, 96년도에 2개소 그래가지고 각읍면에 1개씩 다 들어가는 것으로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金鍾永 委員 : 알겠습니다.

○ 金樂雲 委員 : 김낙운 위원입니다. 농어촌 발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4년부터 98년도까지 무려 2,000억 투자계획이 화려하게 계획은 잘세워져 있는데 94년도에 270억, 내년에 340

억 이렇게 분야별로 되어있는데 94년도에 농어촌발전계획에 의해서 얼마나 투자가 되었습니까?

계획대로 투자가 되었습니까?

○ 産業課長 金時漢 : 112억 4,300만원입니다.

○ 金樂雲 委員 : 그럼 반도 안되게 투자가 있었는데 그렇지요?

○ 産業課長 金時漢 : 네.

○ 金樂雲 委員 : 그리고 내년도에 340억이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 12억중에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지요?

○ 産業課長 金時漢 : 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산업과소관 것만 제가 뽑은 겁니다. 그러니까 축산,산림,건설 이런곳은 안나온 겁니다.

○ 金樂雲 委員 : 그럼 그수치하고 비슷하게 맞습니까?

○ 産業課長 金時漢 : 네.

○ 金樂雲 委員 : 건설과에도 포함되어 있지요?

○ 産業課長 金時漢 : 네, 경지정리 사업하고 도수로 하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 金樂雲 委員 : 군도나 농어촌도로도 포함되나요?

○ 産業課長 金時漢 : 군도는 아니고 농어촌도로가 포함됩니다.

○ 金樂雲 委員 : 그럼 다른과하고 협조를 해서 지금 농어촌발전계획으로 투자된 총사업비가 지난해에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뽑아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내년도 계획이 340억인데 지금 계획되어 있는것이 얼마 투자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 産業課長 金時漢 :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 金樂雲 委員 : 그내용도 다른실과소와 협조해서 내년도 투자계획도 같이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 서면답변 - 끝에실음 )

지금 98년도까지 정부에서 42조를 투자한다고 그러는데 군에서 이사업을 원만하게 하기위해서 군비투자가 상당히 많이 되어야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비 전체가 19%인데 19%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소요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군에서 계속사업이라던가,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단위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사업과 병행해서 투자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워질겁니다. 그러나 과장님이나 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다른 계속사업이던 연차사업이 밀리더라도 농어촌발전투자계획만큼은 확실하게 추진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농어민후계자 관리를 보니까 사고자가 44명입니다. 그중에 사망이 1명이고 전업이 4명, 이주가 39명인데 전업이나 이주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다시 회수를 해야 되지요?

○ 産業課長 金時漢 : 네.

○ 金樂雲 委員 :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회수가 되고 있나요?

○ 産業課長 金時漢 : 그중에 전체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90%는 회수가 되었습니다.

○ 金樂雲 委員 : 회수내역도 명단하고 같이 뽑아 주십시오.

( 서면답면 - 끝에 실음 )

그다음 이목정 휴게소, 군정질문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목정휴게소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민영화하던가 아니면 농협에서 단일화해서 운영을 해야되지 않느냐 그런 안전도 나왔습니다만,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과장님 계속 미루지만 말고 올해 안에 확실한 결단을 내려서 다시금 이목정 문제가 거론이 안되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올해안에 확실하게 방향을 제시할수 있겠습니까?

○ 産業課長 金時漢 :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 金樂雲 委員 : 최대한이 아니라 이목정 휴게소에 대한 문제는 매년 거론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별다른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그것은 실무과에서 소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문제가 거론되지 않도록 확실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일반농가농기계 구입지원이 328대를 지원하셨는데 예산은 3억2,300만원인데 집행은 1억5,700만원만 집행을 했습니다.

중간에 예산을 삭감한줄은 압니다만, 반  
절이하가 줄었었나요?

○ 産業課長 金時漢 : 아직 집행중에 있  
습니다. 다 집행이 안되어서 그렇습니  
다.

○ 金樂雲 委員 : 이것이 100만원씩 지  
원해주는 건가요?

○ 産業課長 金時漢 : 최고가 100만원  
이니까 기계대수가 늘어서 100만원 미만  
짜리입니다.

○ 金樂雲 委員 : 계수가 늘것은 상관없  
는데 예산이 아직 집행이 안되었기 때문  
에 하는 애깁니다.

○ 産業課長 金時漢 : 그것은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金樂雲 委員 : 남은 기간에 집행을  
한다고요?

○ 産業課長 金時漢 : 지금 서류가 안되  
서 집행이 안된것이 있습니다.

○ 金樂雲 委員 : 그럼 기계구입은 어떻  
게 되었습니까?

○ 産業課長 金時漢 : 기계구입은 다되  
고 서류만 안되었습니다.

○ 金樂雲 委員 : 그럼 예정대로 3억2,3  
00만원이 지원되는 겁니까?

○ 産業課長 金時漢 : 예산대로 집행이  
됩니다. 끝단위가 남을 겁니다.

○ 金樂雲 委員 : 예정대로 집행해 주  
시면 되겠고, 그다음 농산물 규격출하  
소포장제 사업에 5,700만원 정도가 아직

미집행 된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서류가 안되어서 그런건가요?

○ 産業課長 金時漢 : 그것도 집행중에  
있습니다.

○ 金樂雲 委員 : 벌써 포장사업은 다  
출하가 되었을텐데요.

○ 産業課長 金時漢 : 네.

○ 金樂雲 委員 : 사업은 하시는데 집행  
은 늦어지고 있다, 그다음 기계화영농

단이 85년부터 94년도까지 약 200개소  
설치가 되었는데 지금 기계화 영농단이

목적대로 5농가 이상이 공동으로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있기에는 거의 한사람 소유로  
형식만 그렇게 갖추고 한사람이 결과적

으로 트랙터를 사든지 농기계를 사서

사용하고 관리하고 있다, 전반적인 현실 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보면 아무 효과가 없는 사업이 아니겠느냐, 차라리 예산을 전업 농가육성이나 아니면 농기계 구입사업으로 돌려서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군에서는 이내용을 파악하신것이 있습니까? 제대로 운영이 되고있다고 생각 하시나요?

○ 産業課長 金時漢 : 일제조사를 저희들이 한번도 못했습니다. 일제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예년에 한것은 그런것도 없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지금부터 하는것은 그런문제가 없을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金樂雲 委員 : 서류는 완벽하게 만들 겁니다. 이웃끼리 협조를 구해서 다섯 농가 이상이 하는것으로 서류를 만들어서 사업을 확정을 하고 나중에 보면 한 사람이, 그중에 누군가 한사람이 기계를 소유하고 관리하고 개인것이 되고 만다는 애깁니다. 사업의 목적이 잘못되는 거지요. 이것은 군에서 철저히 감독

을 하셔서 이렇게 집행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목적외로 사용되는 것이거든요. 한사람에게 특혜를 주는 겁니다. 보조금도 많이 나가고 하는데, 이것은 다시한번 우리관내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된것은 어쩔수 없다 하지만 앞으로 이렇게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행정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郭文春 委員 : 대화에 고추가루 공장이 도의 특수사업으로 되어 있지요?

○ 産業課長 金時漢 : 1군 1명품 사업입니다.

○ 郭文春 委員 : 지금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가동이 잘안되고 중단이 되었는데 알고 있는데 국고 보조금이 있습니까

○ 産業課長 金時漢 : 네. 있습니다.

○ 郭文春 委員 : 지금 가동이 잘되고 있나요?

○ 産業課長 金時漢 : 지금 잘안되고 있습니다.

고추가루가 지금 영월도 고추가루 가공 공장이 있는데 도회지 소비자가 고추가

무를 불신임 합니다.

그래서 고추가루는 잘안되고 지금 기름 짜는 것으로.....,

○ 郭文春 委員 : 앞으로 보조에 대한 내역을 주시고 다음에 송정에 김치공장을 올12월에 완공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1년생산량이 4,500톤 생산하는 것도 물론이겠지만 판로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 産業課長 金時漢 : 그것은 일본에 군납하는 것으로 당초계획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 郭文春 委員 : 그럼 판로에는 문제가 없겠군요.

○ 産業課長 金時漢 : 그것은 김치공장은 7개농협이 자부담은 공동투자해가지고 공동관리 하는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郭文春 委員 :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농지전용에 대해서 일시전용이 34건으로 나와 있는데 용평레미콘도 포함된겁니까

○ 産業課長 金時漢 : 이것은 94년도 것

만 있습니다.

○ 郭文春 委員 : 그럼 용평레미콘이 파산직전에 있고 지금 운영이 중지되어 있습니다. 농지전용을 3년간 해주셨는데 앞으로는 복구를 해야되는데 그 복구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 産業課長 金時漢 : 아직 법원 계류중에 있습니다.

○ 郭文春 委員 : 요전에 답변하기로 승소판결이 났습니다. 재무과에서 분명히 군에서 승소를 했다고 했거든요.

○ 産業課長 金時漢 : 고법에서 그랬고 대법이 남았습니다.

○ 郭文春 委員 : 두달전에 완전히 이겼다고.....,

○ 産業課長 金時漢 : 지금 고법에서는 졌고요. 아직 대법이 남았기 때문에 그것이 판결이 아직 안끝났기 때문에 그것 끝나는대로 공장을 설치하던지..

○ 郭文春 委員 : 복구 예치비는 있습니까?

○ 産業課長 金時漢 : 네.

○ 郭文春 委員 : 얼마나 되었습니까?

○ 産業課長 金時漢 : 1,600만원입니다.

○ 郭文春 委員 : 그것을 하자면 억이 넘는답니다. 그것이 원상복구 해가지고는 말도 안되는 얘기고 앞으로 이것이 우리군의 큰문제인데 만일 군에서 승소한다하면 군에서 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을 무엇으로 합니까?

1,600만원 가지고 어떻게 복구합니까? 면적이 시멘트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제가 물어봤더니 철거만해도 1-2억 가지고도 안된다고 합니다.

군에서 말기전에는 원상복구를 못한다는 여론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만일 승소를 해서 철거를 해서 원상복구를 한다면 군에서 책임을져야 하는것은 사실입니다 예치비 1,600만원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겁니까?

○ 産業課長 金時漢 : 1,600만원 우리가 예치받은것은 우리는 농지복구에 대해서만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건설과, 도시과에서 아마 철거한 다음에 농지는 우리가 양질 농지를 만들기 위해서 농지 복구비만 예치한것입니다.

○ 郭文春 委員 : 농지로 복구를 하자면 일단 철거를 해야지 농지복구를 하지요

○ 産業課長 金時漢 : 원래는 우리가 대집행법에 의해서 본인들이 안하면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대집행비를 우리가 본인에게 청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대화고추가루 가공공장에는 7,5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중에 도비가 1,200만원, 군비2,800만원, 자부담이3,500만원 들어서 7,500만원주고 했습니다.

○ 朱泰元 委員 :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비가림재배 사업이 내년에도 많이 있습니까?

○ 産業課長 金時漢 : 네.

○ 朱泰元 委員 : 그런데 농가 선정을 해서 비가림재배를 시행하는 과정이 문제가 생각이 되는데 비가림재배를 하던 무슨재배를 하던간에 농가소득을 목표로 하는건데, 이것을 지도방향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설하는 과정에서 겨울철 농한기에 시설을 해가지고 투자비용이 적게 들어가야 하는데 이게



잘못생각이 되가지고 농민들 스스로가 정부가 50% 보조를 해주니까 그 보조에 눈이 어두워서 자기네들은 일을 안하고 무슨 업자에게 도급계약을 쥐가지고 시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조를 하는 당초의 목적을 이탈을 해버린다고요.. 편하게 할려고 하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다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사업선정을 할때에 도급계약해서 업자에게 줘서 시설하고 이러는 것을 안하도록 유도해줘야 할것 같습니다.

○ 産業課長 金時漢 : 사실 맞는데,

○ 朱泰元 委員 : 지도를 제대로 해줘야지 돈은 그시설하는 사람들이 다벌어 가버리고 그다음 문제는 투자비가 많으니까 보조를 해주나 마나입니다.

보조라는것이 농가가 스스로 부담하기 어렵고 이러니까 보조하는 목적인데, 전부다 다른사람에게 주고 농가가 무슨 소득을 바라는가 말입니다.

보조할 필요성이 없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농가선정을 할때에 도급계약을 해가지고 당신들이 직접 시설을

하지 않고 공동으로 하지않고 업자에 준다고 하면, 보조금은 안나간다던지, 이렇게 해서라도 정신을 유도해서 스스로 할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줘야 하는데, 그것은 꼭 착안을 해서 산업과에서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농가소득이 되지,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 産業課長 金時漢 : 네.
- 委員長 李致玉 :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한후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時25分 監査中止)

(11시27분 監査繼續)

○ 委員長 李致玉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樂雲 委員 : 김낙운 위원입니다. 94년도 농지전용허가 현황을 보니까 일시전용허가 및 영구전용허가 두가지로 해서 약 22만6,772㎡를 전용허가를 하셨는데 93년도 대비 94년도 전용허가 면적이 얼마나 증가되었는지 그내용을 지금

답변하실수 있습니까?

○ 産業課長 金時漢 :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 金樂雲 委員 : 그내용을 감사후에 자료를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면답변 - 끝에 실음 )

그다음 진흥지역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특히 미탄면 주차장 부지 문제는 국토이용관리법에 공공이용시설및 부대시설은 농수산부장관 협의를 거쳐 사용할수 있도록 하는 법이 분명히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숙지를 못하셨는지 물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지금까지 진흥지역 해제만 할려고 그렇게 산업과에서 노력하신것 같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담당부서에 많은 공직자들이 아직까지도 법을 잘모르고 있지 않느냐, 특히 산업과에서는 대농민을 상대로 하는것을 추구하고 계시는데 농촌농민들이 어떤 전용을 받거나 국토이용관리법에 해당되는 사업을 할려고 했을때 확실한 답변을 해주지 못하면 두번다시 농민들이 그문제를 들고

들어와서 상의를 하지 않습니다.

안되는줄 알고, 그래서 주차장 문제는 한예입니다만, 그외에 법에 관련된 그러한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부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주무부서에서 이법을 숙지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상당히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가 자주 바뀌고 법도 자주 바뀌고 있습니다만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들이 숙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그러한 사례가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무자들은 자기가 소관하고 있는 관련법은 확실하게 숙지하시고 언제 어느때 누가와서 묻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해서 그것을 몰라서 민원처리를 못함으로 인해서 민원인에게 손해가 가는 불이익이 가는 그런일이 생기지 않도록 좀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제는 산업과 뿐만 아니고 모든 공직자들이 다 마찬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법을 모르고 또 실과별로 협조가

안되었으면 주차장 문제가 지금까지 거론이 되고 해결되지 못해서 그런결과를 초래했느냐 하는것을 보면 공직자들의 자세를 알수가 있습니다.

다시한번 산업과에서는 특히 농업에 관련된 법들을 잘 숙지하셔서 민원인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委員長 李致玉 :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 아무소리가 없음 )

그러면 산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 農村指導所

○ 委員長 李致玉 :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의 엄정한 감사수행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4항에 의거 하는것으로 만일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農村指導所長 劉載國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1994년 12월 1일

평창군 농촌지도소장 유 재 국  
사회지도과장 전 근 택  
기술보급과장 이 우 형

( 농촌지도소장, 사회지도과장, 기술보급과장 서명날인후 선서서 제출)

○ 委員長 李致玉 : 다음은 감사대상 사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農村指導所長 劉載國 : 농촌지도소장 유재국입니다.

94년도 정기행정감사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 끝에 실음 )

○ 委員長 李致玉 : 농촌지도소장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朱泰元 委員 : 주태원 위원입니다.

먼저 5페이지 업무보고중에 농민건강관리실 운영을 유동리에다 지어서 이용하고 있는데 이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 農村指導所長 劉載國 : 부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장을 비롯한 개발위원회에 일임을 했습니다.

○ 朱泰元 委員 : 참 좋은 사업인데 관리만 잘되고 활용이 잘되면 참 좋은것을 하고 계시는데 관리가 잘되도록 해주시고 앞으로도 전체지역에 자연부락 단위까지 확산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 톱밥발효우사도 금년에 지도소에서 결과적으로 7개소를 하셨는데 앞으로

도 계속사업으로 하는겁니까? 금년에 시범사업으로만 하고 끝나는 겁니까?

○ 農村指導所長 劉載國 :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朱泰元 委員 : 이것은 농촌환경을 정화하는데도 크게 기여하고 또 실질적으로 농촌에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도가 크리라고 믿어져서 이사업은 더 확산을 시켜서 추진이 계속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農村指導所長 劉載國 : 감사합니다.

○ 朱泰元 委員 : 그다음 감사자료중에 진부면 하진부리에 산마늘 재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산마늘을 재배하는 과정까지는 크게 야생마늘이니까 어렵지 않다고 보는데 이것을 재배해서 소득한 후에 실제로 산마늘을 우리 군민들이 잘모르기도 하고 먹는건지 잘모르는 상태인 것 같은데 관로가 문제가 안될까요?

○ 技術普及課長 李宇炯 : 지금 주위원님이 질문해주신 산마늘 재배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산마늘을 92년도 93년도부터 농

촌지도자 회원께서 재배가 되었었고 현재 산마늘 재배에서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첫째는 뭔가하면 종자파종 했을 때 발아가 잘안되어서 모를가지고 1,500평하고 종자파종 4ha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의 산마늘이라 했을 때 소비처가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지역에서 산채 백반하는 요식업소에서 상당히 소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양은 모자라서 반출을 못하고 있는데 다량종 산중식이 어려운것이 하나의 문제점이긴 합니다만 앞으로 판로 소득은 더 나아지지 않겠느냐, 그다음 이것을 일명 신선초라 해가지고 상당히 기호도가 현재까지 좋은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 朱泰元 委員 : 신선초는 따로 있지요

○ 技術普及課長 李宇炯 : 따로있는데 산마늘도 일명 신선초라고 하고 명일엽이라 하는것도 신선초로 들어 갑니다만 지금현재 우리 평창지역에서는 거의 신선초로 해가지고 서울사람들도 상당히 기호가 좋은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 朱泰元 委員 : 그러면 지도소에서는 특화사업으로 기왕 손을 댔으니까 신선초가 되었던 산마늘이 되었던간에 인체에 얼마만큼 좋고 어떠한 영양소가 있어가지고 사람에게 좋다 라던가 건강식품이라던가 그외에 분석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이사업이 성공을 거둘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技術普及課長 李宇炯 : 알겠습니다.

○ 朱泰元 委員 : 그다음 11페이지 마지막 2리에서 재배를 하는 이질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잘몰라서...,

○ 技術普及課長 李宇炯 : 이질풀은 한약재가 아니라 가정용 약재로서 많이 쓰고 있는데 대개 지사제로 쓰고 있습니다 첫째적인 것으로 한약재로 생산이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것을 검토해보자 해서 이것이 면적은 얼마안되지만 300평을 야지에 있는것을 캐다가 올해 정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정식을 했고 내년도부터는 생산량이 얼마나 나오나 이것도 검토해보기 위해서 저희가 넣었습니다.

지금현재 시중에서 판매되는것은 근당에 700원정도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해서 야생화 되어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유희경작지에 넣어가지고 생산가능성을 갖다가 검토를 해보기 위해서 사업을 채택해서 넣었습니다.

○ 朱泰元 委員 : 그다음 맨 끝부분 12페이지에 용평면 재산리에 하는 암면 배지대체로 광산 부산물 배지이용 시험 이것은 처음듣는 얘기 같아서요.

○ 技術普及課長 李宇炯 : 이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평면에 유리온실에 우리가 화란에서 수입되어온 낙운가지고 재배되고 있습니다. 낙운가지고 재배했을때 우선 수입이 문제도 되겠습니다만, 첫째적인 것이 나중에 쓰고 남은다음에 폐기문제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우리 국산으로 개발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가지고 광산부산물이 나오는게 양양서 나오는 부산물 하고 혼탄이라고 해가지고 왕겨를 태워가지고 프러스 해

서 70대 30으로 넣어가지고 배기시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성적으로 봤을때 어떤효과가 나왔나 하면 당도를 0.4%를 높이는 계속 우리가 아직 결과는 아닙니다만, 지금 생산되고 있는것만 가지고 중간단계에서 검사하고 있는데 수량도 증산이 되고 그다음 당도도 높아지고 그다음 특이한것은 거기에 많이 발생하는 배꼽썩은병이라고 좀적게 나오더라,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개발이 되었다고 가장했으면 기대효과는 상당히 크지 않겠느냐 해서 하나의 시험작목 개발측면에서 투입해가지고 왔습니다.

○ 朱泰元 委員 : 그러면 양양에 있는 철광, 거기서 부산물을 가지고 오고, 왕겨를 태워서 지도소에서 연구해가지고 시험재배하는 거지요?

○ 技術普及課長 李宇炯 : 네.

○ 朱泰元 委員 : 큰일하시네요.

○ 農村指導所長 劉載國 : 외국산 농작물을 국산화 하는 차원에서 시료가 되었습니다.

○ 郭文春 委員 : 광문춘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평창읍 다수리에 산더덕재배에 종자파종 60ℓ를 하시는데 종자를 어떻게 채취하셨습니까?

산더덕 종자채취는 힘든일인데,

○ 技術普及課長 李宇炯 : 사업내용에서 더덕재배 종자파종을 60ℓ 했는데 종자파종하는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 郭文春 委員 : 종자채취 말입니다.

○ 技術普及課長 李宇炯 : 종자는 지금 현재 채취는 농가에서도 어려운것은 아니고 종자를 처음에는 사다가 파종을 했습니다.

○ 郭文春 委員 : 그럼 산더덕이 아니고 밭더덕이지요.

○ 技術普及課長 李宇炯 : 네. 밭에다 심었는데요. 그런데 산더덕이라고 얘기하는것은 유희지에다 재배했기 때문에 그냥 산더덕이라고 한것입니다.

○ 郭文春 委員 : 알았습니다.

오리를 사육에서 쌀생산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효과를 가져 왔나요?

○ 技術普及課長 李宇炯 : 오리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리는 방림면 계촌3리에 1ha에다 350수를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를 심어놓고 모자리가 끝난다음에 바로 오리를 집어 넣게 되면 우선 오리가 거기서 사육됨으로 인해서 충을 다잡아먹고 다음은 오리가 풀을 뜯어먹어서 제초제를 전혀 쓰지 않고도 농사를 지을수 있는 효과를 거두었다는 애깁니다.

○ 郭文春 委員 : 모는 안뜯어 먹습니까

○ 技術普及課長 李宇炯 : 모는 안뜯어 먹습니다. 단 한가지는 벼이삭이 나온 다음에 그대로 두면 오리가 큰다음에는 벼이삭을 먹습니다. 그래서 벼이삭이 출수될때 전부 걷어내서 300마리를 판매했습니다.

○ 郭文春 委員 : 그럼 벼이삭 클때까지는 계속 논에서 키웁니까?

○ 技術普及課長 : 네, 나가지 않도록 울타리만 간단하게 설치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1마리당 1만원정도 받았습니다.

전체가 350마리를 넣었는데 300마리를 팔아서 300만원 정도 나왔고, 쌀의 수확도 줄지 않았습니다.

이런것을 고려해서 명년도 사업도 계획을 해봤는데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되지 않았습니다. 우선 앞으로의 사업은 오리정도만 지원만 해주고 자체농장에서 추진하면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하는 구상도 한번 해봤습니다.

이것이 KBS 라디오 방송에서 전국에 한번 방영이 되었었고 신문에도 있었는데 앞으로 상당히 우리가 환경보존농업 측면에서 좋은 효과가 아니겠느냐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분석했고 자체 희망농가에 대해서 계속 기술지도를 해가지고 확대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 郭文春 委員 : 앞으로 많은 확대가 되길 기대합니다.

○ 農村指導所長 劉載國 : 농약을 치지 않고 쌀을 생산해가지고 쌀자체도 조금 비싸게 받습니다.

○ 金樂雲 委員 : 김낙은 위원입니다. 농기계 기동수리 교육 88개리에 120회를

실시 하셨는데, 예산이 충분합니까?

○ 社會指導課長 全根鐸 : 저희 사회지도과 소관인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1월 28일 120회로 설치 완료 되었습니다. 처음 소요된 금액은 720만원정도였고 그다음 5만원이상 되었을때는 나머지 액수를 저희가 받아가지고 세입조치한것이 20,000원 됩니다. 19,850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한정된 예산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실 예들 들어서 많은,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게 들어가는 것은 마음대로 하지 못하지 않겠느냐 하는 감도 들었고 그렇습니다.

○ 金樂雲 委員 : 농민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 技術普及課長 李宇炯 : 농민들의 반응은 아주 호응이 좋지요.

○ 金樂雲 委員 : 주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좋은것 같아서 이사업은 좀더 확대를 할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시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좀더 확대를 해주시고 특히



농촌에 농번기철에 농기계가 망가져도 수리점까지 갈수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못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 좀더 기회를 확대하시고 예산도 확보하셔서 이 사업을 좀더 효율적으로 완료될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대추나무 빗자루병이 수간주사 효과가 어떻습니까?

수간주사만 놓으면 완전히 치료가 됩니까?

○ 技術普及課長 李宇炯 : 여러가지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추나무 빗자루병을 잦다가 우리가 전군에 일시 한꺼번에 다 해보자 해서 해본결과 사실 어느농가에서는 큰 효과가 없다는 얘기도 나왔고 효과가 좋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간주사를 냈을때는 틀림없이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미흡했던 점이 전 지도사가 수간주사를 다놓기는 위해서 지역별로 연시회를 개최해가지고 농민에게 약을 드렸습니다. 이런 과정에

서 항생제라고 했을때는 반드시 소화제 같은 이물질이 들어있어서 찌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수간주사를 놓때 가아제가 있는데 가제부위에 찌꺼기가 붙어서 약이 안들어가는 경우가 있었고, 또한가지는 그것을 놓다보면 수간내에 공기가 있어서 약액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기를 다 빼야하는데 미쳐 빼지 않고 그냥 두어서 약제가 안들어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나중에 가보니까 약은 그대로 매달려 있고 효과가 없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틀림없이 약이 전체가 잘들었졌을때는 효과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허나 그런과정에서 조금 여론이 나온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점을 보완해가지고 95년도부터는 우리가 지도사업을 할때 완전하게 가르쳐 가지고 해줘야 하지 않겠나, 또 한가지 문제점은 나무가 큰것은 수간주사를 놔줘야 하는데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 하다보니까 조금 차이점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시정보완해가지고 지도사업에

계속 임하겠습니다.

○ 金樂雲 委員 : 예방위주로 하는거지요?

○ 技術普及課長 李宇炯 : 발생이 되었을때도 치료효과가 나타납니다.

○ 金樂雲 委員 : 대추나무가 소득에 상당히 미치는 영향이 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값도 비싸고 말이지요.

그래서 특히 우리관내에도 미탄면 같은 곳은 대추나무가 많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과만 있다고 그러면 상당히 소득증대사업으로 대추나무를 장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대추나무 빗자루병때문에 대추나무 식재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효과가 나타나면 좀더 예산지원을 해서라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4-H 지도육성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농촌에 젊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 중학교도 포함되니까? 일반인이 전체 몇%정도 차지합니까?

1년에 4-H 지도육성에 예산이 얼마나 배정되어 있지요?

○ 社會指導課長 全根鐸 : 사회지도과장입니다.

지금 4-H 전체가 244명인데 특수 4-H가 일반이 144명하고 특수 4-H 가 100명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 金樂雲 委員 : 특수라면 학생들이니까?

○ 社會指導課長 全根鐸 : 네. 학생들이입니다.

○ 金樂雲 委員 :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생들이 더 많은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社會指導課長 全根鐸 : 지금현재 등록된 사항은 144명이고 특수가 100명입니다.

○ 金樂雲 委員 : 아직까지는 일반이 더 많네요.

그런데 행사때마다 가보면 학생들이 거의 다입니다.

○ 社會指導課長 全根鐸 : 거의다 학생들이고 일반은 등록만 되어 있고 활동은 조금.....,

○ 金樂雲 委員 : 실제로 참여하는 일반은 얼마 안되지요?

○ 社會指導課長 全根鐸 : 일반 6-70명 정도는 열심히 나오고 있습니다.

○ 金樂雲 委員 : 일단 학생들을 위주로 하는 특수4-H회원이라 하더라도 농촌에 대한 인식을 계속 심어주기 위해서는 4-H 지도육성은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1년에 4-H지도육성에 얼마나 예산이 투자가 됩니까?

행사를 계획대로 다하고 있습니까?

○ 社會指導課長 全根鐸 : 지금 행사는 우리가 4-H청소년의달 행사가 있고 하계 야유회 교육이 있고 경진대회가 있고 연말총회가 있고 4개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분기별 총회라던가 행사는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金樂雲 委員 : 경진대회는 매년 하는 거지요?

○ 社會指導課長 全根鐸 : 지금까지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 金樂雲 委員 : 올해는 경진대회를 안하셨더라구요.

○ 社會指導課長 全根鐸 : 금년도에는 과거처럼 지도소에서 집결해서 한것이 아니고 금년에는 가리왕산 야외에서 현실에 맞는 경진대회를 해라 그래서 금년에 조금 변화시켜서 야외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 金樂雲 委員 : 그다음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 부지만 매입을 하셨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社會指導課長 全根鐸 : 당초계획에는 금년에 부지매입을 하고 그다음 상표조성을 하고 명년도에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금년도에 보고드리기는 95년도에 사무실 신축을 하겠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무실 신축이 예산을 개략적으로 잡아보니 26억정도 가져야 사무실 신축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95년도 신축예산은 확보하기 곤란하다 해서 집행부에서 기획실 아니면 군수님하고 의논하기로는 사무실 신축은 후년도에 미루고 일단 부대시설, 현대화

시설 관계라던가, 실층시험포관계, 부대 시설을 95년도에 일단 놓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요구는 6억 4,000만원정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형편이 닿지않아 2억4,000만원정도 확보되서 명년도 계획은 실층시험포하고 조직배양실 정도는 명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서 추진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金樂雲 委員 : 글썄요. 전반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니까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겠지만, 일단 시설은 다음에 하더라도 부대시설만큼은 미리해서 UR도 대비해야 되고 농촌에 농업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지도소에서 지도할수 있는 위치가 되어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부대시설만이라도 완벽하게 해서 농민들에게 지도가 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李致玉 委員 :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현상입니다만 농촌지도소에 각종사업비와 예산이 독립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항상 그렇게

답답한 마음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농촌지도소에서 농어민 후계자에게 농어민후계자 육성을 위해서 무슨 사업을 하고자 할때에 94년도에 한번 지도를 하고 지원하는것으로 그친다는 애깁니다. 그러니까 무슨애기냐 하면 그뒤에는 사업비나 모든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의 어려움이 있기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다, 이렇게 본위원은 해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버섯재배를 한다, 그러면 단지에 몇년 지원을 하고 육성을 하도록 해줌으로써 그 물건을 대량생산을 해서 시장에 갔다가 판매할수 있는 그런 여건과 저력이 생기는데 1년에 한번 지원해 줌으로서 영세한 농민이 어떤 소량을 가지고 시장가서 판매하기가 어렵다고 느낍니다. 해당과장님께 여기에 대한 얘기를 수차 말씀을 드렸고 그렇지만 예산이라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못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95년도에 조금 전에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무공해 계란생산, 그것이 전부 후계자인데, 어

려운사람들이고 한데 95년도에 지원을 해주면 적은차로 한차정도 계란을 싣고 시중에가서 팔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루어 졌다고 생각이 되는데 추후라도 그런것은 챙겨서 잘되도록 육성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社會指導課長 全根鏞 : 네.

○ 金樂雲 委員 : 김낙운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현지확인을 폐광이용 여름느타리재배 현장을 다녀 왔습니다. 상당히 사업선정을 잘하신걸로 생각이 되고 폐광을 이용한다고 하는 그런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폐광을 이용한다고 하는것은 폐광에서 나오는 찬공기를 유입을 시켜서 여름철에 온도를 낮춰서 다른곳에서 생산되지 않는 시기에 생산한다고 하는 그런 잇점이 있어서 바람직한데 상대적으로 고냉지 여름느타리 재배가 미탄면으로 계획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데 고냉지 여름느타리재배는 폐광에서 나오는 어떤 찬공기를 이용하

는것도 아니고 사람이 인위적으로 온도를 낮추자는 그러한 방법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고지대로 올라갔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름철에 시원한 곳에서 재배할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추어 지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고냉지 여름느타리재배 위치선정은 조금 신중하게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技術普及課長 李宇炯 : 김낙운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전적으로 저도 동감합니다. 허나 우선 제가 말씀드려야될 문제가 있어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태여 미탄에다 넣는냐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여기와서 우선적인것이 미탄면은 우리가 앞으로 내다봤을때 아무래도 영월이 댐이 되지 않겠느냐, 댐이 되었을때는 안개지역으로 되지 않겠느냐, 안개지역으로 되었을때는 소득원이 과연 무엇이 있겠느냐 하는것을 우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미탄면은 그래도 어떠한 느타리버섯 쪽에서 가져와야 하지 않겠

느냐 해서 버섯을 거기다 집중적으로  
넣게된 동기가 있었고 또한가지는 원인  
은 고지대는 아니지만 거기에는 특이하  
게 찬물이 나오는것이 많습니다. 동굴  
이 있고 그다음 찬물이 11도 내지 12도  
되는 찬물이 있어가지고 그 찬물을 이용  
하게되면 보통 3도내지 4도를 온도를 낮  
출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건 모든것을  
감안해가지고 거기다 버섯을 너어서 미  
탄면 하면 버섯단지로 하나의 만들어보  
자 하는것이 저희 소장님이나 저나 그런  
생각때문에 거기다 투입했습니다.

○ 委員長 李致玉 : 보충질의 하실분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그러면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  
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농촌지도소장님을 비롯한 두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2시가 지났으므로 위원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후 오후 2시에 계속 하겠  
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 합니다.

(12時25分 監査中止)

(14時00分 監査繼續)

○ 委員長 李致玉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평창군에 대한 소관별 감사  
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畜産課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  
사 실시를 선언 합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94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증언하는 관

계 공무원의 엄정한 감사수행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4항에 의거하는 것으로 만일 허  
위증언을 하거나 증원또는 진술을 거부

하는 때에는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  
에 의한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

료가 부과될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후 서  
명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畜産課長 鄭義秀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

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중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1994년 12월 1일

축산과장 정 의 수

( 축산과장 서명날인후 선서서 제출)

- 委員長 李致玉 : 다음은 감사대상 사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畜産課長 鄭義秀 : 축산과 9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 끝에실음 )
  - 委員長 李致玉 : 축산과장님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 위원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郭文春 委員 : 광문춘 위원입니다.  
어도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당초에 어도시설의 사업위치를 선정할때 어디서 선정합니까?
  - 畜産課長 鄭義秀 : 축산과에서 합니다.
  - 郭文春 委員 : 그러면 당초에는 어도

시설이 방림으로 되어 있다가 봉평으로 장소를 옮겼잖아요?

- 畜産課長 鄭義秀 : 당초에 방림면에 다 사업대상지를 선정한것은 아니였고 이사항에 대해서 진행과정을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사업비 확보 지시는 작년말에 되어서 2개소에 대해서 도비,군비 2,200만원을 확보하는 계획으로 사업비 내시는 왔었고 금년 2월 26일날 확정내시가 읍과 동시에 사업지침이 왔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2개소의 사업을 어떻게 해야할것이나 하는것을 3월 10일날 읍면을 통해서 어도시설 설치후보지 신청지시를 하고 조사를 받았습시다.
- 郭文春 委員 : 각읍면에서 신청을 받으니까?
  - 畜産課長 鄭義秀 : 네. 그래서 읍면에서 총7개소의 사업후보지가 선정이 되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7개소의 추천된 후보지에 대해서 4월 18일부터 4월 21일까지 현지의 우선순위를 결정할겸 그리고 금년도 이미 주어진 예산가지고

사업을 시행가능한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봉평면 원길리 옷개모기보 하고 그다음 새터보가 금년도 주어진 예산 범위내에서는 사업시행 가능한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우선 선정을 했고 더구나 그지역은 홍정천을 중심으로 한 열목어 서식지이기 때문에 그지역이 우선 어도를 개설해줌이 마땅하다고 판단이 되서 그지역으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郭文春 委員 : 어도시설을 하기전에 고기의 생태계를 해놓고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검사를 해보셨습니까?

○ 畜産課長 鄭義秀 : 물량쪽으로 측정하기는 곤란하겠습시다만, 실질적으로 그 어도를 통해서 고기가 하천의 아래 위로 통과할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보람된 사업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 郭文春 委員 : 많은 예산이 드는데 실지로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그효과가 얼마나 났는지 문제가 되는데, 그 진부 오대천에도 어도시설을 할곳이 많다

고 생각하는데 평창에 네군데씩 하고 하는데 진부면에서 그렇게 계속 없다고 보고가 들어온것이 틀림없지요?

○ 畜産課長 鄭義秀 : 자료좀 찾아보겠습니다.

○ 郭文春 委員 : 시간이 가기때문에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 자료 - 끝에실음 )

그다음 가축예방접종은 각읍면에 날짜를 정해서 하는줄 아는데 예를들어 소를100두를 계산하고 예방접종을 한다하면 만일 거기나가서 100두가 다안오고 50두를 했다던지 이런일도 있을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약은 무료로 수의사에게 나가는 겁니까?

○ 畜産課長 鄭義秀 : 약은 국비와 도비에서 전체 약품비의 70% 이상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와 도비에 해당되는 분은 돈으로 예산이 전달되는것이 아니고 도에서 일괄 현품을 구매해 가지고 시군으로 배정을 합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하신 100마리 계획했는데 50마리밖에 가축이 안모였다 하면 그약은 계속해



서 일단한번 개봉을 하고 증류수를 타서  
회석한 약은 장기간 보관이 안되기 때문  
에 방역기술진들이 다른마을을 찾아가서  
라도 그날짜에 다 끝을 냅니다.

특히 여름철 같은 하절기에는 물론....,

○ 郭文春 委員 : 그게 아니고요. 만일  
100두의 약을 가지고 왔는데 예들들어  
50두밖에 못했다면 나머지 50두의 약은  
남을것인데 그것은 회사에 맡기느냐 축  
산과에서 가지고 오느냐 그것을 물어본  
겁니다.

○ 畜産課長 鄭義秀 : 약품이 매회마다  
관내 마리수에 비교하면 극히 적은량이  
배정되고 있는사항이기 때문에 해당면에  
배정된 약품이 남거나 하는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 郭文春 委員 : 모자람니까?

○ 畜産課長 鄭義秀 : 모자란다기 보다  
전두수를 방역해줄 국가방역체제는 아니  
니까....,

○ 郭文春 委員 : 본위원이 알기로는 약  
이 좀남는데 수의사가 그냥두고 온다는  
얘깁니다. 예들들어 수의사가 그약을

가지고 자기 밋대로 무엇을 한다는 그런  
말이 들기때문에 물어본것입니다.

○ 畜産課長 鄭義秀 : 일단 주사용 방역  
품은 공수의가 보관 책임자입니다.

군에서 읍면장에게 배정을 하면 면장은  
해당지역 자기담당 공수의한테 그약이  
면의 실시개시일에 인증이 됩니다.

그러면 수의사가 보관하고 있다가 몇일  
간 일정이 짜여 있으니까 일정내에 쓰고  
있는 겁니다.

○ 郭文春 委員 : 알았습니다.

○ 金鍾永 委員 : 김종영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초지조성이 된것을 보면 국유지, 군유지  
사유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지요?

○ 畜産課長 鄭義秀 : 네.

○ 金鍾永 委員 : 지금보면 당초에 초지  
조성한 사업자가 타인에게 팔고 또팔고  
하는데 팔고 살때에는 관계가 없습니까?

○ 畜産課長 鄭義秀 : 재산권의 인수인  
계과정에서는 초지법상 전혀 관련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 金鍾永 委員 : 그럼 다음에 산사람이

내가 샀다고 신고를 해야 되나요?

○ 畜産課長 鄭義秀 : 초지법상 새로이 초지를 받은사람이 초지관리자 변경신고 하는 절차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金鍾永 委員 : 보조금이라던가 지원된것을 보면 당초에 한사람도 지원을 받았고 나중에 사업자가 바뀌었을때도 받고 그럼 초지조성한 한건당에 몇번이 지원이 되어야 합니까?

○ 畜産課長 鄭義秀 : 대개들 초지가 관리 또는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관리자가 초지관리 능력이 부족하거나 또는 초지관리 상태가 하급의 상태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정부 초지관리 시책에 의해서 조성 당시에는 신규조성비로 지원을 하고 또 하급초지에 대한 보완사업을 위해서 기성초지 보완사업비가 추가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金鍾永 委員 : 그런데 보면 이사람들이 초지조성을 보조금, 융자금 이래 받아서 해놓고 관리를 안합니다. 소도 입식을 잘안하고 했다가 그냥 다팔고

부실초지를 만들어서 또 다시 다음사람한테 파니까 산사람들이 그것을 보완해서 초지를 할러니까 또 이중지원이 되고 또 넘어가면 또 지원이 되고 하는데, 그런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가 없습니까?

○ 畜産課長 鄭義秀 : 한번 지원된곳에 대해서 기성초지 사후관리비 지원도 보통 보조금의 관리년한을 제가 5년으로 잡고 또 초지의 기한도 5년정도로 잡고 있기 때문에 5년이내에는 같은장소의 보완사업비가 중복지원은 피하고 있습니다

○ 金鍾永 委員 : 중복지원을 피하고 있는데 중복지원이 된것이 있지요?

○ 畜産課長 鄭義秀 : 물론 새로운 관리자에게 기성초지 보완사업비가 지원은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종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형태의 중복지원은 안되고 있습니다.

○ 金鍾永 委員 : 94년도 금년도에 보조금 지급한 가축농가들이 있지요?

○ 畜産課長 鄭義秀 : 많습니다.

○ 金鍾永 委員 : 그다음 95년도, 내년

도에 지원할 농가들이 확정되었지요?

○ 畜産課長 鄭義秀 : 네.

○ 金鍾永 委員 : 그러면 금년도 명단하고 내년도 명단하고 해주실수 있지요?

○ 畜産課長 鄭義秀 :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서면답변 - 끝에실음)

○ 金鍾永 委員 : 지원현황, 보조금, 융자금, 94년도, 95년도.

○ 畜産課長 鄭義秀 : 축산사업 전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요? 어느 사업분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요?

○ 金鍾永 委員 : 보조금 하고 지원된 사항 94년도하고 95년도 확정된 명단하고 말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 畜産課長 鄭義秀 : 고맙습니다.

○ 李致玉 委員 : 이치옥 위원입니다. 수차에 걸쳐서 내수면 송어양식장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91년도에 군정질문을 하고 그럴때 27개인가 했는데 어떻게 슬금슬금 늘어서 중간에 30개가 되더니 요전에 현황을 보니까 30개

송어장이라고 하더니 오늘보니까 31개입니다. 어떻게 또 하나가 늘었습니까 왜 늘었습니까?

○ 畜産課長 鄭義秀 : 요전번 군정질문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 李致玉 委員 : 그때는 30개이지요. 실지는 늘지 않았는데 자료가 왔다갔다 한겁니까?

○ 畜産課長 鄭義秀 : 아닙니다.

○ 李致玉 委員 : 미탄의 떼떼 송어장이 서류를 제출을 안하고 어떻게 있는 상태에서 하나가 늘고 어찌고 그랬는데 그래서 늘었습니까?

○ 畜産課長 鄭義秀 : 방림면 운교리에 정문섬씨라고 92년도에 농지전용 허가가 되고 93년도에 유수인용 허가가 된분에 대해서 94년 연초에 어업신고서가 제출되어서 년도로 봐서는 94년도에 하나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31개가 되었다가 지금현재 관내 2개소는 운영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도하고 있는것은 29개 입니다.

○ 李致玉 委員 : 아니지요. 그렇게 애

기해서는 안되고 현황이라는 자체는 죽어있던지 살아 있던지 송어장은 송어장이니까 행정이라는 것은 공문상에 있는 숫자가지고 얘기하는것이지 고기 안키우면 줄고 늘고 그러는가요?

일단 본군의 허가를 득해가지고 있는 송어장이라면 일시적으로 조업을 중지했다 하더라도 송어장 숫자에 들어가야지요. 그것이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것은 말도 안되는 행정이지요?

○ 畜産課長 鄭義秀 : 그래서 총 관리하는것은 31개로 잡고 있습니다.

○ 李致玉 委員 : 어떻게 31개가 되었냐 말입니다.

○ 畜産課長 鄭義秀 : 작년말 30개소에서 94년 1월초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방림면 운교리 하나가 신고가 수리되는 과정에서 31개가 되었습니다.

○ 李致玉 委員 : 그리고 16페이지에 보면 3,325만3천원, 내수면 중앙식용 기자재 구입지원사업이라 했거든요. 그런데 군비는 없고 국비, 도비, 용자, 자부담 해가지고 3,325만3천원을 했는데 이것은

어디다 했습니까?

14농가중에 몇개했고 몇개 안했고 또 어디다 해준겁니까?

○ 畜産課長 鄭義秀 : 죄송합니다. 서류를 가져와서 보고하겠습니다.

○ 李致玉 委員 : 그럼 14개소중에서 몇개는 알게 아십니까?

○ 畜産課長 鄭義秀 : 미탄면을 중심으로 지원이 되었고 원복수산, 강원수산,

○ 李致玉 委員 : 잘사는 사람들을 왜 자꾸 지원을 해줍니까? 제가 그래서 묻는 겁니다. 핵심적인 질문요지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상하네요. 기업을 망블케 하는 큰 송어장들을 왜 풍차도 사주고 그러는가 말입니다. 어려운 송어장들을 해줘야지, 지원이라는 근본적인 취지도 모르잖아요? 원복수산 같은경우는 강릉의 부자인데 어찌자고 거기를 자꾸 주는 겁니까? 자력으로도 충분히 성장할수 있는 송어양식장들인데,

지원방법이 틀렸다는 겁니다. 용자를 내고 사채를 내가지고 송어장 해보겠다

고 시작한 사람들이 사실 풍차 몇푼안되는 돈이지만 송어가 공기를 주입안시키면 자꾸 죽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하느라 알고 있는데 그런곳을 해줘야지, 강원수산,원북수산이 웬말입니까?

왜 그렇게 줬는지 말씀해 보세요?

○ 畜産課長 鄭義秀 : 읍면을 통해서 희망신청을 받았는데.....,

○ 李致玉 委員 : 신청을 받는다는 것은 행정에 의한 의식절차이지 본군에서 과장님을 비롯한 부군수님, 군수님이 측정하고 판단하고 지원하는 기준을 내릴때는 분명히 뚜렷하게 해야지요.

제가 이것을 알아요. 그런데 불평이 많아요. 이 지역에서도 그렇고 불평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 畜産課長 鄭義秀 : 제가 판단하기에는 희망자가 누락되거나 그런경우는 전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 李致玉 委員 : 그렇다면 평창군내에 있는 송어장이 100개나 1,000개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모임을 가지고 설명회 정도라도 하고

사줘야지 모든 국가행정이나 지방자치단체나 본군의 행정이 그렇다면....., 원북수산 같은곳은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사줬습니까?

○ 畜産課長 鄭義秀 : 선택하는 기종에 따라서.....,

○ 李致玉 委員 :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금액으로 얼마나 사줬는지 그것만 말씀하세요.

○ 畜産課長 鄭義秀 : 자료를 가지러 갔으니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李致玉 委員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李相薰 委員 : 이상훈 위원입니다. 한우종합대책에 대한 농가별 선정 과정에 본위원이 사업계획서를 첨부해달라 했는데 축산과장님이 해주신 자료 3권을 종합해 보니까 내용이 아주 불충분합니다. 한우선정 농가에 대한 명단이 있는곳도 있고, 전혀 내용이 검토가 안된 상태에서 감사에 임하시는것 같은데 본위원이 암만 봐도 10농가중에서 개인별로 사업계획서가 없습니다. 방림면 같

은곳은 하나도 없어요.

두번째 평창 송어양식장에 현지에 가보니까 양식장을 증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언제 해줬습니까?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득이나 평창강이 다오염되 가지고 여름철에 목욕들 못하고 난리인데 왜 증축을 해서 양식을 할수 있도록 하는 이유가 뭔지 축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畜産課長 鄭義秀 : 먼저 말씀하신 한우사업의 농가별 사업계획서는 현장확인감사의 자료에서 현장확인대상 농가에 해당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자료가 붙었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방립면 농가는 그당시 현장확인대상 농가가 아니였기 때문에 현장확인감사 자료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만, 말씀 끝나시는대로 현장확인감사 자료에서 빠졌던 농가분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추가로 즉시 드리겠습니다.

○ 朱泰元 委員 : 과장님 자료요청을 할

때에 당초에 농가가 사업계획서를 이리이리하게 사업을 하겠다고 제출한 그사본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뭘니까? 그사본이 아니잖아요?

농가별로 농가가 신청한것이 있을것 아닙니까?

○ 畜産課長 鄭義秀 : 네.

○ 朱泰元 委員 : 그런데 일괄적으로 이렇게 한것은 어디서 근거해서 해은겁니까?

○ 畜産課長 鄭義秀 : 행정사무감사 자료철에는 없고 잇그제 현장확인감사자료철에 농가사업계획서가 복사되어 붙었습니다.

○ 朱泰元 委員 : 잇긴 잇는데 그것은 과장님 임의로 만들어서 제출한 것이고 당초에 농가가 한우경쟁력 사업을, 내가 이리이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본군에 제출한 자료가 있을것 아닙니까?

○ 畜産課長 鄭義秀 : 네, 있습니다.

○ 朱泰元 委員 : 그것을 사본하라는 애깁니다.

○ 畜産課長 鄭義秀 : 네, 서류를 다시

가져오겠습니다.

이해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朱泰元 委員 : 당초에 어떤과정에 의해서 경쟁력 사업을 선정을 했느냐 그것을 알고 싶어서 원래 자료를 사본해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

과장님 분명히 얘기합니다. 당초에 본군에서 농가별로 신청을 10농가를 받았던지 100농가를 받았던지간에 받았으면 받았다고 하고 안받고 축협에서 해서, 여기 자료도 나와있지요? 축협에서 이렇게 농가를 선정해서 통보하니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달하는 이런 축협 직인 찍어가지고 통보한 그 근거에 의해서 선정이 되었는지, 그렇지 않고 본군 축산과에서 농가에게 신청을 받아서 축협에서는 갖춰야할 신용부분, 확인할부분 확인해가지고 해서 선정이 되었는지 확실한 답변을 하세요.

○ 畜産課長 鄭義秀 : 맞습니다. 농가 신청 원안이 군에 다들어와 있습니다.

○ 朱泰元 委員 : 기왕에 이번 감사는 선서까지 하셨으니까 얼버무려 넘길 생

각 하지말고 똑바로 합시다.

○ 畜産課長 鄭義秀 : 농가별 사업계획서는 지금 주태원 위원님과 말씀하셨던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확인을 직접 하신다음에 복사를 해서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 평창송어양식장의 시설중측되었다고 말씀하신 사항은 어업신고 이후에 중측된 시설의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현지확인 하신것과 한가지로 새시설이 되어 있는것은 그자리에 그위치대로 되어있는 사항이 시멘트 벽같은것이 오래쓰는 과정에서 낡아서 물도새고 그러니까 원래있던대로 다시 보수 내지는 그러한 형태지 새로이 늘렸거나 그러한 면적은 없습니다.

○ 李相燾 委員 : 과장님, 저희들이 명년도에 결산검사를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 다시 오늘 본위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그때 다시 확인할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 할때는 적어도 송어양식을 주로하는 사람들이 어떤 허가나 이런 절차를 거치

지 않고 자기힘으로 늘려서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그렇게 시설할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과장님은 그자리를 허가를 안내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 畜産課長 鄭義秀 : 고기 기르는 탱크 구조물 설치에 대해서는 허가라는 절차 규정이 없지요.

○ 李相薰 委員 : 아니 양식장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송어를 키울수 있는 시설을 내가 가보니까 해냈는데 과장님 허가를 안하셨다고 하잖아요.

김수돈 사장한테 허가를 안해줬다는 얘기잖아요? 해준겁니까?

○ 畜産課長 鄭義秀 :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그위치에 그런 형태의 그전부터 만들었던 탱크가 있었는데 그것이 낡으니까 헐어내고 다시.....,

○ 李相薰 委員 : 간단히 얘기하십시오. 그것을 허가해 주었느냐, 안해주었느냐 간단히 얘기 하십시오.

○ 畜産課長 鄭義秀 : 저희는 허가한것이 없습니다.

○ 李相薰 委員 :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한우육성 종합대책 농가선정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없으니까 오늘 본위원이 감사를 할려고 하는데 굉장히 차질이 옵니다. 가령 대화에 A라는 사람, 방림면에 B라는 사람, 이사람이 당초 사업계획서를 본군에 냈던, 축산과로 제출이 되었던 간에 얼마의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한다고 계획을 해서 제출했는데 이 자료를 보면 수정을 많이 했어요. 박정각 같은사람은 당초 계획은 1억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8,000만원이 수정이 되었는데 그런데 이사업계획서를 자료요구를 해달라 했는데 자료에 안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전부 현황입니다.

○ 畜産課長 鄭義秀 :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 李相薰 委員 :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화면 상안미리 김종석은 우리가 현지에 가보니까 초지가 한평도 없습니다. 그날 가봤을때 축사만 지어났어요.



이 사람은 뭐하는 사람인가 하면 대화축협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그럼 소를 안 키우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농가입니다. 그런데 선정대상에서 어떻게 이 사람이 들어 있는지 말입니다.

이런 사람도 축산육성 자금을 지원해줘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畜産課長 鄭義秀 : 개인단위의 한우 목장 지원대상자는 초지나 사료포동 조 사료 생산기반을 두당 0.1ha 이상 확보를 하고 55세 이하로서 5년이상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면 해당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농가의 사업신청서를 검토하여 보니까 계속해서 비축협 직원으로 근무는 하고 있었지만 한우가 계속 사육되고 있었고 종전부터 한우를 사육하고 있었고 그다음 궁극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 이 사업자금을 본군관내의 한우사육기반 확대를 위해서 신청된 전농가는 군의 육심으로서는 중앙의 지원을 다 받아 주기 위해서 중앙단위에 신청을 한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군이 축산업에 의욕이

있었다고 할까요 그런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가보신것과 한가지로 약간의 미비점이 있다고 판단되시더라도 한우사육기반을 우리군이 조기에 갖추다 이런 차원에서 행정기관에 의욕이 앞섰다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李相薰 委員 : 과장님 그 취지는 본 위원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어차피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자격이 있던, 없던 선정이 되서 내려오는 예산이 많지 누구든지 다쓰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인데 본위원이 생각할때에는 대화면 하면 면내에 축산농가라서 이런 사업을 하고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을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면행정이 잘못되었던 축산행정이 잘못되었던 간에 면민들한테 홍보가 안되고 바로 본위원이 말씀드린대로 내가 생각할때에는 비농가인데 축산농가의 자질이나 여러 여건으로 맞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육성자금을 받을수 있겠느냐 나는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축산과장님이 대화 농가선정에 대한 문제가 행정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畜産課長 鄭義秀 : 농가선정 기준이나 사업지침으로 봐서는 잘못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 李相薰 委員 : 10농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축산행정을 수행하다 보니까 다소 미스가 생겼다 이런다면 몰라도 축산 농가 선정기준이 적합하다고 주장한다면 그기준 공문쯤 가지고 오십시오.

○ 畜産課長 鄭義秀 : 지금 위원님 말씀해주시는 그사항이 역시 제가 생각하고 있던 사항이나 한가지 입니다.

○ 李相薰 委員 : 위원들이 다가보았고 또 기준이 선정과정이 잘되었다,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말씀인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이해가 안가는 애깁니다.

○ 畜産課長 鄭義秀 : 행정기관에서 적합하게 잘되었다고 제자신이 평가는 안합니다.

그렇지만 먼저 말씀올린것과 한가지로 우리 관내에 한우사육기반을 하루라도

빨리 넓혀 나가자는 뜻에서....,

○ 李相薰 委員 : 물론 알아요. 우리 강원도의 21개 시군중에서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예산을 가져오는데 공헌하시고 애쓰시는것도 본위원이 압니다.

그러나 이걸 감사기 때문에 궁급했던것을 물어보면 답변을 소신있게 해주셔야지요. 그런식으로 답변해 주시면 곤란하잖아요? 이상입니다.

○ 畜産課長 鄭義秀 : 죄송합니다.

○ 李致玉 委員 : 이치욱 위원입니다.

추가로 한우단지목장및 영농조합법인협업체육성, 93년도부터 94년간 총 전국에 700억이라 그랬잖아요?

○ 畜産課長 鄭義秀 : 네.

○ 李致玉 委員 : 그런데 평창군이 축산군이고 강원도에는 이것이 93년도 94년에 얼마나 배정이 되었습니까?

○ 畜産課長 鄭義秀 : 이사업이 93년도에 대상자 선정을 해가지고 94년도까지 마감하라는 사업인데 강원도 전체가 이사업의 최종사업자 승인받은 현황을 보면 총 32개소가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군이 10개소를 확정을 받았습니니다.

○ 李致玉 委員 : 강원도에 2년에 걸쳐서 700억중에 강원도에 얼마나 배정이 되었느냐 말입니다.

○ 畜産課長 鄭義秀 : 도전체의 사업비를 말씀하시는겁니까?

○ 李致玉 委員 : 평창군은 2년차에 걸쳐 10억입니까?

○ 畜産課長 鄭義秀 : 네.

○ 李致玉 委員 : 이것을 보면 대상자 구비요건이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말씀대로 과장님께서 선정을 잘못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전의 얘기대로 어느부분은 행정처리를 잘했고 어느부분은 행정처리를 못했고 이것은 잘못되었고 이것은 잘했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덮어놓고 뭐든지 다 잘되었다고 우기니까 시간만 길어지고 그래요.

사람이 일을 하다보면 행정도 그렇고 모든 개인적인 업무도 그렇고 잘되는 수도 있고 잘안되는 수도 있지 다잘못했다는 것도 아니고 다 잘했다는 것도 아닌

데 다 우기니까 시간만 끌고, 물론 행정사무감사지만 필요없는 에너지 소모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러지 마시고 잘되고 잘못되고 그렇게 얘기 하십시오. 대상자 구비요건에 보면 사육장 해서 초지조성이 가능하거나 최소한 방목이 가능한 산지 내지는 평지를 우선적으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절차가 다나와 있는데 이제말씀하신 축협에 직원, 누구누구 다 잘못되었는데 잘못된것은 잘못되었다고 그리고 잘된것은 잘되었다고 해야 되는데 안된다, 그리고 그 서류를 요전에 말씀하신대로 10농가를 받아가지고 10농가를 다 허가했다, 그외에는 접수한것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서류를 복사해가지고 제출하십시오. 차후에 읽어보고 그렇게 하십시오.

○ 畜産課長 鄭義秀 : 이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과 같은내용으로 알고 복사를 하겠습니다.

○ 李致玉 委員 : 이상입니다.

○ 朱泰元 委員 : 개별사업계획서 신청사본은 지금 해올수 있잖아요?

○ 畜産課長 鄭義秀 : 지금 됩니다.

○ 朱泰元 委員 : 지금 해오시고 조금전에 이상훈 위원이 말씀하시는 대화의 사업장이나 그외에 10개 사업장을 현지 지도를 몇차례나 하셨습니까?

특히 대화의 김종석씨 사업장하고 방림의 박정각씨 사업장을 몇번이나 갔다 왔습니까?

○ 畜産課長 鄭義秀 : 저는 자주 못갔습니다만, 직원들은 계속해서 현지 지도를 했습니다.

○ 朱泰元 委員 : 과장님은 몇번이나 갔다 오셨습니까?

○ 畜産課長 鄭義秀 : 저는 작년도 사업자 심사할무렵에 한번 갔다오고 그다음 금년 여름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 朱泰元 委員 : 그럼 두번씩은 갔다 오셨네요.

○ 畜産課長 鄭義秀 : 네.

○ 朱泰元 委員 : 그럼 대화의 김종석씨 사업장에 가서 문제점이 뭐라고 과장님은 출장복명을 하셨나요?

○ 畜産課長 鄭義秀 : 서면 복명은 안했

습니다만, 현장 지도와....,

○ 朱泰元 委員 : 서면복명은 안하시고 과장님이 가서 보시고 농가에다 무슨 지도를 했거나 어떻게 어떻게 하라던가 또 뭐가 사업장이 잘못선정이 되었다던지 또 사업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전혀 발견하시지 못했습니까?

○ 畜産課長 鄭義秀 : 그당시는 아직까지 주어진 사업이 본체도에 오르지 않는 시기였기 때문에 사업의 촉진과 아울러 이사업이 완성된 이후에 단단한 각오를 가지고 지금부터 단단히 의지를 가지고 나가라 하는 사항을 주제로 해서 농가 지도를 했습니다.

○ 朱泰元 委員 : 그런데 그후에 현재까지 거기서 된것이 무엇입니까?

사업계획대로 된것이 무엇입니까?

○ 畜産課長 鄭義秀 : 김종석씨 사업장은 요전에 위원님들 현지확인하신 이후에 주어진 사업이 주변환경정비랑 다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박정각씨 사업장은.....,

○ 朱泰元 委員 : 환경정비 같은것은 생

각할 여지도 없고 한가지만 말하면 사업 계획중에 전기사업이 있지요?

○ 畜産課長 鄭義秀 : 네.

○ 朱泰元 委員 : 전기사업을 당초에 아직 자료가 안왔기 때문에 본인도 전기인입을 한다라고 했고 사업승인도 전기인입으로 했지요?

○ 畜産課長 鄭義秀 : 네.

○ 朱泰元 委員 : 현지에 가보시니까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畜産課長 鄭義秀 : 전기인입사업이 사업량으로 따지면 극히 미비한 사업이지요. 물론 시설이 신축이 되니까 전기를 인입을 해야 하지만 큰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 朱泰元 委員 : 그런데 지원계획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 畜産課長 鄭義秀 : 지원계획은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사업은 이사업을 전체적으로 사업완료보고와 동시에 사업비 집행사항을 각종증빙서비치를 꼭 하도록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 朱泰元 委員 : 증빙서 비치가 문제가 아니라 당초에 전기인입을 몇km로 한다 하셨습니까?

○ 委員長 李致玉 : 집행부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 15時07分 監査中止)

( 15時41分 監査繼續)

○ 委員長 李致玉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주태원 위원님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畜産課長 鄭義秀 : 축산과장 정의수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대화면 김종석씨 농가의 전기사업량은 0.6km 즉600m에 총사업비 330만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농가가 처음에 사업계획을 구상한것은 축사 내부나 가정용 전기는 집앞까지 이미 설치되어 있는 일반가정

선 전기를 이어서 인입을 하는것으로 계획이 되었지만 여기서말하는 전기인입 사업은 목장사업을 전업화 하기 위해서는 사료분쇄기나 대형캣타동 동력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 동력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목장경영 차원에서 동력선을 인입한다 하는 구상하에서 큰길에서 부터 끌어들이는 계획이 되었었습니다.

○ 朱泰元 委員 : 과장님이 현지출장 두 번 하셨다고 하셨지요?

그리고 동력선이니 무슨선이니 그런것을 한집에서 안방에가는것 30m 계산하고 뒷방에 가는것 50m 계산하고 해서 나온 것이 600m 입니까?

○ 畜産課長 鄭義秀 : 가정용 전기가 아니지요.

○ 朱泰元 委員 : 글썄 가정용 전기던 농업용 전기던 전기는 전기 아닙니까? 그래서 당초사업계획이 600m이고 과장님 확인하셔서 사업책정도 하고 최후조정 해가지고 1,650만원 지원금까지 쥐가면서 600m인데 그것이 600m가 되는가 말입니다.

○ 畜産課長 鄭義秀 : 집앞에 까지 와있는 선은 일반가정용 전기고, 이목장경영을 위해서 동력선이 목장까지 들어와야 될 사항을 생각을 하고 농가가 신청을 하였던 겁니다.

○ 朱泰元 委員 : 그러니까 확정올한 농가야 뭐 60,000m를 사업계획을 신청했던 간에 최종확정을 하고 보조금 확정을 할 때에는 타당성 조사를 충분히 하고 모든 것을 결정했을것 아닙니까?

○ 畜産課長 鄭義秀 : 여기서 나오는 사업은 동력선을 의미하는 것이지 일반 가정용 선이 아닙니다.

그런데 동력선은 현재 한전과 계속 신청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조치가 안되었습니다.

○ 朱泰元 委員 : 그것이 600m가 되는가 말입니다. 동력선이던 가정용 전기던,

○ 畜産課長 鄭義秀 : 동력선은 저아래 개울가에 큰길가에서 끌어와야 합니다.

○ 朱泰元 委員 : 그집 마당가에 변압기 까지 있는데 동력선을 다른곳에서 끌어온다고 합니까?

○ 畜産課長 鄭義秀 : 그선거지고 분쇄기나 소형카타는 모타를 달아서 쓰겠지만 중형카타 이상은 모타를 달아서 못쓰지 않습니까?

저희는 사업자의 경영계획을 그렇게 판단했지요.

그래서 처음에 사업자가 신청한 사업비가 도를 거쳐서 농림수산부에서 확정되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가 줄여서 감면처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농가는 동력선도 끌지 못하고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는 중이지요.

○ 朱泰元 委員 : 지난번 의원님들이 대화사업장하고 방림사업장을 다녀온후에 이 두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과장님이 무슨말씀을 하셨는지 사실대로 진솔하게 전한말씀을 하십시오.

○ 畜産課長 鄭義秀 : 제가 의원님들이 현지확인하실때 직접 안내를 못했기 때문에 일단 사업이 마무리시기가 되고 그래서 두사업장을 제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획된 사업을 년내에

성실하게 마감을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 朱泰元 委員 : 그외에 하신말씀은 없습니까?

○ 畜産課長 鄭義秀 : 그외에 다른얘기는 한것이 없습니다.

○ 朱泰元 委員 : 분명히 의원들이 다녀간후에 의원들이 지적을 하기때문에 각종 보조하는 사업을 축소내지 취소할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안하셨습니까?

○ 畜産課長 鄭義秀 : 그런얘기는 한적이 없습니다.

○ 朱泰元 委員 : 전화가 왔어요.

○ 畜産課長 鄭義秀 : 농가들이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

○ 朱泰元 委員 : 당사자 하고 대면을 할까요?

○ 畜産課長 鄭義秀 : 그래도 좋습니다.

○ 朱泰元 委員 : 분명한거지요?

○ 畜産課長 鄭義秀 : 네.

○ 朱泰元 委員 : 저에게 온것이 아니라 의장님께 분명히 전화가 왔습니다.

와가지고 사업지적을 하고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각종 보조금을 지원할수가

없다, 축소할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얘기하니 그사람들이 왜 자기들 잘못이나 시행에 어떤 문제점은 반성할 여지도 없이 의원들이 사업하는데 관여를 해가지고 문제 제기를 함으로 해서 각종 지원을 받을수 없다, 의원들 때문에 이사업을 지원받을것을 못받는다 하는 생각으로 전화를 한거예요.

○ 畜産課長 鄭義秀 : 공직자로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없지요.

○ 朱泰元 委員 : 다시확인해서 안했다면 다행입니다만, 확실히 하고서 이자리에서 안했다고 하면 문제는 달라지는 겁니다.

그다음, 당초에 이 10개사업장을 과장님 지금까지 직접 본군 축산과에서 사업계획서,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는 신청서를 접수하셨다고 하는데 그 사본이 왔습니까?

○ 畜産課長 鄭義秀 : 거의 다되어 갑니다.

○ 朱泰元 委員 : 그러면 지난번 현지확인때부터 축산과에서 제출한 자료는 뭐

니까? 어느것이 지금 과장님이 이 감사장에서 답변하시는 내용은 처음에 사업계획 신청서를 직접 접수해서 모든 선정과정을 거쳐서 했다고 답변을 하셨고, 지난번 임시회 현지확인시에 제출한 자료는 축협에서 일괄접수 심사해서 이리러리한 10개사업장이 선정되었으니 조치를 해달라는 공문서를 첨부해서 접수한 자료를 제출한것은 뭐냐 이겁니까? 어느것이 맞습니까?

○ 畜産課長 鄭義秀 : 현지 확인때에 제출해드렸던 자료가 농가가 자기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융자금에 대한 대출가능여부 판단서 하고 그다음 기존 융자금의 대출잔액을 축협으로 부터 확인을 받아서 축협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해가지고 군청에 들어왔던 서류고요,

이번 제출한 서류는 도로부터 사업자 확정승인 받은 농가내역을 지시되어 있는 겁니다.

○ 朱泰元 委員 : 도의 확정내역 지시는 그것은 추후의 마지막 일이고 처음 농가나 사업주를 선정하는 과정이 어디서 했



느냐 말입니다.

○ 畜産課長 鄭義秀 : 농가자체가 자기 사업계획서는 자기가 작성해가지고 작성 과정에서 저희들이 작성지도를 해줄수 있는 농가는 스스로 할수있는 농가는 스스로 하고 그래가지고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축협으로부터 담보능력 검토를 받은다음에 군에서 접수해가지고 군에서 자료검토를 했습니다.

○ 朱泰元 委員 : 접수는 축산과에서 받고 축협에서는 신용만 점검해서....., 그게 아니잖아요?

○ 畜産課長 鄭義秀 : 절차가 그렇잖아요?

○ 朱泰元 委員 : 절차는 그렇게 해야 맞는데 먼저 제출한 내용은 그게 아니잖아요?

○ 畜産課長 鄭義秀 : 먼저도 그런뜻으로 제출을 드렸는데요.

○ 李致玉 委員 : 이야기 길게끝지 말고 자료나 계획서에 보면 사업주체가 시장 군수잖아요?

그러니까 근본 핵심적인 얘기를 하자는

애깁니다. 그러니까 한우단지 시범사업, 이것은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에 보면 시장 군수이거든요. 그러니까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핵심적인 부분이 왜 10농가만 받아서 10농가 전액을 승인을 했느냐, 그것 한가지고 두번째가 우리 본군 축산과에서 받던가 각읍면사무소에서 축산담당 공무원이 접수를 해가지고 해야 될텐데 왜 축협에서 이것을 접수해가지고 군으로 이송시켰느냐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업무가 잘못되었습니다. 왜 축협이라는 곳은 거기 이런 서류를 접수하는 곳이 아니고 용자를 해주기 위해서 일단 협조를 해가지고 그서류를 타당성 검토를 해서 이 사람이 용자를 해줘도 될사람인가, 안될사람인가 하는 그런 절차만 남아 있는거지 왜 축산과의 소관을 자기네가 접수를 해가지고 거기서 검토를 해서 넘겼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접수를 할때는 먼저 주민들이 한다면 민원실에 접수를 한다던지 축산과에 접수를 해야지 축협에서 접수를 했다는 것은 잘못된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했다, 잘했다, 절차가 잘못되었다 얘기를 해야지 자꾸 다른소리를 하니까 시간만 끝잡아요.

○ 朱泰元 委員 : 과장님 축협이라는 곳은 본사업의 그 10농가가 되었던 5농가가 되었던간에 축산과에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해가지고 이사람이 분명히 이사업을 목적대로 이행을 할것이나, 사업을 할것이나 하는것을 확인한후에 김아무개, 박아무개 이러이러한 사람의 신용조서 의뢰만 과장님이 축협에다 하게끔 되어 있는거지요?

축협은 할수있는것이 단지 어떤사업주가 하던지 어떤 농가가 하던지간에 신용업무에 관한것만 확인을 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습니까?

○ 畜産課長 鄭義秀 :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절차는 못이루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접수를 해가지고 축협에다 신용도를 의뢰해서 회신을 받았다면 좋지 않았냐는 말씀이시지요?

○ 朱泰元 委員 : 좋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잘못되었잖아요?

○ 畜産課長 鄭義秀 : 맞습니다. 시인합니다.

○ 朱泰元 委員 : 그렇게 안하고 축협에다 접수를 해라 도와달라 해가지고 축협이 통보를 해가지고 선정결정이 되었는데 별도로 사업주들이 축협에 사업계획서 신청을 따로내고 축산과에 따로낸것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서 신청서를 어디다가 처음에 냈느냐 말입니다.

○ 畜産課長 鄭義秀 : 축협에 바로 냈습니다.

지금 지적해주신 그절차가 합당한 절차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농가가 자기사업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우선 축협에다 자기사업계획서를 제시해 가지고 예심검토를 받고 그다음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예심검토를 받은 검토의견서를 농가가 다시 자기손으로 가지고와서 행정기관에 제출을 했어야 맞는데, 농가가 다시 축협이 검토한 검토의견서를 몽땅 찾아다가 행정기관에 제출하면 농가가 번거로우니까 축협에 몽땅내면 축협에서

검토를 하고 검토의견을 붙여서 군으로 바로 보내달라고 그렇게 농가에게도 얘기를 하고 축협에도 너희들이 검토해서 농가가 신청한 사업계획서까지 전부 군으로 보내달라 이렇게 된겁니다.

○ 朱泰元 委員 : 그러면 그것이 사실이지요?

○ 畜産課長 鄭義秀 : 네.

○ 朱泰元 委員 : 사실인데 조금전에 휴식하기 전에는 과장님이 분명히 축산과에서 사업계획서 신청서를 접수해서 지금 사본하러 갔잖아요?

○ 畜産課長 鄭義秀 : 그러니까 그 군청에 들어온 서류를 사본하는 겁니다.

○ 朱泰元 委員 : 아니 과장님이 축협에서 온것을 사본하던지 바로 받은것을 사본을 하던간에 조금전에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축협에다 제출했다는 소리는 안했습니다. 축산과에서 사업계획서를 접수해가지고 선정과정을 시행했다고 했지,

○ 畜産課長 鄭義秀 :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면 잘못말씀 드린거지요.

○ 朱泰元 委員 : 나혼자 유독 잘못들은 것은 아닐테니까 확실한 답변을 하세요. 그리고 시인을 하시니까 그런데 이사업은 축산발전사업 실시요령을 읽어보니까 처음부터 축협에다 주도권을 주지않고 본군에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축협은 할일은 이런사람을 이사업에다 확정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사람에 대한 용자, 다른것은 문제가 될것이 없습니다. 보조해주는 것은 말그대로 보조해 주니까 그렇고 용자를 받기 위해서는 축협이 신용조사를 해야 되니까 이사람이 부채가 있다던지 신용이 나쁘다던지, 용자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그사항만 명단통보를 해가지고 신용조사만 해서 통보받으면 될사항을 모든것을 축협에다 맡겨서 축협이 사업자 선정까지 다해버렸습니다.

○ 畜産課長 鄭義秀 : 축협이 사업자 선정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 朱泰元 委員 : 그렇게 해서 통보를 해가지고 이리이러한 선정이 되니까 통보를 한것이 지난번 자료제출에서 나왔

잖아요? 문서로 확증이 된것인데 아니라고 한들 무슨소용이 있습니까?

○ 畜産課長 鄭義秀 : 산발적으로 들어온 사항을 자기네가 검토를 해가지고 그 농가한테 다시 검토의견서를 첨부해가지고 농가에 쥐서 그농가가 다시,

○ 朱泰元 委員 : 축협이 무슨 검토의견서를 첨부할것이 있습니까? 신용사항만 확인하면 되는데.....,

○ 李致玉 委員 : 과장님 그것이 왜 그렇게 해석이 되는가 하면 실제로는 축협이 안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렇게 해석을 할수밖에 없습니다.

본군에서 10농가를 선정해야 하는데 축협에서 100농가를 여신검토도 하고 뭐도 하고 해서 본군 축산과로 넘어온것을 축산과에서 10농가만 선정을 했다 하면 그런 의혹을 안받는데 이것은 10이라는 숫자만 왔다갔다 한것입니다. 그렇지요?

○ 畜産課長 鄭義秀 : 네.

○ 李致玉 委員 : 검토를 해서 이리로 보냈던지 저리로 보냈던지 10농가만 왔

다 갔다 한것입니다. 그러니까 축협에서도 이상하게 이루어 진것이고 본군 축산과에서도 이상하게 이루어 진것이지, 10농가만 검토를 해가지고 왔다갔다하다가 10농가가 그대로 선정이 되었던 말입니다. 그런데 단지 자부담이나 융자라면 모르지만 보조라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검토를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고 잘못되었는가, 또는 잘되었는가 또는 정당하게 했는가 그것만 얘기를 해야지요. 잘못된거지요?

○ 畜産課長 鄭義秀 : 네.

○ 金樂雲 委員 : 김낙운 위원입니다.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은 말 그대로 앞으로 축산물 수입개방이 되더라도 축산농가가 경쟁력을 키워서 수입축산물과 경쟁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수 있는 그러한 의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정과정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었는데 과장님 시인하셨으니까 앞으로 남은문제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10개업체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업을 잘 마무리 하고 그것을 기

반으로 해서 경쟁력을 제고해 나갈수 있느냐 하는것이 앞으로 남은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사업에는 축산발전기금과 같은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실지 자기가 사업을 그 예산을 투자하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지나치게 사업을 확대해서 신청하고 그것을 제대로 집행못할수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특히 현장을 나가봤을때 느끼는 부분들이 이번에 만약에 의회에서 현지확인을 하지 않았더라면 대충해서 넘어갔을겁니다. 그리고 예산은 예산대로 집행이 되었을 겁니다. 꼭 그렇다고 단정을 하기는 어렵지만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문제가 되서 현지확인을 다니고 또 축산과에서도 독촉을 하고 하니까 좀더 알차게 사업이 집행이 되는것으로 이렇게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농촌에 지원하는데 그 자체를 잘 이해를 하고 축산농가나 일반농가나 그러한 자금을 받아서 효과적으로 잘 활용을 하

는것이 투자의 효과를 거두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사실상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지 않아도 될사람들 또 기 시설이 되어 있는것을 보완해서 사업자금만 받으려고 하는사람들, 그런 부분들이 상당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사업이 꼭 필요하고 그사업비가 아니면 사업을 할수 없는 그러한 대상자들이 그런 사업의 혜택을 받을수 없다는 애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을 하게되면 더더욱 그 대상자 선발을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꼭 받아야 할사람들이 받을수 있도록 하고 그사업비를 집행함으로써 인해서 그러한 농가들이 경쟁력을 갖춰 나갈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집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보조주는것은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것이 아니거든요. 다 국민의 혈세입니다. 그리고 축산물을 수입하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차액을 정립해가지고 축산발전기금 같은것을 만들어가지고 결국 그것은 축산농가들의 피와

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돈을 투자를 할때는 효과적으로 또 나중에 어떤 지역에 농민들에게 경쟁력을 제고할수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 투자가 되어한다는 애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사업,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자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 畜産課長 鄭義秀 : 명심하겠습니다.

○ 金樂雲 委員 : 특히 올해한 10개농가가 남은기간동안 잘 마무리가 되서 이사업비가 효과적으로 집행이 되면 다행이지만 이렇게 감사가 끝나고 나서 챙기지 않으면 대충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담당과에서는 잘챙겨서 이사업이 잘 마무리가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라고, 나중에라도 이사업이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여론에 거론이 된다고 하면 특별조사를 해서라도 다시한번 거론해야 할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사업비 투자를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계속 이런일들이 반복이 될겁니다.

산업과도 정부예산투자가 많지만 축산과

도 앞으로 계속해서 정부투자 사업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을 비롯한 각계장님들 신경을 써서 사업비가 잘 집행이 되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무료진료에 동원되는 공수의 수당이 1년에 예산이 1,100만원정도 되는데 5명의 공수의가 동원이 됩니다. 그런데 춘계에 한번 실시하고 추계에 한번 실시하고 두번을 하는데 6개 부락을 대상으로 해서 862두 정도를 무료진료를 하는데 한번나오면 30만원내지 50만원을 지급하네요.

○ 畜産課長 鄭義秀 : 무료진료에 동원되는 동원수당이 아니고요. 매월 월수당입니다.

○ 金樂雲 委員 : 월수당입니까?

○ 畜産課長 鄭義秀 : 네.

○ 金樂雲 委員 : 그러면 이분들이 매월 공수의를 합니까?

○ 畜産課長 鄭義秀 : 공수의를 연초에 군수가 위촉을 하고 위촉장을 드리고, 그리고 공수의가 하는일이,

○ 金樂雲 委員 : 약품비는 별도로 지급

이 되지요? 그사람들은 주사놔주고 투여만 하는것 아닙니까?

○ 畜産課長 鄭義秀 : 기술지원만 하는 겁니다.

○ 金樂雲 委員 : 제가 알기에는 와서 주사놔주고 기술지도만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년에 비해서 소도 많이 줄어들고 해서 효과면에서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문제는 상당히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효과적으로 투자가 되어할것 같습니다.

공수의들이 한바퀴 돌고 그냥 수당만 받아가는 그런 형태로 지금까지 집행하던 대로 내려간다면 문제가 있는것이 아니겠어요?

예산이 1,100만원인데 5명에게 매월 얼마씩 지급하는 겁니까?

○ 畜産課長 鄭義秀 : 배치 기준에 갑지와 울지로 구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울지에는 월35만원, 갑지에는 월 30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군내에 국비공수의가 3명, 지방비에서 지원되는 공수의가 2사람인데 국비공수

의 3명중에서 2명은 갑지, 1명은 울지입니다.

○ 金樂雲 委員 : 1년에 몇번이나 동원이 됩니까?

○ 畜産課長 鄭義秀 : 먼저말씀드린 각종 정기에방주사의 책임시술문제가 전부 이분들 소관이고 그다음 무료진료사업에 동원되고 질병예찰 사업에 관내를 순회하면서 예찰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 각종 폐수검안사업도 이분들의 소관업무입니다.

○ 金樂雲 委員 : 이사람들이 나와서 일하시는 어떤 기록이 남은것이 있습니까?

○ 畜産課長 鄭義秀 : 매월 근무활동상황보고가 군수에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복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 金樂雲 委員 : 지금 바로 가져올수 있습니까?

○ 畜産課長 鄭義秀 : 최종월분만 드릴까요?

○ 金樂雲 委員 : 1년치를 다 주시기 바랍니다. 다뽑아 주시고 그다음 가축분뇨 유기질화 투자가 방림 계촌1리에 투

자가 되었는데 시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 畜産課長 鄭義秀 : 가축분뇨 유기질 비료화 시설은 진공건조기가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진공건조기가 설치된 상태에서 축분과 톱밥을 섞어가지고 2시간 정도면 완전히 가열된 상태에서 바로 가속 발효 과정을 거쳐서 완전히 마른상태로 해서 나옵니다.

그런상태에서 포대에 넣어서 여름철에는 1주일, 겨울철에는 2주일정도만 놔두면 완전히 포대내에서 완숙이 되어가지고 포장으로 바로 비료용으로 나갈수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 金樂雲 委員 : 부림한우 영농조합이 확보하고 있는 한우가 몇두나 됩니까?

○ 畜産課長 鄭義秀 : 270두입니다.

○ 金樂雲 委員 : 몇농가가 참가하지요?

○ 畜産課長 鄭義秀 : 6호입니다.

○ 金樂雲 委員 : 여기서 나오는 퇴비는 몇톤이나 생산되는 겁니까?

자료를 뽑으시고 그다음질문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축산폐수 정화시설에 보면 56개소를 투자를 하셨는데 시설을 하고 점검을 정기적으로 합니까?

○ 畜産課長 鄭義秀 : 네. 하고 있습니다.

○ 金樂雲 委員 : 1년에 몇차례 하십니까?

○ 畜産課長 鄭義秀 : 매분기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 金樂雲 委員 : 그러면 정화조에 차면 다 수거를 해내야 되는거지요?

어떻게 하나요?

○ 畜産課長 鄭義秀 : 그것이 지금현재 제조되는 정화조는 그정화조를 거쳐서 나가는 과정에서는 완전히 안전한 상태로 제대로 되었습니다.

○ 金樂雲 委員 : 정화조를 수거해야 될것 아닙니까? 찌꺼기가 남을테니까

○ 畜産課長 鄭義秀 : 오줌만 들어가서,

○ 金樂雲 委員 : 오줌을 거기서 정화시켜서 맑은물로 내보낸다,

○ 畜産課長 鄭義秀 : 분해를 해가지고 맑아진 상태에서 다시 배출구로 나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 金樂雲 委員 : 환경보호과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송어장에 침전지 시설을 10개소 다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만드는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고 철저하게 이용을 하는것이 바람직 하리라고 생각이 되서 축산과의 협조를 해서 1년에 주기적으로 수거를 할때 직접 현장을 확인한 상태에서 수거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하지 않으면 설치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가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환경보호과 하고 축산과수도 마찬가지로 특히 송어장에 침전지를 정기적으로 잘 수거할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협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畜産課長 鄭義秀 : 알았습니다.

○ 朱泰元 委員 : 한우경쟁력 사업에 당초에 사업장 출장시에 계장님이 갔거나 담당공무원이 갔거나 현지출장시에 사업장 사업시작하기 전에 현지 사진같은것 찍어 놓은것이 있을것 아닙니까?

○ 畜産課長 鄭義秀 : 지금현재 농가가 사업착수전, 공사중, 완공사진을 농가가 준비하도록 사업진행과정에 주문을 해놓고 있는데 아직까지 사진이 군에 들어온것은 없습니다.

○ 朱泰元 委員 : 농가보고 하라고 하니 농가가 부담해서 하는것이고 공무원들이 현지를 출장을 가면 그것은 거의 상식적으로 하는것이 아닙니까?

현지가 어떤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사업을 한다는것은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도 사진같은것 찍어가지고 올텐데,

그런것 안하고 그냥 출장복명 안합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갔다가 오는겁니까?

가서 지도를 하고 현지확인을 했으면 확인사항을 남기기 위해서는 사진같은것도 주요사업장인데 그런정도는 했으리라고 믿어지는데,

○ 畜産課長 鄭義秀 : 사진을 계속 직원들이 찍고 있습니다만, 아직 사진첩에 정리가 안된 상태입니다.

○ 朱泰元 委員 : 이제는 사업이 끝 마무리가 될테니까 축산과에서 찍어놓은것

이 있으면 근거제시를 해주시고 없으면 농가별로라도 들어오는것이 있을테니까 추후에 제출해 주시고 개별사업계획신청서 사본은 아직 안되었습니까?

왔으면 돌려주시고요.

그다음 어도시설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초에 어도시설을 보면 당초예산이 2,097만6천원이 93년 12월 21일날 확정 이 되었지요?

○ 畜産課長 鄭義秀 : 네.

○ 朱泰元 委員 : 그러니까 이것은 작년도 사업이지요? 이월된 사업입니까?

○ 畜産課長 鄭義秀 : 94년도 예산이 작년 12월달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거지요?

○ 朱泰元 委員 : 93년 12월 21일 괄호 안에 있는것은 무슨말입니까?

○ 畜産課長 鄭義秀 : 그것이 94년도 예산확정된 날짜지요.

○ 朱泰元 委員 : 2회추경에 10월 31일 날 한것은 됩니까?

○ 畜産課長 鄭義秀 : 그래서 도비 440

만원에 따른 군비부담 지시액이 1,760만원입니다. 그래서 토탈 2,2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야 하는데 지금말씀하신 바와 한가지로 당초예산에 2,097만6천원 밖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102만4천원을 추가로 확보를 해가지고 군비부담 지시액 1,760만원이 전액 확보 된겁니다.

○ 朱泰元 委員 : 그런데 이사업이 꼭 필요하니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은 되지만, 오늘이 12월 1일입니다. 여기다 봉평면장에게 12월 17일부터 착공을 해서 26일까지 완공해라, 9일간에 이 9일간에 사업자선정도 해야 되겠고 9일간에 될것 같습니까?

○ 畜産課長 鄭義秀 : 그것이 아닙니다. 자료 17페이지를 보시면 봉평면에서 계약을 끝내고 사업자가 11월 17일날 착공계가 들어왔습니다.

○ 朱泰元 委員 : 착공해서 완공할때까지가 9일간이지요.

○ 畜産課長 鄭義秀 : 11월 17일날 착공해가지고 완공예정일을 12월 26일로 되

어 있는데 계약서상의 완공예정일이 12월 26일로 되어 있지만, 사업의 성질로 봐서 지금현재 하천물둘리기 공사하고 거꾸집설치공사가 끝이 나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양개소에 레미콘도 하루에 다들어갈수 있는 사항이고 레미콘 들어가서 양생만 시키고 떼어내면 되기 때문에 지금현재 계약서상에 준공예정일 12월 26일 이전에 끝이 날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 朱泰元 委員 : 여기 이자료에 총 연장은 어도를 시설하는것이 아니고 보의 길이지요?

○ 畜産課長 鄭義秀 : 보의 길이와 폭을 표시한겁니다.

○ 朱泰元 委員 : 그런데 어도를 시멘트 콘크리트로 24.2m에 4.2m 넓이로 시설을 한다는 뜻이지요?

○ 畜産課長 鄭義秀 : 시설내역이 그렇습니다.

○ 朱泰元 委員 : 군예산도 없는데 그런 위치에다 1,760만원씩 부담해가며 겨울철에 이런 시설을 한다는것은 실지로 바

람직스럽지 못합니다. 할려면 가을철에 해서, 물이 흐르는 곳인데 시멘트공사라는것이 요즈음 해가지고 제대로 됩니까? 밤으로는 얼고 어떻게 보완조치를 할겁니까? 지금해가지고 이사업기간을 12월달에 이런 사업을 할수 있겠느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십시오.

○ 畜産課長 鄭義秀 : 끝이 날것이면 그전에 공기를 단축을 시켜서 끝을 내도록 해야되지, 이것이 최종 돈100몇10만원더 확보하기 위해서 추경을 10월달에 했다 하더라도 10월달에 추경에서 의회승인 나가지고 기왕에 할 사업이면 10월달에는 못한다 하더라도 12월달에는 이미 93년도부터 계획하고 있던 사업인데, 충분히 할수있는 공기를 가져야 하는데 하필 추운 겨울철에, 더구나 하천에 어도를 하는것이 되겠습니까? 차라리 이월해서 내년해 해빙하면 하는것이 좋지, 이사업이 부실공사가 안되겠느냐 말입니다.

○ 畜産課長 鄭義秀 : 기술진의 자문을 충분히 얻었습니다만, 공사의 내용으로 봐서 장기간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재무

과장님만 동의를 하면 바로 끝나겠습니다.

○ 朱泰元 委員 : 일단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실공사가 우려가 된다고 지적을 하니까 특별히 신경을 써서 부실이 안되도록 과장님 책임을 저주십시오.

○ 畜産課長 鄭義秀 : 네. 알았습니다.

○ 朱泰元 委員 : 지금해가지고 내년도 해병이 되면 피석피석 부서앉는 이런 시설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李致玉 委員 : 양식장 기자재 해주신 것 3,300만원 아직 안해가지고 오셨나요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말이지요 이지원을 원복수산등에 해주었다 했는데 보면 7월부터 11월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12월 년말에 완료하게 되어있단 말입니다. 어느정도나 했습니까?

○ 畜産課長 鄭義秀 : 기자재는 현재 다 들어 왔습니다.

○ 李致玉 委員 : 아직 설치는 안했습니까?

○ 畜産課長 鄭義秀 : 아니 다들어 왔습니다. 완성품을 사들이는 것이니까 다 사왔습니다.

○ 李致玉 委員 : 사오고 안사오고 그것을 얘기하지 마시고 설치률, 구입및 설치가 7월부터 11월입니다. 그러니까 12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느정도 했습니까?

○ 畜産課長 鄭義秀 : 다했습니다.

○ 李致玉 委員 : 그러면 년말에 준공점사 하겠네요.

○ 畜産課長 鄭義秀 : 네.

○ 李致玉 委員 : 그런데 어떤 지시나 지침에 의해서 이런 송어장을 주게 되었나요?

지침이나 지시가 도에서 있었어요?

○ 畜産課長 鄭義秀 : 사업계획과 지침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 李致玉 委員 : 어떤곳을 주라고 하였나요. 가장 대규모 송어장을 하라고 하였나요?

○ 畜産課長 鄭義秀 :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만, 양식장별로 각자가 필요한 기

자재를 신청을 해라 그래가지고 도에서  
보고되어서,

○ 李致玉 委員 : 그대 우리 평창군에  
30개내지 31개가 다 들어왔습니까?

○ 畜産課長 鄭義秀 : 네, 다들어 왔습  
니다.

○ 李致玉 委員 :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선정을 했습니까? 어떤기준에 의해서  
그러니까 도에서 지침이나 지시가 어떻  
게 내려왔으며 선정을 할때에 어떤 기준  
에 의해서 원복송어장, 강원수산, 방림  
무슨 송어장 했냐 말입니다.

지금보면 보조가 1,318만원이나 됩니다.  
그다음 용자 자부담 이런데, 그래도 보  
조가 몇100만원씩 돌아간겁니다.

○ 畜産課長 鄭義秀 : 이것은 농기계 반  
값공급 유형과 동일한 방법으로 지원이  
됩니다.

○ 李致玉 委員 : 14농가니까 100만원도  
채 안되는구만요. 1,318만원이니까  
또 용자가 있습니다. 이 용자는 몇%  
입니까?

○ 畜産課長 鄭義秀 : 용자조건이 년리

5%로 10년짜리 입니다.

○ 李致玉 委員 : 그렇게 해서 5-60만원  
씩 용자를 해주는 거네요.

그런데 왜 제가 기준을 묻는가 하면 큰  
송어장에 많이 있어야 되겠지만 이것을  
왜 지원을 해주느냐 그것이 핵심적인 질  
문입니다. 형평에 안맞는 거지요.

잘못하는 송어장 어려운 송어장을 지원  
해서 육성해서 균등하게 맞추어 나가야  
될텐데 어떻게 원복같은곳을 해주는가  
말입니다.

○ 畜産課長 鄭義秀 : 이것은 양식장별  
로 희망기종과 신청을 받았었는데 비싼  
기종이라 하더라도 보조 비율에 의해서  
하는것이 아니고.....

○ 李致玉 委員 : 알았습니다. 그리고  
신청을 받을때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받  
았나요 축산과에서 막바로 받았나요?

○ 畜産課長 鄭義秀 : 읍면장을 통해가  
지고 받았습시다.

○ 李致玉 委員 : 그러면 읍면에서 들어  
왔네요. 그러면 축산과에 근거가 있겠  
네요?

○ 畜産課長 鄭義秀 : 네.

○ 李致玉 委員 :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신청한것을 복사해서 내일 보내주시고 또 도에서 지침이나 지시가 있었다니까 그 근거하고 두가지를 복사해가지고 내일 오전이나 오후에 받아볼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畜産課長 鄭義秀 : 알았습니다

( 서면답변 - 끝에실음 )

○ 李致玉 委員 : 이상입니다.

○ 委員長 李致玉 : 보충질의 하실분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그러면 축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라. 山林課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거는 평창군의회가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의 엄정한 감사수행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하는 것으로 만일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山林課長 李基椿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1994년 12월 1일

산림과장 이 기 춘

( 산림과장 서명날인후 선서서 제출)

○ 委員長 李致玉 : 다음은 감사대상 사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山林課長 李基椿 :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

니다. 위로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9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 끝에 실음 )

○ 委員長 李致玉 : 산림과장님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容泰 委員 : 박용태 위원입니다.  
솔잎혹파리 수간주사에 대해서 질의하겠  
습니다. 금년에 2,500ha 발생해서  
2,500ha를 수간주사를 완료하셨다고 말  
씀하셨는데 2,500ha를 산림조합에다 전  
면적을 주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본 산  
림과에서 직영도 하신것이 있는지 거기  
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山林課長 李基樁 : 2,500ha 를 전부  
산림조합에다 위탁해서 수간주사를 실시  
완료했습니다.

○ 朴容泰 委員 : 직영하신것은 없고,  
전부 위탁을 하셨지요?

○ 山林課長 李基樁 : 네.

○ 朴容泰 委員 : ha단위에 단가가 얼마  
나 됩니까?

○ 山林課長 李基樁 : 26만3천원이 되겠  
습니다.

○ 朴容泰 委員 : 산림조합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작업단에게 하청을 준것은  
ha단위에 얼마나 됩니까?

○ 山林課長 李基樁 : 산림조합에서 계  
약해서 실행을 했기 때문에 산림조합에  
서 원칙적으로 직영사업으로 하도록 되  
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급을 어떻게  
줬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 朴容泰 委員 : 그러면 산림조합에서  
직영을 안하고 도급을 줄때는 그사람들  
은 마진을 몇% 먹게 되어 있습니까?  
그게 몇%까지 규정이 되어 있지요?

○ 山林課長 李基樁 : 조합법에 의하면  
17% 이하로 수입을 취하도록 되어있습니  
다.

○ 朴容泰 委員 : 그런데 그사람들이 하  
청준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수로 따  
지면 엄청난 % 가 나오는데, 그런것은  
산림과에서는 관리를 전혀 안합니까?

○ 山林課長 李基樁 : 그것은 산림조합  
의 운영관계에 있어서 마진을 조금 더주

라는 그런 조항이 있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주지 않고 17%만 취해라 하고 저희가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 朴容泰 委員 : 그래도 그사람들은 자기네 마진을 많이 먹기 위해서 상당한 %수를 취하고 하청을 주었는데 그러면 솔잎혹파리 말고 지면약제살포 또 피해목 벌채 천연보육림 조림사업같은것은 전부다 산림조합에다 위탁을 했습니까?

○ 山林課長 李基椿 : 지면약제 살포는 저희가 직영을 했고 항공약제 살포는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간벌은 산주가 원하는것은 산주가 실행토록 하고 산주가 하지 않겠다는것은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했습니다

○ 朴容泰 委員 : 조림사업, 피해목벌채 천연림보육사업 이것은 전부 산림조합에 위탁을 하셨지요?

○ 山林課長 李基椿 : 조림사업도 개인이 하겠다 하는것은 개인이 직접했고 개인이 하지 않는것에 한해서만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했습니다.

○ 朴容泰 委員 : 그것도 산림조합에서

받아가지고 자기네가 직접한것도 있겠지 만 또 하청을 전부다 준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업자들한테 줬는데, 자기네가 먹으라는 %수가 규정상에는 있지요?

○ 山林課長 李基椿 : 그것도 17% 이내로 이익을 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朴容泰 委員 : 그런데 보면 그사람들이 17%가 아니고 심지어는 20%, 25%까지 대충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솔잎혹파리 방제는 우리 위원들이 몇년동안 계속 유심히 살펴 보고 현지확인까지 했는데 이사람들이 많은량을 받아가지고 자기네가 직영을 못하고 하청을 주는데 한사람한테 너무 과도한 하청을 쥐가지고 미처 사업을 못하니까 순 엉터리로 작업을 합니다 구멍도 제대로 뚫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런것이 대다수가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명년에는 상당한량이 나오는 모양인데, 이것을 직영을 안하시고 전부다 위탁사업을 주신다면 거기에 대해 당부 말씀 드리고 제대로 살포를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山林課長 李基樁 : 알겠습니다.

제대로 감독을 해서.....

○ 朴容泰 委員 : 감독을 하셔야 할겁니다. 감독을 안하고 내버려 두니까 순 엉터리 입니다.

그때 한창 더운때가 아닙니까. 그러니 더군다나,

○ 山林課長 李基樁 :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朴容泰 委員 : 이상입니다.

○ 金鍾永 委員 : 김종영 위원입니다.

천연림보육및 보조 간벌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간이 8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라고 나와 있는데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했지요?

○ 山林課長 李基樁 : 네. 다완료 되었습니다.

○ 金鍾永 委員 : 확인했습니까?

○ 山林課長 李基樁 : 전부 확인했습니다.

○ 金鍾永 委員 : 11월30일이 어제인데,

○ 山林課長 李基樁 : 기간은 11월 30일

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당겨 했습니다.

○ 金鍾永 委員 : 그런데 산주하고 임협하고 위탁할때 어떻게 합니까?

○ 山林課長 李基樁 : 이것은 산주가 대상지를 선정해가지고 산주한테 일단은 충고를 합니다. 충고를 해서 산주가 직접 실행하겠다 하는것은 직접 산주한테 실행토록 하고 산주가 못하겠다 하는것은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실행하도록 합니다.

○ 金鍾永 委員 : 그런데 사업자금은 언제 지불됩니까?

○ 山林課長 李基樁 : 사업자금은 준공 검사 완료되서 넘어간 다음에 집행이 되니까 아직 이사업은 집행이 안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金鍾永 委員 : 준공검사가 끝났습니까?

○ 山林課長 李基樁 : 네, 끝났습니다.

○ 金鍾永 委員 : 그리고 읍면별 산불유급감시원 현황에 보면 건부면 같은곳은 상월오개리에 3명이 있는데 저쪽아래

신기리 같은곳에 더 있어야 될텐데 어떻게 상월오개리에 3명씩이나 됩니까?

그리고 도암면에 보면 인원이 적어서 사실 산밑에 병내리 같은곳에 1명씩 배치해야 될텐데 그런데 배치가 안되고 이것이 정상적으로 산불감시하는데 적합하게 배치가 안되어 있네요?

○ 山林課長 李基椿 : 이것은 면별로 10명씩 해서 배치를 했는데 면장이 어느지역이 제일 주의해야할 지역이다 이렇게 판단되었을때 거기다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 金鍾永 委員 : 그런데 감시를 하는지 안하는지....

○ 山林課長 李基椿 : 금년까지는 면에서 전도를 해줘서 면장책임하에 ,

○ 金鍾永 委員 : 면장이 책임을 지고 운영을 했습니까?

○ 山林課長 李基椿 : 네.

○ 金鍾永 委員 : 알겠습니다.

○ 金樂雲 委員 : 김낙운 위원입니다. 임도시설보수를 하셨는데 임도가 겨울이 지나고 해토가 되면 또 얼어붙었던 흙이

녹아 내리면서 배수를 메우고, 그대로 방치해두면 장마철에 물빠짐이 좋지않은 사태가 유발되는에 이렇게 한번 보수만 하고 끝낼것이 아니라 수시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토된 이후에도 한번 점검하시고 또 장마기 이전, 장마기 이후 수시로 점검을 해서 임도가 유실된 다음에 보수하는것 보다는 유실되기전에 점검하는것이 경비도 적게 들어가고 또 여러측면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임도를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사업을 임업협동조합에서 2,500ha를 계약을 해서 했는데 또 임협에서 하청을 또주지요?

○ 山林課長 李基椿 : 그 하청관계는 조합에 따라서 운영하는 측면에서 도급을 주면 빨리 할수 있고 아침일찍 할수 있고 그러니,

○ 金樂雲 委員 : 도급을 안주면 일을 못할겁니다. 임협에서 직접한다는것은 거의 불가능 하기 때문에 도급을 블립없이 주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개로

나눠서 도급을 주는지 그현황을 알수 없습니까? 감독을 군에서 하지 않습니까?

○ 山林課長 李基樁 : 군에서 현지가서 인부들이 제대로 시공을 하고 제대로 약을 투입하고 있는가 그런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몇개의 작업단을 해서 하청을 준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金樂雲 委員 : 앞으로 파악을 할수 있지요?

올해 2,500ha에 대한 하청업체를 파악을 해주십시오.

○ 山林課長 李基樁 : 하청업체 라기보다는 작업단이 되겠습니다.

몇개 작업단인지는 파악할수 있습니다.

○ 金樂雲 委員 : 몇개 작업단이고 작업단별로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인원, 그리고 작업단이 맡았던 구역 까지도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예산 심의하기 전에 가급적이면 내일 모래까지 감사들 하니까 자료가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 山林課長 李基樁 : 알겠습니다.

( 자료 - 끝에 실음 )

○ 朱泰元 委員 : 주태원 위원입니다. 임도 사후관리 현황을 자료를 받았는데 94년도 임도시설 보수가 93년도에 홍수 피해라던가 이런 사항에만 임도보수를 했고 94년도에 발생한 임도도 있지요?

○ 山林課長 李基樁 : 네, 피해가 있습니다.

○ 朱泰元 委員 : 그것이 어디어디가 얼마나 피해가 났습니까?

○ 山林課長 李基樁 : 맨뒀면에 94년도 피해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위치는 봉평면 평촌리, 덕거리의 5개소가 있고 진부면 상월오개리에 1개소가 있습니다.

피해상황은 임도유실이 0.2km이고 성토면 산사태가 2.1ha가 되겠습니다.

○ 朱泰元 委員 : 알았습니다. 그런데 평촌- 덕거간 임도가 93년도에 새로 개설한 곳이지요?

○ 山林課長 李基樁 : 네, 맞습니다.

○ 朱泰元 委員 : 그런데 임도는 하자보수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여기 자

료에 보면 천재지변에 의해서 복구가 하자보수로 할 성질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금년에는 홍수기가 그렇게 없었고 그런데 수해가 이렇게 났느냐 하는 의문점이 문제 제기가 되는데 사실상

수해가 천재지변인지 확인을 하셨습니까  
○ 山林課長 李基樁 : 확인을 하다 보니까 우기에 손실이 된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지만 산림조합에다 부담을 시키면 너무 급하지 않느냐 판단했습니다.

○ 朱泰元 委員 : 그리고 이 임도구간은 중간에서 당초의 계획대로 임도를 완성을 못하고 중간에서 중지를 했지요?

○ 山林課長 李基樁 : 완료를 못했습니다. 당초의 계획은 6km 계획인데 5.2km만 완료되고 0.8km는 완료가 안되었습니다.

○ 朱泰元 委員 : 이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山林課長 李基樁 : 이것은 당초의 계획은 6km로 계획을 했었는데 5.2km만 하고 0.8km는 안했는데 안한것은 안해도

임도는 충분하고 거기에 용벽을 친다든가 주요 공작물을 더 설치하는 것으로 도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시공이 되었습니다.

○ 朱泰元 委員 : 과장님 현지에 한번 가보셨어요? 안해도 된다는 것이 상당히 애매한데, 당초의 km를 계획했던 것은 평촌1리에서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덕거1리 놓어촌 도로까지 연결을 시켜서 임도로서 충분한 활용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5.2km를 해 나오다보니까 덕거리 쪽에 와가지고 산에 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쪽으로 통과를 못하게 하니까 결과적으로 0.8km를 안하고 중간에서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임도로 활용할수 있다는 얘기는 이 임도가 끝이난 지역에 농경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지역은 본위원이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상세하게 잘 압니다.

그런데 그 농경지로 도로가 없는데 농경지로 다닐수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그치고 말았거든요. 그러면 임도가 어느

도로에 연결이 되어 임도 구실을 하는데 5.2km 임도개설 해놓은것을 중간에서 끝을 맺지 못했기 때문에 무용지몰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지금 얘기는 충분히 임도구실을 할수있다는 것은 농경지에 트랙터, 경운기 이런것이 다니는 길아닌 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말이 안되는 거지요. 당초의 계획대로 덕거 1리 기운동이라고 하는곳 들어가는 도로까지는 연결을 시켜놓던지, 그렇지 않으면 당초의 계획했던 0.8km를 마주 하면 덕거1리 놓어촌도로까지 연결이 된다고요. 그런데 그쪽으로 하자면 예산도 0.8km를 하자면 엄청나게 더 들어가고 하니까 그당시에도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노선을 조금 변경해가지고 기운동으로 들어가는 낮은산으로 해서 도로에 까지 연결을 시켜놓으면 임도로서 충분한 구실을 하고 아무런 하자가 없을 것이다, 또 시행하는데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더니 중간에 작년에 해놓고 끝을 맺어버리고

금년에는 전혀 손도 안대고 거기다 또 가보니까 실지로 6월 30일날 그지역에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온것도 아닌데 하여튼 군데군데 길이 떨어져 나갔어요.

떨어져 나가니 하자 보수문제가 나오는데 시공한 산림조합에서는 하자 보수를 천재지변이니까 못한다 하는것이고, 또 어려운 예산확보 또해야 하고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은 신경을 써거 기왕에 5.2km를 개설을 해놓고 나머지 부분을 도로에다 연결을 안시키고 해서 활용을 못한다면 5.2km 투자한 가치가 전혀 효력이 없게 되지요.

○ 山林課長 李基椿 : 알았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저희관내에 임도를 9km를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현지확인해가지고 꼭 거기를 0.8km를 해야 되겠다면 다시 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 朱泰元 委員 : 참고할것은 지금 현재 된다고 하는것은 농경지로 드나드는 길아닌 길이 있는데 그 임도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리로 드나든다면 그 지주들이 허용을 절대 안할겁니다. 그런 어려움

이 있습니다. 지금 보기에는 편한 밭이 수천평 있으니까 그리로 트랙타도 다니고 경운기도 다니니까 된다라고 하지만, 임산물을 그쪽으로 반출을 한다던가 이렇게 되면 문제가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 山林課長 李基樞 : 임도도 부락에서 더 농로삼아 활용도 하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관리할때 거기서 지나는 차, 나무를 실거나 이런 차에서 상당한 경비를 내고서 하도록 .....

○ 朱泰元 委員 : 경비를 내도 임도까지 가자면 농경지를 거쳐서 가야하니까 그렇게 안하고도 도로에다 임도를 연결을 시킬고 있는 방안을 해야지 남의 농경지 잔뜩 있는데 거기까지 와서 끝마치면 어떻게 임도로 가느냐 말입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단 말입니다.

○ 山林課長 李基樞 : 알았습니다. 현지 확인해가지고 다시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 郭文春 委員 : 광문춘 위원입니다. 94년도 관리계획에 보면 환원투자사업

으로 사유림 10ha를 매입을 하셨는데 그것은 어디것으로 한겁니까?

○ 山林課長 李基樞 : 그것은 저희관내에 군유림 안에 사유림이 게재된 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군유림 경영관리상 전부 사가지고 군유림으로 만드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郭文春 委員 : 군유림 인근에 있는 사유림을.....

○ 山林課長 李基樞 : 인근이 아니라 군유림 안에 있는것 말입니다.

군유림 가운데 있거나 붙었거나, 10ha 살 계획에 있습니다.

○ 郭文春 委員 : 10ha에 6,000만원이라고 예산에 나와 있는데, 다 샀습니까?

○ 山林課長 李基樞 : 아직 못샀습니다. 앞으로 살겁니다.

○ 郭文春 委員 : 기간도 얼마 안남았는데 언제 해가지고 올해 삼니까? 예산은 다되어 있는거지요?

○ 山林課長 李基樞 : 다되어 있고 감정도 다했고 그러니까 12월 전에 매입결의를 해서 내년도 2월 전까지는 할겁니다.

○ 郭文春 委員 : 산주들하고 일단은 계약이 되었습니까?

○ 山林課長 李基樁 : 네.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 朱泰元 委員 : 산불유급감시원의 1일 인건비가 얼마씩입니까?

○ 山林課長 李基樁 : 2만2,300원이 되겠습니다.

○ 朱泰元 委員 : 이것은 95년도부터는 신경을 쓰셔야 될것 같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실지로 산불감시를 하면 참좋은데 여기보면 이장들이 몇사람이 있는데 이장들을 준공무원이라고 칭하는데 할수는 있겠습니까만, 이사람들이 그래도 산불감시를 45일간을 전담을 하자면 마을의 일은 전혀 안된다고 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애매한 점이 있네요.

○ 山林課長 李基樁 : 제가 인제에서 근무했을때도 이장들을 시켜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장을 그 부락에 있는 여러가지 일을 다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구의 집에서 밭을 간다든가, 감자

를 놓는다든가 그렇게 상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산불의 위험요소는 제일잘 파악이 되기 때문에 예방의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 朱泰元 委員 : 알았습니다.

○ 委員長 李致玉 : 보충질의 하실분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그러면 산림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 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장시간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시 감사에 응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94년도 12월 1일 평창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 합니다.

(17時12分 監査終了)

○ 出席委員

委員長 李致玉  
幹事 郭文春  
委員 李相薰  
委員 朴容泰  
委員 朱泰元  
委員 金樂雲  
委員 金鍾永

○ 委員아닌 議員

議長 韓榮一

○ 出席公務員

農村指導所長 劉載國  
産業課長 金時漢  
社會指導課長 全根鐸  
技術普及課長 李宇炯  
畜産課長 鄭義秀  
山林課長 李基椿

○ 議會事務課

專門委員 辛教善  
議事係長 咸京鎬

【 議 席 】

○ 議席表 ( 4 面に 실음 )



# 질 의 · 서 면 답 변 서

|   |  |     |                |
|---|--|-----|----------------|
| 질 의   | 김 낙 운 위 원                                  | 답 변 | 평 창 군 수 (산업과장) |
| 회 의   | 제28회 평창군의회(정기회) 제 4 차 행감특별위원회 ('94. 12. 1) |     |                |
| <p>&lt; 질의요지 &gt;</p> <p>○ 농어촌발전계획으로 투자된 총사업비와 내년도 투자계획</p> |  |     |                |

< 답 변 >

○ '94 ~ '95년도 농어촌 지원사업 총괄

| 년도별 | 계 획   | 사 업 비 내 역 |           |         |           |         |         |
|-----|-------|-----------|-----------|---------|-----------|---------|---------|
|     | 실적·계획 | 계         | 국 비       | 도 비     | 군 비       | 용 자     | 자 부 담   |
|     | 증 감   |           |           |         |           |         |         |
| 94년 | 계 획   | 27,656    | 6,457     | 1,995   | 5,616     | 9,848   | 3,740   |
|     | 실 적   | 34,123    | 7,740.6   | 2,348.7 | 4,661.7   | 11,955  | 7,417   |
|     | 증 감   | 6,467     | 1,283.6   | 353.7   | △ 954.3   | 2,107   | 3,677   |
| 95년 | 계 획   | 34,511    | 11,311    | 2,372   | 6,277     | 8,135   | 6,446   |
|     | 당초예산안 | 26,119    | 8,619.7   | 2,371.5 | 4,272.8   | 6,441   | 4,414   |
|     | 증 감   | △ 8,422   | △ 2,691.3 | △ 0.5   | △ 2,004.2 | △ 1,694 | △ 2,032 |

- 붙임 : 1. '94년 농어촌 지원사업 실적 1부  
 2. '95년 농어촌 지원사업 계획 1부

## '94 농어촌 지원사업 실적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사업량       | 사업비내역    |         |         |         |        |       | 비고 |
|---------------|-----------|----------|---------|---------|---------|--------|-------|----|
|               |           | 계        | 국비      | 도비      | 군비      | 용자     | 자부담   |    |
| 합 계           | 계 획       | 27,656   | 6,457   | 1,995   | 5,616   | 9,848  | 3,740 |    |
|               | 실 적       | 34,123   | 7,740.6 | 2,348.7 | 4,661.7 | 11,955 | 7,417 |    |
|               | 증 감       | 6,467    | 1,283.6 | 353.7   | △ 954.3 | 2,107  | 3,677 |    |
| I. 농업농촌지원사업   | 계 획       | 21,563   | 5,174   | 1,574   | 2,111   | 9,740  | 2,964 |    |
|               | 실 적       | 28,733.4 | 6,503.2 | 1,429   | 2,344.2 | 11,932 | 6,525 |    |
|               | 증 △ 감     | 7,170.4  | 1,329.2 | △ 145   | 233.2   | 2,192  | 3,561 |    |
| 1. 정예농수산 인력육성 |           | 856      | -       | -       | -       | 856    | -     |    |
| · 농어민후계자 육성   | 33 명      | 606      | -       | -       | -       | 606    | -     |    |
| · 전업농어가 육성    | 5 명       | 250      | -       | -       | -       | 250    | -     |    |
| · 영농조합법인      | 6개소       | -        | -       | -       | -       | -      | -     |    |
| 2. 농지종합정비     |           | 3,166    | 2,105   | 410     | 651     | -      | -     |    |
| · 경지정리 사업     | 2개소, 54ha | 1,268    | 640     | 198     | 430     | -      | -     |    |
| · 용수개발사업      | 5개소       | 700      | 690     | -       | 10      | -      | -     |    |
| · 수리시설 개발     | 5개소       | 140      | 140     | -       | -       | -      | -     |    |
| · 밭 기반정비      | 81.80ha   | 1,058    | 635     | 212     | 211     | -      | -     |    |
| 3. 농업경영 합리화   |           | 11,712   | 2,236.5 | 731     | 1,158.5 | 5,736  | 1,850 |    |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 사 업 량                  | 사 업 비 내 역 |      |     |      |       |       | 비 고 |
|--------------|------------------------|-----------|------|-----|------|-------|-------|-----|
|              |                        | 계         | 국 비  | 도 비 | 군 비  | 용 자   | 자 부 담 |     |
| · 위탁영농회사     | 4 개 소                  | 80        | -    | -   | -    | 80    | -     |     |
| · 기계화 영농단    | 10 개 소                 | 233       | 47   | 14  | 33   | 116   | 23    |     |
| · 기계화 전업농    | 60 농 가                 | 1,468     | 201  | 60  | 141  | 919   | 147   |     |
| · 일반농기계 공급지원 | 343 대                  | 324       | 162  | 49  | 113  | -     | -     |     |
| · 고랭지채소 지원   | 4개소, 19.5ha            | 1,672     | 416  | 168 | 248  | 500   | 340   |     |
| · 꽃 생산 유통지원  | 1개소, 7농가               | 3,862     | 966  | 386 | 579  | 1,159 | 772   |     |
| · 한우 경쟁력제고사업 | 1,153 농가               | 829       | 156  | 2   | 2    | 467   | 202   |     |
| · 쇠소 경쟁력제고사업 | 140 농가                 | 303       | 53   | 2   | 2    | 160   | 86    |     |
| · 돼지 경쟁력제고사업 | 3 농가                   | 62        | -    | -   | -    | 41    | 21    |     |
| · 닭 경쟁력제고사업  | 2 농가                   | 45        | -    | -   | -    | 24    | 21    |     |
| · 기타 가축육성지원  | 2 농가                   | 60        | -    | -   | -    | 42    | 18    |     |
| · 조사료 생산기반조성 | 1 개소                   | 100       | 70   | 10  | 10   | -     | 10    |     |
| · 공동퇴비제조장사업  | 1 개소                   | 450       | 135  | 40  | -    | 135   | 140   |     |
| · 객 토        | 1,928 ha               | 2,070     | -    | -   | -    | 2,070 | -     |     |
| · 토양개량제      | 소석회 1.162톤<br>규산질 210톤 | 102       | 20.5 | -   | 20.5 | -     | 61    |     |
| · 병충해 방제사업   | 440 ha                 | 20        | 10   | -   | 10   | -     | -     |     |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 사 업 량        | 사 업 비 내 역 |         |     |       |       |       | 비 고 |
|-------------------------|--------------|-----------|---------|-----|-------|-------|-------|-----|
|                         |              | 계         | 국 비     | 도 비 | 군 비   | 용 자   | 자 부 담 |     |
| · 벼섯생산유통지원              | 1개소, 60평     | 7         | -       | -   | -     | 5     | 2     |     |
| · 생약생산유통지원              | 1 ha         | 25        | -       | -   | -     | 18    | 7     |     |
| 4. 기술개발 및 보급            |              | 62        | -       | -   | 47    | -     | 15    |     |
| · 지역 농업개발센터             | 1,462 평      | 31        | -       | -   | 31    | -     | -     |     |
| · 지역특화 작목개발             | 13개소, 17.1ha | 31        | -       | -   | 16    | -     | 15    |     |
| 5. 유통·가공및 수출지원          |              | 7,739     | 1,065   | 10  | 22    | 3,450 | 3,192 |     |
| ·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 729 천매       | 139       | 25      | 10  | 22    | -     | 82    |     |
| · 가공산업 육성지원             | 2 개소         | 3,050     | 1,040   | -   | -     | 600   | 1,410 |     |
| · 감자 가공지원               | 1 개소         | 4,550     | -       | -   | -     | 2,850 | 1,700 |     |
| 6. 소득원 다양화 및 농촌 생활 환경개선 |              | 5,198.4   | 1,096.7 | 278 | 465.7 | 1,890 | 1,468 |     |
| · 농어촌휴양자원개발             | 관광농원 2개소     | 638       | -       | -   | -     | 170   | 468   |     |
| · 집단마을 조성               | 1 개소         | 2,197     | 488     | 105 | 104   | 1,500 | -     |     |
| · 정주생활권 개발              | 1 개소         | 743       | 366     | 78  | 79    | 220   | -     |     |
| · 농어촌주거 환경개선            | 500 동        | 1,500     | 200     | 60  | 240   | -     | 1,000 |     |
| · 농촌가로등 설치              | 68 동         | 15.4      | 7.7     | -   | 7.7   | -     | -     |     |
| · 농어민자녀학자금              | 300 명        | 105       | 35      | 35  | 35    | -     | -     |     |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 사 업 량    | 사 업 비 내 역 |         |     |       |      |       | 비 고 |
|---------------------|----------|-----------|---------|-----|-------|------|-------|-----|
|                     |          | 계         | 국 비     | 도 비 | 군 비   | 용 자  | 자 부 담 |     |
| Ⅱ. 임업·산촌지원사업        | 계 획      | 2,937     | 1,258   | 335 | 756   | 78   | 510   |     |
|                     | 실 적      | 3,042.4   | 1,130.4 | 354 | 1,012 | -    | 546   |     |
|                     | 증 감      | 105.4     | △ 127.6 | 19  | 256   | △ 78 | 36    |     |
| 2. 산림자원의 조성육성       |          | 2,982     | 1,109   | 347 | 989   | -    | 537   |     |
| · 조 립 사 업           | 577 ha   | 715       | 266     | 56  | 142   | -    | 251   |     |
| · 육 립 사 업           | 2,494 ha | 790       | 252     | 75  | 177   | -    | 286   |     |
| · 산림병해충 방제          | 3,990 ha | 1,075     | 589     | 202 | 284   | -    | -     |     |
| · 산 불 대 책           |          | 402       | 2       | 14  | 386   | -    | -     |     |
| 3. 임업경영기반 확충 및 기계화  |          | 60.4      | 21.4    | 7   | 23    | -    | 9     |     |
| · 간 벌 사 업           | 90 ha    | 46        | 18      | 6   | 13    | -    | 9     |     |
| · 임 도 사 업           | 2 Km     | 6         | 3       | 1   | 2     | -    | -     |     |
| · 사 방 사 업           | 4.5 ha   | 8.4       | 0.4     | -   | 8     | -    | -     |     |
| Ⅲ. 어업·어촌 지원사업       | 계 획      | 100       | 25      | 12  | 13    | 30   | 20    |     |
|                     | 실 적      | 33        | 7       | 7   | -     | 8    | 11    |     |
|                     | 증 감      | △ 67      | △ 18    | △ 5 | △ 13  | △ 22 | △ 9   |     |
| 3. 기계화 시설현대화 및 기술개발 |          | 33        | 7       | 7   | -     | 8    | 11    |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사업량                               | 사업비내역   |     |       |          |    |     | 비고 |
|--------------|-----------------------------------|---------|-----|-------|----------|----|-----|----|
|              |                                   | 계       | 국비  | 도비    | 군비       | 용자 | 자부담 |    |
| · 중앙 식용기계    | 14농가, 49대                         | 33      | 7   | 7     | -        | 8  | 11  |    |
| N. 기타        | 계 획                               | -       | -   | -     | -        | -  | -   |    |
|              | 실 적                               | -       | -   | -     | -        | -  | -   |    |
|              | 증 감                               | -       | -   | -     | -        | -  | -   |    |
| V. 자체 사업     | 계 획                               | 3,056   | -   | 74    | 2,736    | -  | 246 |    |
|              | 실 적                               | 2,314.2 | 100 | 558.7 | 1,305.5  | 15 | 335 |    |
|              | 증 감                               | △ 741.8 | 100 | 484.7 | △1,430.5 | 15 | 89  |    |
| 1. 도비 자체사업   |                                   | 426.2   | -   | 71.7  | 143.5    | 15 | 196 |    |
| · 읍면1특화사업    |                                   | 130     | -   | 24    | 56       | -  | 50  |    |
| · UR 대응사업    | 권역별시설 1ha<br>폐광이용노타리버섯<br>어름노타리재배 | 229     | -   | 34    | 73       | 15 | 107 |    |
| · 개량마스크      | 4,500 개                           | 2.2     | -   | 0.7   | 1.5      | -  | -   |    |
| · 대형비닐하우스    | 130 동                             | 65      | -   | 13    | 13       | -  | 39  |    |
| 2. 시군비 자체사업  |                                   | 1,577   | -   | 427   | 1,122    | -  | 28  |    |
| · 농어민후계자사기양양 | 농어민신문 400부<br>후계자대회지원 2회          | 22      | -   | -     | 22       | -  | -   |    |
| · 쥐잡기 사업     | 18,000 봉                          | 2       | -   | -     | 2        | -  | -   |    |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 사 업 량       | 사 업 비 내 역 |     |     |     |     |       | 비 고 |
|--------------|-------------|-----------|-----|-----|-----|-----|-------|-----|
|              |             | 계         | 국 비 | 도 비 | 군 비 | 용 자 | 자 부 담 |     |
| · 도수로 정비     | 3 개 소       | 120       | -   | -   | 120 | -   | -     |     |
| · 농기계 수리부품   | 120 회       | 8         | -   | -   | 8   | -   | -     |     |
| · 농촌시범사업     | 7개소, 420평   | 70        | -   | 21  | 21  | -   | 28    |     |
| · 농로 확·포장    | 55개노선, 15Km | 1,355     | -   | 406 | 949 | -   | 28    |     |
| 3 내무부 교부세 사업 |             | 311       | 100 | 60  | 40  | -   | 111   |     |
| · 1군1명품사업    | 공동육묘장 1개소   | 311       | 100 | 60  | 40  | -   | 111   |     |

# '95 농어촌 지원사업 계획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 사 업 량         | 사 업 비 내 역 |           |         |           |         |         | 비 고 |
|---------------|---------------|-----------|-----------|---------|-----------|---------|---------|-----|
|               |               | 계         | 국 비       | 도 비     | 군 비       | 용 자     | 자 부 담   |     |
| 합 계           | 계 획           | 34,541    | 11,311    | 2,372   | 6,277     | 8,135   | 6,446   |     |
|               | 당초예산안         | 26,119    | 8,619.7   | 2,371.5 | 4,272.8   | 6,441   | 4,414   |     |
|               | 증 감           | △ 8,422   | △ 2,691.3 | △ 0.5   | △ 2,004.2 | △ 1,694 | △ 2,032 |     |
| I. 농업농촌지원사업   | 계 획           | 23,222    | 8,262     | 1,399   | 1,854     | 7,077   | 4,630   |     |
|               | 당초예산안         | 19,698.6  | 6,134.5   | 1,393   | 2,539.1   | 6,441   | 3,191   |     |
|               | 증 감           | △ 3,523.4 | △ 2,127.5 | △ 6     | 685.1     | △ 636   | △ 1,439 |     |
| 1. 정예농수산 인력육성 |               | 1,300     | -         | -       | -         | 1,300   | -       |     |
| · 농어민후계자 육성   | 60 명          | 900       | -         | -       | -         | 900     | -       |     |
| · 전업농어가 육성    | 8 명           | 400       | -         | -       | -         | 400     | -       |     |
| · 영농조합법인      | 6개소           | -         | -         | -       | -         | -       | -       |     |
| 2. 농지종합정비     |               | 4,552     | 2,942     | 668     | 942       | -       | -       |     |
| · 경지정리 사업     | 4개소, 104.77ha | 2,720     | 1,568     | 411     | 741       | -       | -       |     |
| · 용수개발사업      | 1 공           | 250       | 250       | -       | -         | -       | -       |     |
| · 수리시설 개발     | -             | -         | -         | -       | -         | -       | -       |     |
| · 밭 기반정비      | 70 ha         | 1,582     | 1,124     | 257     | 201       | -       | -       |     |
| 3. 농업경영 합리화   |               | 10,590.4  | 1,902.7   | 437.2   | 918.5     | 5,141   | 2,191   |     |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 사 업 량                  | 사 업 비 내 역 |     |      |      |       |       | 비 고 |
|--------------|------------------------|-----------|-----|------|------|-------|-------|-----|
|              |                        | 계         | 국 비 | 도 비  | 군 비  | 용 자   | 자 부 담 |     |
| · 위탁영농회사     | 2 개 소                  | 200       | 50  | -    | 50   | 80    | 20    |     |
| · 공동이용조작육성   | 8 개 소                  | 300       | 75  | 22.5 | 52.5 | 120   | 30    |     |
| · 기계화 전업농    | -                      | -         | -   | -    | -    | -     | -     |     |
| · 일반농기계 공급지원 | 8개읍면                   | 807       | 404 | 121  | 282  | -     | -     |     |
| · 고랭지채소 지원   | 9 개 소                  | 1,145     | 427 | 99   | 172  | 249   | 198   |     |
| · 꽃 생산 유통지원  | -                      | -         | -   | -    | -    | -     | -     |     |
| · 한우 경쟁력제고사업 | 1,120 농가               | 900       | 381 | 56   | 56   | 273   | 134   |     |
| · 젓소 경쟁력제고사업 | 17 농가                  | 666       | 140 | 26   | 26   | 336   | 138   |     |
| · 돼지 경쟁력제고사업 | 1 농가                   | 180       | -   | -    | -    | 126   | 54    |     |
| · 닭 경쟁력제고사업  | 2 농가                   | 90        | -   | -    | -    | 63    | 27    |     |
| · 축산단지조성     | 1 개 소                  | 2,986     | 46  | 7    | 7    | 1,500 | 1,426 |     |
| · 기타 축산육성지원  | 2 농가                   | 50        | -   | -    | -    | 35    | 15    |     |
| · 조사료 생산기반조성 | -                      | -         | -   | -    | -    | -     | -     |     |
| · 공동퇴비제조장    | 2 개 소                  | 964       | 289 | 87   | 202  | 289   | 97    |     |
| · 객 토        | 1,928 ha               | 2,070     | -   | -    | -    | 2,070 | -     |     |
| · 토양개량제      | 규산질 252톤<br>석회질 1,665톤 | 104       | 26  | -    | 26   | -     | 52    |     |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 사 업 량  | 사 업 비 내 역 |         |       |       |     |       | 비 고  |
|-------------------------|--------|-----------|---------|-------|-------|-----|-------|------|
|                         |        | 계         | 국 비     | 도 비   | 군 비   | 용 자 | 자 부 담 |      |
| · 병충해 방제                | 230 ha | 6.4       | 3.2     | 0.9   | 2.3   | -   | -     |      |
| · 버섯생산 유통지원             | 1 개소   | 43        | 22      | 6     | 15    | -   | -     |      |
| · 생약생산 유통지원             | 3 개소   | 79        | 39.5    | 11.8  | 27.7  | -   | -     |      |
| 4. 기술개발 및 보급            |        | 360       | 154.5   | -     | 205.5 | -   | -     |      |
| · 지역 농업개발센터             | 1 개소   | 291       | 85.5    | -     | 205.5 | -   | -     | 계속사업 |
| · 지역특화 작목개발             | 2 개소   | 69        | 69      | -     | -     | -   | -     |      |
| 5. 유통·가공및 수출지원          |        | 41.2      | 20.6    | 6.2   | 14.4  | -   | -     |      |
| ·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 452천매  | 41.2      | 20.6    | 6.2   | 14.4  | -   | -     |      |
| · 가공산업 육성지원             | -      | -         | -       | -     | -     | -   | -     |      |
| 6. 소득원 다양화 및 농촌 생활 환경개선 |        | 2,855     | 1,114.7 | 281.6 | 458.7 | -   | 1,000 |      |
| · 농어촌휴양자원개발             | -      | -         | -       | -     | -     | -   | -     |      |
| · 집단마을 조성               | 대화 1개소 | 700       | 490     | 105   | 105   | -   | -     |      |
| · 정주생활권 개발              | " 1개소  | 522       | 367     | 79    | 76    | -   | -     |      |
| · 농어촌주거 환경개선            | 500 동  | 1,500     | 200     | 60    | 240   | -   | 1,000 |      |
| · 농촌가로등 설치              | -      | -         | -       | -     | -     | -   | -     |      |
| · 농촌오폐수처리시설             | 1 개소   | 20        | 20      | -     | -     | -   | -     | 대화   |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 사 업 량    | 사 업 비 내 역 |       |      |       |       |       | 비 고 |
|---------------------|----------|-----------|-------|------|-------|-------|-------|-----|
|                     |          | 계         | 국 비   | 도 비  | 군 비   | 용 자   | 자 부 담 |     |
| · 농민자녀학자금지원         | 371 명    | 113.      | 37.7  | 37.6 | 37.7  | -     | -     |     |
| Ⅱ. 임업·산촌지원사업        | 계 획      | 6,544     | 2,677 | 553  | 1,320 | 694   | 1,300 |     |
|                     | 당초예산안    | 5,299     | 2,262 | 976  | 1,376 | -     | 685   |     |
|                     | 증 감      | △ 1,245   | △ 415 | 423  | 56    | △ 694 | △ 615 |     |
| 2 산림자원의 조성육성        |          | 4,569     | 1,882 | 741  | 1,283 | -     | 663   |     |
| · 조 립 사 업           | 953 ha   | 1,545     | 642   | 172  | 477   | -     | 254   |     |
| · 육 립 사 업           | 1,880 ha | 1,112     | 359   | 103  | 241   | -     | 409   |     |
| · 산림병해충 방제          | 8,840 ha | 1,912     | 881   | 466  | 565   | -     | -     |     |
| 3. 임업경영기반 확충 및 기계화  |          | 730       | 380   | 235  | 93    | -     | 22    |     |
| · 간 벌 사 업           | 200 ha   | 111       | 45    | 13   | 31    | -     | 22    |     |
| · 임 도 사 업           | 25 Km    | 444       | 213   | 185  | 46    | -     | -     |     |
| · 사 방 사 업           | 1.5 ha   | 175       | 122   | 37   | 16    | -     | -     |     |
| Ⅲ. 어업·어촌 지원사업       | 계 획      | 16        | 4     | 2    | 2     | 5     | 3     |     |
|                     | 당초예산안    | 5         | 2.5   | 2.5  | -     | -     | -     |     |
|                     | 증 감      | △ 11      | △ 1.5 | 0.5  | △ 2   | △ 5   | △ 3   |     |
| 3. 기계화 시설현대화 및 기술개발 |          | 5         | 2.5   | 2.5  | -     | -     | -     |     |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 사 업 량     | 사 업 비 내 역 |       |       |           |       |       | 비 고 |
|--------------|-----------|-----------|-------|-------|-----------|-------|-------|-----|
|              |           | 계         | 국 비   | 도 비   | 군 비       | 용 자   | 자 부 담 |     |
| · 중앙 식용기계    | 16 대      | 5         | 2.5   | 2.5   | -         | -     | -     |     |
| M. 기 타       | 계 획       | 895       | 268   | 134   | 134       | 359   | -     |     |
|              | 당초예산안     | -         | -     | -     | -         | -     | -     |     |
|              | 증 감       | △ 895     | △ 268 | △ 134 | △ 134     | △ 359 | -     |     |
| · 감자 저장고     |           | 895       | 268   | 134   | 134       | 359   | -     |     |
| V. 자 체 사 업   | 계 획       | 3,864     | 100   | 284   | 2,967     | -     | 513   |     |
|              | 당초예산안     | 1,116.4   | 220.7 | -     | 357.7     | -     | 538   |     |
|              | 증 감       | △ 2,747.6 | 120.7 | △ 284 | △ 2,609.3 | -     | 25    |     |
| 1. 도비 자체사업   |           | 1,100.4   | 216.7 | -     | 345.7     | -     | 538   |     |
| · 1읍면1특화사업   | 2 개 소     | 130       | -     | 24    | 56        | -     | 50    |     |
| · 개량마스크      | 5,000 개   | 2.4       | -     | 0.7   | 1.7       | -     | -     |     |
| · 대형비닐하우스    | 8 ha      | 968       | -     | 192   | 288       | -     | 488   |     |
| 2. 시군비 자체사업  |           | 16        | 4     | -     | 12        | -     | -     |     |
| · 농어민후계자사기양양 | 신문보급 285부 | 14        | 4     | -     | 10        | -     | -     |     |
| · 쥐잡기 사업     | 9,000 봉   | 2         | -     | -     | 2         | -     | -     |     |

# 질의 · 서면 답변서

|  |   |    |             |
|--|---|----|-------------|
| 질의   | 김낙은 위원                                    | 답변 | 평창군수 (산업과장) |
| 회의   | 제28회 평창군의회(정기회) 제 4 차 행정특별위원회 ('94.12. 1) |    |             |
| <p>&lt; 질 의 요 지 &gt;</p> <p>○ 농어민후계자 중 사고후계자의 사업비 회수내역과 명단</p> |   |    |             |

< 답 변 >

개인별 사업취소 및 용자금 회수 총괄

(단위: 명, 백만원)

| 인원 | 용 자 금 회 수 현 황 |       |     |      | 미회수사유       |
|----|---------------|-------|-----|------|-------------|
|    | 당초지원액         | 기상환액  | 회수액 | 미회수액 |             |
| 44 | 317.4         | 273.1 | 28  | 16.3 | 생계곤란자<br>3명 |

※ 붙임: 개인별 사업취소 및 용자금 회수현황 1부

# 개인별 사업취소 및 용자금 회수현황

'94. 11. 30현재

(단위: 백만원)

| 인원<br>번호 | 사업 취소자 인적사항 |          |          |          |        |      | 용자금 회수현황   |          |     |          |       | 비<br>고 |
|----------|-------------|----------|----------|----------|--------|------|------------|----------|-----|----------|-------|--------|
|          | 성 명         | 주 소      | 신청<br>년도 | 사업<br>작목 | 취소일자   | 취소사유 | 당 초<br>지원액 | 기<br>상환액 | 회수액 | 미<br>회수액 | 미회수사유 |        |
| 1        | 김철환         | 진부면 하진부리 | 81       | 축산       | 87. 3  | 재촌전업 | 4          | 4        |     |          |       |        |
| 2        | 이권기         | 평창읍 어반리  | 81       | 축산       | 94. 3  | 이주   | 5          | 5        |     |          |       |        |
| 3        | 지동혁         | 미탄면 창1리  | 82       | 축산       | 89. 5  | 이주   | 6          | 6        |     |          |       |        |
| 4        | 최영분         | 봉평면 부이리  | 83       | 축산       | 93. 3  | 이주   | 6          | 6        |     |          |       |        |
| 5        | 박성순         | 진부면 산기리  | 83       | 축산       | 93. 3  | 이주   | 6          | 6        |     |          |       |        |
| 6        | 신승철         | 미탄면 미하리  | 84       | 축산       | 90. 5  | 이주   | 6          | 6        |     |          |       |        |
| 7        | 임태근         | 방림면 계촌리  | 84       | 경종       | 89. 6  | 이주   | 8          | 8        |     |          |       |        |
| 8        | 최상기         | 봉평면 먼은리  | 84       | 축산       | 90. 5  | 이주   | 6          | 6        |     |          |       |        |
| 9        | 홍진실         | 도암면 차항리  | 84       | 축산       | 93. 3  | 재촌전업 | 6          | 6        |     |          |       |        |
| 10       | 최동식         | 평창읍 원당리  | 84       | 복합       | 93. 3  | 재촌전업 | 6          | 6        |     |          |       |        |
| 11       | 최종태         | 도암면 유천3리 | 84       | 경종       | 94. 3  | 이주   | 8          | 8        |     |          |       |        |
| 12       | 이한규         | 평창읍 대하리  | 85       | 축산       | 90. 5  | 이주   | 6.5        | 6.5      |     |          |       |        |
| 13       | 이경수         | 평창읍 입탄리  | 85       | 축산       | 87. 8  | 이주   | 6          | 6        |     |          |       |        |
| 14       | 김형구         | 미탄면 한탄리  | 85       | 경종       | 89. 12 | 이주   | 8          | 8        |     |          |       |        |

## 개인별 사업취소 및 용자금 회수현황

| 인원<br>번호 | 사업 취소자 인적사항 |            |          |          |        |      | 용자금 회수현황  |          |     |          |       | 비<br>고 |
|----------|-------------|------------|----------|----------|--------|------|-----------|----------|-----|----------|-------|--------|
|          | 성 명         | 주 소        | 신청<br>년도 | 사업<br>작목 | 취소일자   | 취소사유 | 신청<br>지원액 | 기<br>상환액 | 회수액 | 미<br>회수액 | 미회수사유 |        |
| 15       | 박대경         | 대화면 신3리    | '85      | 축산       | 87. 12 | 이주   | 6         | 6        |     |          |       |        |
| 16       | 김인선         | 봉평면 무이리    | '85      | 축산       | 90. 6  | 무단이탈 | 6         | 6        |     |          |       |        |
| 17       | 이성진         | 도암면 명내리    | '85      | 원예       | 90. 6  | 무단이탈 | 7         | 7        |     |          |       |        |
| 18       | 문찬일         | 미탄면 수청리    | '85      | 경종       | 93. 3  | 이주   | 7.5       | -        | 3.5 | 4        | 생계곤란  |        |
| 19       | 김진천         | 용평면 계산1리   | '85      | 축산       | 94. 3  | 이주   | 6.5       | -        | 0.4 | 6.1      | 생계곤란  |        |
| 20       | 안상기         | 진부면 마평2리   | '85      | 경종       | 94. 3  | 이주   | 7.5       | 7.5      |     |          |       |        |
| 21       | 이영길         | 평창읍 도촌리 79 | '86      | 복합       | 89. 6  | 이주   | 7.2       | 7.2      |     |          |       |        |
| 22       | 전규호         | 평창읍 임하리122 | '86      | 경종       | 89. 12 | 사망   | 7.2       | 7.2      |     |          |       |        |
| 23       | 이원희         | 미탄면 회동리    | '86      | 경종       | 89. 12 | 이주   | 5.7       | 5.7      |     |          |       |        |
| 24       | 전인근         | 미탄면 백운리    | '86      | 경종       | 90. 5  | 이주   | 7.2       | 1        |     | 6.2      | 생계곤란  |        |
| 25       | 유석산         | 진부면 장전리    | '86      | 경종       | 90. 5  | 이주   | 7.2       | 7.2      |     |          |       |        |
| 26       | 홍기표         | 평창읍 하3리    | '86      | 경종       | 89. 3  | 이주   | 7.2       | 7.2      |     |          |       |        |
| 27       | 이계승         | 평창읍 중1리    | '86      | 경종       | 93. 3  | 이주   | 7.2       | 7.2      |     |          |       |        |
| 28       | 지준시         | 평창읍 마지리    | '86      | 복합       | 93. 3  | 이주   | 7.2       | 7.2      |     |          |       |        |
| 29       | 지대영         | 평창읍 응암리    | '86      | 경종       | 94. 3  | 이주   | 7.2       | 7.2      |     |          |       |        |

## 개인별 사업취소 및 융자금 회수현황

| 인련<br>번호 | 사업 취소자 인적사항 |           |          |          |        |      | 융자금 회수현황   |          |     |          |       | 비<br>고 |
|----------|-------------|-----------|----------|----------|--------|------|------------|----------|-----|----------|-------|--------|
|          | 성 명         | 주 소       | 신청<br>년도 | 사업<br>작목 | 취소일자   | 취소사유 | 남 초<br>지원액 | 기<br>상환액 | 회수액 | 미<br>회수액 | 미회수사유 |        |
| 30       | 김남진         | 방림면 방림2리  | '86      | 경종       | 94. 3  | 이주   | 7.2        | 0.5      | 6.7 |          |       |        |
| 31       | 조진봉         | 방림면 개촌1리  | '86      | 축산       | 94. 3  | 이주   | 5.7        | 5.7      |     |          |       |        |
| 32       | 김봉래         | 봉평면 원길2리  | '86      | 경종       | 94. 3  | 재촌전업 | 7.2        | 7.2      |     |          |       |        |
| 33       | 임순자         | 평창읍 도분리   | '87      | 담작       | 90. 5  | 이주   | 10         | 10       |     |          |       |        |
| 34       | 민기선         | 대회면 하안미2리 | '87      | 경종       | 87. 12 | 이주   | 8          | 8        |     |          |       |        |
| 35       | 고석분         | 용평면 재산리   | '87      | 경종       | 90. 5  | 이주   | 8          | -        | 8   |          |       |        |
| 36       | 원춘식         | 미탄면 울치리   | '87      | 복합       | 94. 3  | 이주   | 10         | 10       |     |          |       |        |
| 37       | 맹진하         | 대회면 하안미2리 | '87      | 복합       | 94. 3  | 무단이탈 | 8          | -        | 8   |          |       |        |
| 38       | 임인학         | 미탄면 평안1리  | '88      | 경종       | 89. 3  | 이주   | 8          | 8        |     |          |       |        |
| 39       | 변만형         | 미탄면 평안2리  | '88      | 경종       | 89. 3  | 이주   | 8          | 8        |     |          |       |        |
| 40       | 권태섭         | 봉평면 덕거2리  | '88      | 경종       | 89. 3  | 이주   | 8          | 8        |     |          |       |        |
| 41       | 정남원         | 미탄면 회동1리  | '89      | 축산       | 93. 3  | 이주   | 8          | 8        |     |          |       |        |
| 42       | 황금엽         | 봉평면 무이리   | '89      | 복합       | 91. 5  | 이주   | 9          | 9        |     |          |       |        |
| 43       | 김문수         | 방림면 방림4리  | '89      | 경종       | 93. 3  | 이주   | 11         | 9.6      | 1.4 |          |       |        |
| 44       | 신달용         | 도암면 횡계리   | '90      | 축산       | 93. 3  | 이주   | 10         | 10       |     |          |       |        |
| 계        | 44명         |           |          |          |        |      | 317.4      | 273.1    | 28  | 16.3     |       |        |



# 질 의 · 서 면 답 변 서

|  |  |     |                |
|--|--|-----|----------------|
| 질 의  | 김 낙 운 위 원                                  | 답 변 | 평 창 군 수 (산업과장) |
| 회 의  | 제28회 평창군의회(정기회) 제 4 차 행감특별위원회 ('94. 12. 1) |     |                |
| <p>&lt; 질 의 요 지 &gt;</p> <p>○ 농지전용 허가면적에 대하여 93년도 대비 94년도 증가된 면적</p> |  |     |                |

< 답 변 >

□ 농지전용허가 현황

('94. 12. 31일 현재기준)

(단위: ㎡)

| 구 분  | 영 구 전 용 |     |         | 일 시 전 용 |     |         | 비 고 |
|------|---------|-----|---------|---------|-----|---------|-----|
|      | 건 수     | 필지수 | 면 적     | 건 수     | 필지수 | 면 적     |     |
| 93년도 | 26      | 32  | 22,619  | 50      | 97  | 205,205 |     |
| 94년도 | 95      | 157 | 181,667 | 52      | 93  | 292,565 |     |
| 증 감  | 69      | 125 | 159,048 | 2       | △ 4 | 87,360  |     |

※ 영구전용 증가사유: 국토이용관리법 개정(93. 8. 5) 및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93. 12. 28)으로 농지전용 허용행위 완화.

- 허용행위 열거에서 제한행위 열거로 농지관계 법령개정

# 질의·서면답변서

|   |  |    |             |
|---|--|----|-------------|
| 질의  | 곽문춘위원                                    | 답변 | 평창군수 (축산과장) |
| 회의  | 제28회 평창군의회 (정기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 ('94. 12. 1) |    |             |
| <p>&lt;질의요지&gt;</p> <p>○ 어도시설 신청에 대하여 읍면으로부터 신청된 자료</p> |  |    |             |

## <답변>

읍면별 신청 현황

| 읍면  | 신청지역  |       |      |     | 보관리자 | 주요서식어종  |
|-----|-------|-------|------|-----|------|---------|
|     | 위치    | 보명칭   | 보길이  | 보폭  |      |         |
| 계   |       | 7개소   |      |     | 7명   |         |
| 평창읍 | 천변리   | 중부보   | 180m | 7m  | 이용수  | 어름치외 수종 |
| "   | 뇌운리   | 다수보   | 120m | 23m | 최진각  | "       |
| 미탄면 | 기화리   | 송어양식용 | 50m  | 4m  | 최성열  | 뚜구리의 수종 |
| 방림면 | 방림 2리 | 멘앞보   | 125m | 10m | 전창식  | 피라미외 수종 |
| "   | 방림 4리 | 구포신보  | 140m | 10m | 김명환  | "       |
| 봉평면 | 원길 2리 | 웃개모기보 | 70m  | 5m  | 강희중  | 열목어의 수종 |
| "   | "     | 새터보   | 50m  | 3m  | 조기환  | "       |

○ 읍면별 신청공문 사본 따로붙임

평 창 읍

232- 800 강원 평창군 평창읍 중리 355 - 1 / 32 - 2313 / 전송

문서번호 : 평창53280-770  
 시행일자 : 1994. 3. 21 ( 3년 )  
 경 유 :  
 반 음 : 평 창 군 수  
 참 조 : 축 산 과 장

|     |          |    |    |
|-----|----------|----|----|
| 선결  | 과장       | 지시 |    |
| 접   | 일자<br>시간 | 결재 |    |
| 수   | 번호       |    |    |
| 처리과 |          | 공  | 계장 |
| 담당자 |          | 람  |    |

제 목 : '94어도시설설치 후보지 선정보고

1. 축산 53280 - 199 ( '94. 3. 10 ) 호와관련입니다.
  2. 상기호와관련 '94내수면개발사업 계획에 의거 어류소상을위한 어도시설설치 후보지를 아래와같이 보고합니다.
- o. 후보지 선정내역

| 하천명 | 설 치 장 소           |     |      |     | 보 관리자 | 주요서식어종   |
|-----|-------------------|-----|------|-----|-------|--|
|     | 위 치               | 보명칭 | 보길이  | 보폭  |       |  |
| 계   | 2개 지역             |     |      |     |       |  |
| 평창강 | 평창읍 천변리<br>(종부교위) | 종부보 | 180m | 7m  | 이 용 수 | o. 어름치, 메기<br>쏘가리, 붕어,<br>뱀장어, 자라<br>미꾸라지, 기타<br>어종<br>o. 과거수년간<br>실패장어방류<br>구역임 |
| 평창강 | 평창읍 뇌운리           | 다수보 | 120m | 23m | 최 진 각 |  |

붙 임 : 어도시설 설치 후보지 전경사진 1 부 "끝"

평 창 읍



# 미 탄 면




우 232-820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창리618-2/전화 (32-3302) /담당 이 용 언

문서번호 미탄 53280 - 574

시행일자 1994. 3. 21. ( )

수신 평창군수

참조 축산과장

|    |     |   |    |  |
|----|-----|---|----|--|
| 선결 | 과장  |  | 지시 |  |
| 접수 | 일자  |   | 결재 |  |
|    | 번호  | 2043  |    |  |
|    | 처리과 |   | 공  | 과장  |
|    | 담당자 |  | 람  |  |

제목 '94 어도시설 설치 후보지 선정 보고

축산 53280-199('94. 3. 10)호와 관련 대상지를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아 래

| 하천명 | 설치장소 |       |      |     | 보관리자 | 주요서식어종   |
|-----|------|-------|------|-----|------|----------|
|     | 위치   | 보명칭   | 보길이  | 보폭  |      |          |
| 기화천 | 기화리  | 송어양식용 | 50 m | 4 m | 최성열  | 뚜구리, 열목어 |

끝.

미 탄 면



" 함께나눈 신강원 함께나눌 큰보람 "

방 립 면

우/ 232 - 810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방림리1286(0374)32-1361/담당 김병기 (32-1301)

문서번호 방림 53280- 07

시행일자 1994. 3. 17.

수신 평창군수

참조 축산과장

|     |             |             |    |  |
|-----|-------------|-------------|----|--|
| 선결  | 방림          | 1994. 3. 17 | 지시 |  |
| 접일자 | 1994. 3. 17 | 결재          |    |  |
| 수번호 | 2943        | 공람          | 계장 |  |
| 수신처 |             |             |    |  |
| 담당자 |             |             |    |  |

제목 '94 어도시설 설치 후보지 선정 보고

1. 축산 53280-199(94. 3. 10)호와 관련임.
2. 관련호에 의거 '94 어도시설 설치 후보지를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아 래

| 하천명           | 설치장소 |      |       |      | 보관리자 | 주요서식어종 |
|---------------|------|------|-------|------|------|--------|
|               | 위치   | 보명칭  | 보길이   | 보폭   |      |        |
| 지방하천<br>(평창강) | 방림2리 | 맨앞보  | 125 m | 10 m | 전창식  |        |
|               | 방림4리 | 구포신보 | 140 m | 10 m | 김명환  |        |

끝.

방 립 면



대 화 면

우232-910 / 강원 평창 대화면 대화리 410-1/전화 (0374) 33-2306 / 전송604/담당 최창근.

문서번호 대화 53280 - 680  
 시행일자 1994. 03. 16. (3년)

경유  
 받음 평창군수  
 참조 축산과장

|     |    |             |    |    |
|-----|----|-------------|----|----|
| 선결  | 과장 |             | 지시 |    |
| 접   | 일자 | 1994. 3. 16 | 결재 |    |
| 수   | 번호 | 2005        |    |    |
| 처리과 |    |             | 공람 | 계장 |
| 담당자 |    |             |    |    |

제목 '94 어도시설 설치 후보지 선정 보고

축산 53280 -199('94. 03. 10)호에의거 '94 어도시설 설치 후보지 본면 해당 없기  
 서식 생략보고 합니다. 끝.

받는곳 : 대 화 면



남을위한 양보운전, 나를위한 안전운전  
**공 평 면**

232-920 / 강원 평장군 봉평면 장동리 364-1 / 전화 (0374) 32-0103 / 전송 605

문서번호 봉평3280- 213

시행일자 1994 . 3 . 15 ( 년 )

발음 평 장 군 수

참조 축 산 과 장

|               |            |  |        |        |
|---------------|------------|--|--------|--------|
| 선결            | 과 일        |  | 지<br>시 | 결<br>재 |
| 접<br>일자<br>시간 | 994: 3: 16 |  |        |        |
| 수<br>번호       | 2892       |  | 공<br>람 | 세<br>진 |
| 처<br>리<br>과   |            |  |        |        |
| 담<br>당<br>자   |            |  |        |        |

제목 94, 어도 시설 설치 후보지 선정 보고

축산 53280- 199 ( 94, 3, 10) 호에 의거 불임과 같이

선정 보고 합니다,

붙임: 94, 어도 시설 설치 대상지 선정 보고서1부 끝 ,

**공 평 면**



94, 어도시설 설치 후보지 선정 보고

| 학 권 명 | 설 치 장 소    |       |       |       | 보 관 리자     | 주요서식 어종 |
|-------|------------|-------|-------|-------|------------|---------|
|       | 위 치        | 보 명 칭 | 보 길 이 | 보 폭   |            |         |
| 안정초   | 원길2리(무이고밀) | 웃계모기보 | 70미터  | 5,2미터 | 강희중<br>조규현 | 얼묵어, 송어 |
| 안정초   | 원길2리       | 새터보   | 50미터  | 1,4미터 | 조경환<br>김영순 | 얼묵어, 송어 |



용 평 면

우232-930 / 강원 평창 용평면 용전리 135-6 /전화 (0374) 32-4207/전송606 담당 이진상

문서번호 용평 53280-57/




시행일자 1994. 3. 15

경유

받은 평창군수

참조 축산과장

제목 94.어도시설 후보지 선정 보고

|     |    |  |    |  |
|-----|----|--|----|--|
| 선결  | 과장 |  | 지시 |  |
| 접   | 일자 | 1994. 3. 15  | 결재 |  |
| 수   | 번호 | 2845   |    |  |
| 처리과 |    |  | 공람 | 계장  |
| 담당자 |    |  |    |  |

축산 53280 - 199 ( 94. 3. 10 ) 호에의거 본면 대상지 없기 서식 생략 보고합니다.

끝

용 평 면

받는곳 :



진 부 면

우232 - 940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 전화(0374) 32-7301/전송605담당 변훈남

문서번호 진부53280 - 199

시행일자 94. 3. 21.

받음 평창군수

참조 축산과장

|     |          |           |    |    |
|-----|----------|-----------|----|----|
| 선결  | 과장       |           | 지시 |    |
| 접   | 일자<br>시각 | 94. 3. 23 | 결  |    |
| 수   | 번호       | 3116      | 재  |    |
| 처리과 |          |           | 공  | 계장 |
| 담당자 |          |           | 람  |    |

제목 '94 어도시설 설치 후보지 선정보고

축산 53280 - 199 ( 93, 3, 10) 호에의거 본면은 어도시설 대상지가없으므로 서식  
생략 보고합니다. 끝.

진 부 면



도 암 면

우232-950/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횡계1리 335-1/전화 0374)32-5301/담당 김용원 (32-5303)

문서번호 도암 53280 - 510

시행일자 1994. 3. 12

받음 평창 군수

참조 축산 과장

|     |          |             |   |    |
|-----|----------|-------------|---|----|
| 선결  | 과장       |             | 지 |    |
| 접   | 일자<br>시간 | 1994. 3. 15 | 시 |    |
| 수   | 번호       | 2840        | 결 |    |
| 처리과 |          |             | 재 |    |
| 담당자 |          |             | 공 | 계자 |
|     |          |             | 람 |    |

제목 '94어도시설 설치 후보지 선정보고

1. 축산53280- 199 ('94. 3. 10)호와 관련입니다
2. 관련호에 의거 '94어도시설 설치 후보지 조사결과 본면 대상지 없으므로 서식 생략 보고합니다. 끝.

도 암 면



# 질의·서면답변서

|   |   |    |             |
|---|---|----|-------------|
| 질의  | 김종영 위원                                  | 답변 | 평창군수 (축산과장) |
| 회의  | 제28회 평창군의회 (정기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94. 12. 1) |    |             |
| <p>&lt;질의요지&gt;</p> <p>○ 초지조성에 지원해줄 '95년도 농가와 금년도 농가 명단</p> |   |    |             |

## <답변>

붙임 : '94 - '95 초지조성 농가명단 참조. 끝.

## '94 초지조성 농가명단

| 분야별 | 사 업 자     |            | 초 지<br>조 면<br>적 | 투 자 내 역 (천원) |          |          | 자 담 |
|-----|-----------|------------|-----------------|--------------|----------|----------|-----|
|     | 주 소       | 성 명        |                 | 계            | 보 조      | 용 자      |     |
| 계   |           | 9 호        | ha<br>42.22     | 79,950       | 39,975   | 39,975   |     |
| 한 우 | 평창읍<br>중리 | 정옥화        | 14.87           | 28,275       | 14,137.5 | 14,137.5 |     |
| "   | 평창읍<br>하리 | 부 립<br>우 합 | 2.88            | 4,875        | 2,437.5  | 2,437.5  |     |
| "   | 방림면<br>계촌 | 이득표        | 3               | 5,850        | 2,925    | 2,925    |     |
| "   | 방림면<br>계촌 | 조귀원        | 3.5             | 6,825        | 3,412.5  | 3,412.5  |     |
| "   | 방림면<br>운교 | 김재호        | 6               | 11,700       | 5,850    | 5,850    |     |
| "   | 도암면<br>황계 | 한일우        | 7.25            | 13,650       | 6,825    | 6,825    |     |
| "   | 도암면<br>차항 | 이범대        | 1.5             | 2,925        | 1,462.5  | 1,462.5  |     |
| "   | 도암면<br>차항 | 최종근        | 2.22            | 3,900        | 1,950    | 1,950    |     |
| 젓 소 | 방림면<br>계촌 | 김형모        | 1               | 1,950        | 975      | 975      |     |

※ ha당 지원단비 : 1,950천원(보조 975. 용자 975)

재원 : 축산발전기금 - 3년거치 7년상환 연리 5%

## '95 지원대상농가명단(신청사항)

| 사업구분         | 회 망 자 |            | 신 청<br>물 량 | 지 원 계 획 (천원) |        |        | 비 고 |
|--------------|-------|------------|------------|--------------|--------|--------|-----|
|              | 주 소   | 성 명        |            | 계            | 보 조    | 용 자    |     |
| 계            |       | 5 호        | 45ha       | 89,325       | 44,661 | 44,664 |     |
| 한 우<br>경 쟁 력 | 미탄 창리 | 미탄<br>한우조합 | 10         | 19,850       | 9,925  | 9,925  |     |
|              | 방림 계촌 | 김 기 주      | 10         | 19,850       | 9,925  | 9,925  |     |
|              | 용평 도사 | 이 부.한      | 3          | 5,955        | 2,977  | 2,978  |     |
| 젓 소<br>경 쟁 력 | 방림 운교 | 김 인 재      | 19         | 37,715       | 18,857 | 18,858 |     |
|              | " "   | 김 인 기      | 3          | 5,955        | 2,977  | 2,978  |     |

※ 소요예산은 지원 단비표에 준한 자료이며, 예산 배정과 세부추진 지침 미확정 자료임.

# 질의·서면답변서

|   |  |     |                |
|---|--|-----|----------------|
| 질의  | 이 치 욱 위원                                 | 답 변 | 평 창 군 수 (축산과장) |
| 회의  | 제28회 평창군의회 (정기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 ('94. 12. 1) |     |                |
| <p>&lt;질의요지&gt;</p> <p>○ 한우경쟁력 사업에 허가 신청한 10개 농가에 대한 서류</p> |  |     |                |

## <답 변>

- 10개 농가에 대한 서류 : 따로붙임

# '93한우목장 사업계획서



# 평창축산업협동조합

평창410-109

(34-2303)

1993. 4.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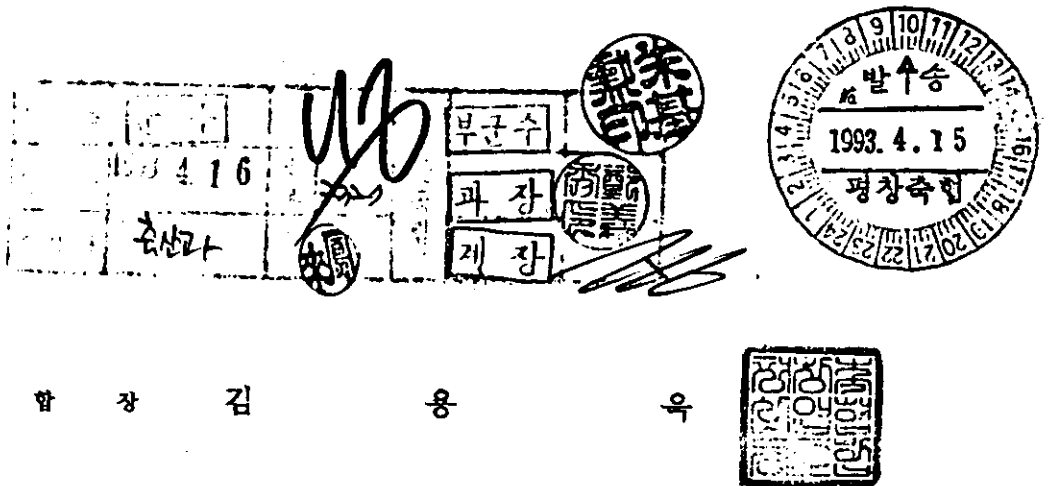
수신 평창군수

참조 축산과장

제목 '93한우종합대책사업 사업계획서 제출

1. '93 한우종합대책사업에 의거 당조합에 접수된 한우목장 7건 한우영농조합법인 2건 한우사육조합 1건등 10건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오니 검토하시어 선정될수있도록 적극 협조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93 한우종합대책사업 사업계획서 10부 끝.



조 합 장 김 용 우

'93 한우종합대책 사업

사 업 계 획 서

(사업명 : 한 우 복 장 )

사업농가 주소 : 평창군 평창읍, 면 조동 리 279-1 번지

성명 : 김 경 희



# 사 업 계 획 서

## 1. 신청자 ( 정 경 화 )

| 성 명   | 연 령 | 학 력 | 축산경력 | 주 소             | 사업장 소재지     |
|-------|-----|-----|------|-----------------|-------------|
| 정 경 화 | 43  | 1급  | 10년  | 성남시 장동내 279-1번지 | 장동내 279-1번지 |

## 2. 가축사육두수 및 시설현황

### ○ 사육두수

| 농가별   | 성 축 |   | 육 성 축 |   | 자 축 |   | 합 계 |   |    |
|-------|-----|---|-------|---|-----|---|-----|---|----|
|       | 암   | 수 | 암     | 수 | 암   | 수 | 암   | 수 | 계  |
| 정 경 화 | 14  | 1 |       |   | 7   |   | 21  | 1 | 22 |

### ○ 시 설

| 농가별   | 시설명   | 동 수 | 면 적  | 비 고 |
|-------|-------|-----|------|-----|
| 정 경 화 | 축사    | 1동  | 300㎡ |     |
|       | 전충사   | 1동  | 200㎡ |     |
|       | 개방우사  | 1동  | 300㎡ |     |
|       | 봉기계장고 | 1동  | 60㎡  |     |
|       | 관외사   | 1동  | 300㎡ |     |

◦ 장 비

| 능 가 별 | 장 비 명                                    | 규 격                      | 보유대수                     | 비 고 |
|-------|--|--------------------------|--------------------------|-----|
| 성 경 화 | 캣 타 기<br>사 쥘 분 해 기<br>공 업 용 라 광<br>예 치 기 | ㄷ<br>증 형<br>1 톤<br>췌 태 양 | 3 대<br>1 대<br>1 대<br>1 대 |     |

◦ 초 지 및 사 료 포

| 능 가 별 | 이 용 별        | 면 적          | 소 유 형 태 별 |       |     | 비 고     |
|-------|--------------|--------------|-----------|-------|-----|---------|
|       |              |              | 자 가       | 임 대   | 기 타 |         |
| 성 경 화 | 췌 지<br>사 쥘 포 | 8.5ha<br>3ha | 3ha       | 8.5ha |     | (췌 육 지) |

◦ 노 동 력

| 능 가 별 | 자 가 | 고 용 | 계   | 비 고 |
|-------|-----|-----|-----|-----|
| 성 경 화 | 3 명 |     | 3 명 |     |

### 3. 사업추진실적

| 연도별 | 사업명 | 실적 |    | 비고 |
|-----|-----|----|----|----|
|     |     | 물량 | 금액 |    |
|     |     |    |    |    |

### 4. 투자 및 시설개선계획

○ 향후 사육계획

| 능가별 | 성암  | 축수  | 자암 | 축수 | 합계 |     |    | 비고  |  |
|-----|-----|-----|----|----|----|-----|----|-----|--|
|     |     |     |    |    | 암  | 수   | 계  |     |  |
| 정경화 | 93  | 21  | 1  |    |    | 21  | 1  | 22  |  |
|     | 94  | 37  | 3  |    |    | 37  | 3  | 40  |  |
|     | 95  | 65  | 5  |    |    | 65  | 5  | 70  |  |
|     | 96  | P3  | 7  |    |    | P3  | 7  | 100 |  |
|     | 97  | 110 | 10 |    |    | 110 | 10 | 120 |  |
|     | 98  | 120 | 10 |    |    | 120 | 10 | 130 |  |
|     | 99  | 120 | 10 |    |    | 120 | 10 | 130 |  |
|     | 200 | 120 | 10 |    |    | 120 | 10 | 130 |  |
|     | 201 | 120 | 10 |    |    | 120 | 10 | 130 |  |
|     | 202 | 120 | 10 |    |    | 120 | 10 | 130 |  |

○ 농가별 투자 및 시설계획

| 농가별 | 사 업 내 용                      | 사업량  | 사 업 비  |                 |        | 비고    |
|-----|------------------------------|------|--------|-----------------|--------|-------|
|     |                              |      | 자 부 담  | 지원요구액           | 계      |       |
| 정경화 | 신축촌지조성사업<br>목 도<br>도액과 필부동쟁기 | 15ha |        | 24.000 (12.000) | 24.000 | ( )은과 |
|     |                              | 2Km  | 1.000  | 7.000 (2.000)   | 10.000 |       |
|     |                              | 1대   | 9.000  | 21.000 (2.000)  | 30.000 |       |
|     |                              | 계    | 10.000 | 54.000 (35.000) | 64.000 |       |

○ 공동투자 및 시설계획

| 사 업 내 용 | 사업량 | 사 업 비 |       |   | 비 고 |
|---------|-----|-------|-------|---|-----|
|         |     | 자 부 담 | 지원요구액 | 계 |     |
|         |     |       |       |   |     |

○ 연도별 손익

| 구 분        | '93           | '94    | '95    | '96    | '97    | '98    | '99    | 2000   | 2001   | 2002   |
|------------|---------------|--------|--------|--------|--------|--------|--------|--------|--------|--------|
| 수입         | 송아지 판매        |        |        | 24.000 | 42.000 | 80.000 | 80.000 | 80.000 | 80.000 | 80.000 |
|            | 계 (A)         |        |        | 24.000 | 42.000 | 80.000 | 80.000 | 80.000 | 80.000 | 80.000 |
| 지출         | 촌지 관리비        | 7.200  | 7.200  | 8.000  | 10.000 | 12.000 | 12.000 | 12.000 | 12.000 | 12.000 |
|            | 사료 구입비        | 2.816  | 3.846  | 7.470  | 12.370 | 18.570 | 19.860 | 21.130 | 22.410 | 23.660 |
|            | 기타 경비         | 3.520  | 4.800  | 6.400  | 9.600  | 14.400 | 16.000 | 17.600 | 19.200 | 20.800 |
|            | 용량증 설비<br>상 환 | 1.160  | 1.760  | 1.760  | 6.760  | 6.500  | 6.260  | 6.000  | 5.760  | 5.500  |
|            | 계 (B)         | 15.286 | 17.606 | 23.630 | 38.730 | 46.670 | 54.160 | 56.730 | 60.760 | 61.970 |
| 손익 (A - B) | 14.286        | 17.600 | 38.000 | 9.270  | 33.330 | 25.840 | 23.270 | 20.640 | 18.030 | 18.260 |

○ 지원자금 상환계획

치경안위

| 연도별  | 상 환 액  |        |        | 잔 액    | 비 고 |
|------|--------|--------|--------|--------|-----|
|      | 원 금    | 이 자    | 계      |        |     |
| P3   |        | 1.750  | 1.750  | 35.000 |     |
| P4   |        | 1.750  | 1.750  | 35.000 |     |
| P5   |        | 1.750  | 1.750  | 35.000 |     |
| P6   | 5.000  | 1.750  | 6.750  | 30.000 |     |
| P7   | 5.000  | 1.500  | 6.500  | 25.000 |     |
| P8   | 5.000  | 1.250  | 6.250  | 20.000 |     |
| PP   | 5.000  | 1.000  | 6.000  | 15.000 |     |
| 2000 | 5.000  | 750    | 5.750  | 10.000 |     |
| 2001 | 5.000  | 500    | 5.500  | 5.000  |     |
| 2002 | 5.000  | 250    | 5.250  | 0      |     |
| 합    | 35.000 | 12.750 | 47.750 |        |     |

'93 한우종합대책 사업  
한우목장사업신청 담보물건에 대한 의견서

1. 신청자

- 주소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조동리 279-1번지

성명 : 정 경 화

2. 용자신청금액

- 35,000,000원

3. 현재지원받은 축산진흥기금 대출금 잔액

-없음

4. 담보물건의 검토의견서

- 물건의 소재지 : 평창군 평창읍 하리 137-69번지

- 물건의 종류및 면적 : 대지 50평

건물 14평 (시멘트 벽돌조 기와지붕)

- 소유주 : 정경화

- 의견: 평창읍 시장내 도로와 접하여있는 대지및 주택이며 평창읍 상가지역내 중심지역에 위치한 물건이므로 용자신청금액대비 150%이상 평가받을수있는 담보물건이므로 용자실행에는 문제점이 없을것으로 생각됨.

평창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김 용





'93 한우종합대책 사업

사업 계획서

(사업명 : 한우복장)

사업농가 주소 : 평창군 미탄읍, 면 회동리 산 101-2번지

성명 : 박 화 자 

# 사 업 계 획 서

## 1. 신청자 ( 한 우 목 장 )

| 성 명 | 연 령 | 학 력 | 축산경력               | 주 소                     | 사업장 소재지               |
|-----|-----|-----|--------------------|-------------------------|-----------------------|
| 박화자 | 52세 |     | 1982~<br>현재<br>11년 | 평창군 미란면<br>회동리 1 산101-2 | 평창군 미란면<br>회동리 산101-2 |

## 2. 가축사육두수 및 시설현황

### ○ 사육두수

| 농가별 | 성 축 |   | 우 성 축 |   | 자 축 |   | 합 계 |    |    |
|-----|-----|---|-------|---|-----|---|-----|----|----|
|     | 암   | 수 | 암     | 수 | 암   | 수 | 암   | 수  | 계  |
| 박화자 | 22  | 2 | 1     | 1 | 6   | 7 | 29  | 10 | 39 |

### ○ 시 설

| 농가별 | 시.설 명 | 동 수 | 면 적                  | 비 고 |
|-----|-------|-----|----------------------|-----|
| 박화자 | 축사    | 2   | 330.9 m <sup>2</sup> |     |
|     | 창고    | 1   | 49.5 m <sup>2</sup>  |     |
|     | 관리사   | 1   | 48.6 m <sup>2</sup>  |     |
|     | 정화조   | 1   | 100 m <sup>2</sup>   |     |
|     | 분뇨처리장 | 1   | 96 m <sup>2</sup>    |     |

◦ 장 비

| 농 가 별 | 장 비 명          | 규 격        | 보유대수   | 비 고 |
|-------|----------------|------------|--------|-----|
| 박 화 자 | 경 운 기<br>세 레 스 | 10HP<br>1톤 | 1<br>1 |     |

◦ 초지 및 사료포

| 농 가 별 | 이 용 별 | 면 적     | 소 유 형 태 별 |         |     | 비 고 |
|-------|-------|---------|-----------|---------|-----|-----|
|       |       |         | 자 가       | 임 대     | 기 타 |     |
| 박 화 자 | 초 지   | 69.300㎡ | 69.300㎡   |         |     |     |
|       | 임칸방목지 | 39.600㎡ | 39.600㎡   |         |     |     |
|       | 사료포   | 34.200㎡ | 16.600㎡   | 17.600㎡ |     |     |

◦ 노 동 력

| 농 가 별 | 자 가 | 고 용 | 계 | 비 고 |
|-------|-----|-----|---|-----|
| 박 화 자 | 3   |     | 3 |     |

### 3. 사업추진실적

| 연도별 | 사업명  | 실적   |          | 비고 |
|-----|------|------|----------|----|
|     |      | 물량   | 금액       |    |
| 92년 | 자축판매 | 20 두 | 24,000천원 |    |

### 4. 투자 및 시설개선계획

○ 향후 사육계획

| 농가별 |     | 성 축 |    | 자 축 |    | 합 계 |    |    | 비고 |
|-----|-----|-----|----|-----|----|-----|----|----|----|
|     |     | 암   | 수  | 암   | 수  | 암   | 수  | 계  |    |
| 박화자 | 93  | 22  | 2  | 10  | 10 | 32  | 12 | 44 |    |
|     | 94  | 20  | 10 | 10  | 10 | 30  | 20 | 50 |    |
|     | 95  | 20  | 10 | 10  | 10 | 30  | 20 | 50 |    |
|     | 96  | 20  | 15 | 5   | 15 | 25  | 30 | 55 |    |
|     | 97  | 20  | 15 | 5   | 15 | 25  | 30 | 55 |    |
|     | 98  | 20  | 15 | 5   | 20 | 25  | 35 | 60 |    |
|     | 99  | 20  | 15 | 5   | 20 | 25  | 35 | 60 |    |
|     | 200 | 20  | 20 | 5   | 20 | 25  | 40 | 65 |    |
|     | 201 | 20  | 20 | 10  | 20 | 30  | 40 | 70 |    |
|     | 202 | 20  | 20 | 10  | 20 | 30  | 40 | 70 |    |

○ 농가별 투자 및 시설계획

| 농가별 | 사 업 내 용 | 사업량     | 사 업 비  |         |         | 비 고       |
|-----|---------|---------|--------|---------|---------|-----------|
|     |         |         | 자 부 담  | 지원요구액   | 계       |           |
| 박화자 | 기성초지 보완 | 69.300㎡ | 천원     | 20.000  | 20.000  | 보조 10.000 |
|     | 전기복책 보수 | 2km     |        | 10.000  | 10.000  | " 5.000   |
|     | 우사 개 축  | 229㎡    | 8.400  | 19.600  | 28.000  |           |
|     | 진입로 개설  | 600m    | 3.000  | 27.000  | 30.000  | 보조 2.000  |
|     | 조사로생산장비 | 1대      | 1.000  | 9.000   | 10.000  | 보조 5.000  |
|     | 수송차량    | 1대      | 3.000  | 7.000   | 10.000  |           |
|     | 사이로 설치  |         |        | 10.000  | 10.000  | 보조 5.000  |
| 계   |         |         | 15.400 | 102.600 | 118.000 | 계 36.000  |

○ 공동투자 및 시설계획

| 사 업 내 용 | 사업량 | 사 업 비 |       |   | 비 고 |
|---------|-----|-------|-------|---|-----|
|         |     | 자 부 담 | 지원요구액 | 계 |     |
|         |     |       |       |   |     |

○ 연도별 손익

| 구 분         | '93                  | '94    | '95    | '96    | '97    | '98    | '99    | 2000   | 2001   | 2002   |        |
|-------------|----------------------|--------|--------|--------|--------|--------|--------|--------|--------|--------|--------|
| 수입          | 총아지 판매 <sup>천원</sup> | 25.000 | 30.000 | 32.000 | 47.000 | 48.000 | 52.000 | 56.000 | 61.000 | 63.000 | 65.000 |
|             | 계 (A)                | 25.000 | 30.000 | 32.000 | 47.000 | 48.000 | 52.000 | 56.000 | 61.000 | 63.000 | 65.000 |
| 지출          | 사료비·제비               | 9.000  | 11.000 | 11.000 | 15.000 | 15.000 | 19.000 | 23.000 | 25.000 | 25.000 | 25.000 |
|             | 커라 비용                | 2.000  | 3.000  | 3.000  | 4.000  | 4.000  | 5.000  | 5.000  | 6.000  | 6.000  | 7.000  |
|             | 용과금빛이자               | 3.330  | 3.330  | 3.330  | 12.930 | 12.360 | 11.875 | 11.400 | 10.925 | 10.450 | 9.975  |
| 계 (B)       | 14.330               | 17.330 | 17.330 | 31.930 | 31.360 | 35.875 | 39.400 | 41.925 | 41.450 | 41.975 |        |
| 손 익 (A - B) | 10.670               | 12.670 | 14.670 | 15.070 | 16.640 | 16.125 | 16.600 | 19.075 | 21.550 | 23.025 |        |

○ 지원자금 상환계획

| 연도별 | 상 환 액  |        |        | 잔 액    | 비 고 |
|-----|--------|--------|--------|--------|-----|
|     | 원 금    | 이 자    | 계      |        |     |
| '93 |        | 3.330  | 3.330  | 66.600 |     |
| 94  |        | 3.330  | 3.330  | 66.600 |     |
| 95  |        | 3.330  | 3.330  | 66.600 |     |
| 96  | 9.600  | 3.330  | 12.930 | 57.000 |     |
| 97  | 9.500  | 2.850  | 12.350 | 47.500 |     |
| 98  | 9.500  | 2.375  | 11.875 | 38.000 |     |
| 99  | 9.500  | 1.900  | 11.400 | 28.500 |     |
| 200 | 9.500  | 1.425  | 10.925 | 19.000 |     |
| 201 | 9.500  | 950    | 10.450 | 9.500  |     |
| 202 | 9.500  | 475    | 9.975  | 0      |     |
| 계   | 66.600 | 23.295 | 89.895 |        |     |

'93 한우종합대책 사업  
한우목장사업신청 담보물건에 대한 의견서

1. 신청자

- 주소 :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회동리 산 101-2번지

성명 : 박 화 자

2. 용자신청금액

- 66,600,000원

3. 현재지원받은 축산진흥기금 대출금 잔액

- '87신규초지조성자금 761,000원

'90기성초지보완자금 606,000원

계 1,367,000원

4. 담보물건의 검토의견서

- 물건의 소재지 : 평창군 평창읍 하리 131-1번지

- 물건의 종류및 면적 : 대지 158평

건물 -목조스레트 지붕 단층주택 53.69㎡

- 소유주 : 한준석 ( 신청인 박화자의 남편)

- 의견: 일반 주거지역내의 대지및 주택이며 8m의 도로를 접하고있고 평창군청및 경찰서  
중간지점에 위치하고있고 시장에서 약 300m 국민학교 약 200m 중학교 약 500m  
지점에 위치한 최상의 주거용 대지및 주택이므로 용자신청금액의 150%이상 평  
가될수있는 물건이므로 용자실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것으로 사료됨.

평창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김 용



'93 한우종합대책 사업

사업 계획서

(사업명 : 환우목장)

사업농가 주소 : 평창군 방림읍(면) 계촌4리 243번지

성명 : 박정각 



# 사업 계획서

1. 신청자 : (한우목장)

| 성 명 | 년 령 | 학 력 | 축 산 경 력 | 주 소 ( 사업장 소재지)           |
|-----|-----|-----|---------|--------------------------|
| 박정각 | 56세 | 국 졸 | 12년     | 강원도 평강군 방림면<br>계촌리 843번지 |

2. 가축사육두수 및 시설 현황

0. 사육두수

| 능 가 별 | 성 주 |   | 육 성 주 |   | 자 주 |    | 합 계 |    |    |
|-------|-----|---|-------|---|-----|----|-----|----|----|
|       | 암   | 수 | 암     | 수 | 암   | 수  | 암   | 수  | 계  |
|       | 22  | 2 | 6     | 0 | 0   | 12 | 28  | 14 | 42 |

0. 시 설

| 능 가 별 | 시 설 명   | 종 수 | 면 적  | 비 고    |
|-------|---------|-----|------|--------|
| 박정각   | 축 사     | 3   | 170평 | 툰밤말호우사 |
|       | 참 고     | 1   | 30평  |        |
|       | 관 리 사   | 1   | 17평  |        |
|       | 분노 처리시설 | 1사  |      | -      |
|       | 기 타     |     |      |        |
|       | 퇴비사     | 1   | 15평  |        |

0. 장 비

| 능 가 명 | 장 비 명 | 규 격      | 보 유 대 수 | 비 고   |
|-------|-------|----------|---------|---|
| 박정각   | 로다    | 15마력     | 1       | 분뇨처리 및 증량물 상하차<br>초지(경사)에 비료 등 운반용<br><br>연락 및 운반용<br>체중 계량용. |
|       | 즉장차   | 27이 C.C. | 1       |   |
|       | 경운기   | 10마력     | 1       |   |
|       | 세래스   |          | 1       |   |
|       | 우형기   | 1톤       | 1       |   |

0. 초지 및 사료조

| 구분  | 이 용 별         | 면 적                | 스 유 영 터 별         |                    |     | 비 고 |
|-----|---------------|--------------------|-------------------|--------------------|-----|-----|
|     |               |                    | 자 가               | 임 대                | 기 타 |     |
| 초지  | 방목 및<br>조사료생산 | 17.3H <sup>2</sup> | 5.1H <sup>2</sup> | 12.2H <sup>2</sup> |     |     |
| 사료조 | 사료재배<br>및 기타  | 3.1H <sup>2</sup>  | 3.1H <sup>2</sup> |                    |     |     |

0. 노 동 력

| 자 가 | 고 용 | 계 | 비 고                                     |
|-----|-----|---|---|
| 3   | 0   | 3 | 가족노동력으로 경영. (본인, 장남, 처)<br>(장남:전북대학교졸업) |

0. 사 업 추 진 실 적

(단위: 천원)

| 년 도 별 | 사 업 명     | 실 적 |         | 비 고                     |
|-------|-----------|-----|---------|-------------------------|
|       |           | 물 량 | 금 액     |                         |
| 92년   | 성우, 옥성우출하 | 12두 | 18,500. | 성우(비육포함): 8두<br>옥성우: 4두 |

4. 투자 및 시설개선 계획

| 항가별 | 년도별  | 상축 |    | 자축 |    | 합계 |    |     | 비고                  |
|-----|------|----|----|----|----|----|----|-----|---------------------|
|     |      | 암  | 수  | 암  | 수  | 암  | 수  | 계   |                     |
| 박정각 | '93  | 22 | 2  | 6  | 12 | 28 | 14 | 42  |                     |
|     | '94  | 25 | 14 | 15 | 13 | 40 | 27 | 67  |                     |
|     | '95  | 28 | 15 | 26 | 14 | 54 | 29 | 83  |                     |
|     | '96  | 54 | 16 | 20 | 20 | 74 | 36 | 110 |                     |
|     | '97  | 60 | 22 | 20 | 20 | 80 | 42 | 122 |                     |
|     | '98  | 65 | 22 | 22 | 23 | 87 | 45 | 132 |                     |
|     | '99  | 65 | 22 | 22 | 23 | 87 | 45 | 132 | * 상태에 따라서<br>두수를증감. |
|     | '200 | 65 | 22 | 22 | 23 | 87 | 45 | 132 |                     |
|     | '201 | 65 | 22 | 22 | 23 | 87 | 45 | 132 |                     |
|     | '202 | 65 | 22 | 22 | 23 | 87 | 45 | 132 |                     |

0. 항가별 투자 및 시설계획

(단위: 천원)

| 항가별 | 사업내용  | 사업량    | 사업비    |         |         | 비고  |
|-----|-------|--------|--------|---------|---------|---|
|     |       |        | 자부담    | 지원요구액   | 계       |   |
| 박정각 | 진입로개설 | 500m   | 5,000. | 45,000. | 50,000. | 기금 25,000.<br>지방비 10,000.<br>융자 10,000.<br>기금 15,000.<br>지방비 6,000.<br>융자 6,000.<br>융자 16,800.<br>융자 700. |
|     | 목초시설  | 600m   | 3,000. | 27,000. | 30,000. |   |
|     | 고산리사  | 1동/15평 | 7,200. | 16,800. | 24,000. |   |
|     | 사료분쇄기 | 1대     | 300.   | 700.    | 1,000.  |   |
|     | 계     |        | 16,500 | 89,500  | 106,000 |   |

0. 공동투자 및 시설계획

| 사업내용 | 사업량 | 사업비(천원) |       |    |   | 비고 |
|------|-----|---------|-------|----|---|----|
|      |     | 자부담     | 지원요구액 | 기타 | 계 |    |
|      |     |         |       |    |   |    |

0. 년도별 손익

(단위: 원천)

| 구          | 분          | '93     | '94     | '95     | '96     | '97     | '98      | '99      | '200     | '201     | '202     |
|------------|------------|---------|---------|---------|---------|---------|----------|----------|----------|----------|----------|
| 수          | 번식기        | 15,400. | 17,500. | 19,600. | 28,000. | 28,000. | 31,500.  | 31,500.  | 31,500.  | 31,500.  | 31,500.  |
|            | 비용         |         | 20,400. | 22,100. | 47,600. | 59,500. | 68,000.  | 76,500.  | 76,500.  | 76,500.  | 76,500.  |
|            | 회귀비        | 300     | 300.    | 400.    | 500.    | 500.    | 500.     | 500.     | 500.     | 500.     | 500.     |
| 지          | 계 (A)      | 15,700. | 38,200. | 42,100. | 76,100. | 88,000. | 100,000. | 108,500. | 108,500. | 108,500. | 108,500. |
|            | 사료         | 7,000   | 15,650. | 16,850. | 28,100. | 33,500. | 35,375.  | 35,375.  | 35,375.  | 35,375.  | 35,375.  |
|            | 비료         | 1,000.  | 1,300.  | 1,500.  | 2,000.  | 2,500.  | 3,000.   | 3,000.   | 3,000.   | 3,000.   | 3,000.   |
| 출          | 인건비        | 600.    | 800.    | 1,000.  | 1,500.  | 2,000.  | 2,500.   | 2,500.   | 2,500.   | 2,500.   | 2,500.   |
|            | 의료,약품      | 400.    | 400.    | 400.    | 600.    | 8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 경자상환<br>기타 | 1,670   | 1,670   | 1,670   | 6,470   | 6,230   | 6,990.   | 6,770    | 6,610    | 6,270    | 6,930    |
| 손익 (A - B) | 계 (B)      | 11,170  | 20,320  | 22,220  | 40,170  | 48,530  | 49,870   | 60,170   | 68,870   | 49,650   | 49,310   |
|            | 계 (A - B)  | 4,530   | 17,880  | 19,880  | 35,930  | 39,470  | 50,130   | 48,330   | 39,630   | 58,850   | 59,190   |

기준 { 송아지 1700원/두, 비육우 (453kg 기준) : 1,700원/두 기준.

송아지 생산당대까지 포함은 사료대 (송아지 생산) : 250원/두.

비육 시작부터 완료시까지 (200kg-453kg) 의 사료대 450원/두.

비육 시작대까지의 송아지 사료대 125원/두

0. 지원자금 상환 계획

| 구분  | 상 환 의  |        |        | 잔 의    | 비 고 |
|-----|--------|--------|--------|--------|-----|
|     | 원 금    | 이 자    | 계      |        |     |
| 93  |        | 1.67t  | 1.67t  | 33.600 |     |
| 94  |        | 1.67t  | 1.67t  | 33.600 |     |
| 95  |        | 1.67t  | 1.67t  | 33.600 |     |
| 96  | 4.800  | 1.67t  | 6.47t  | 28.700 |     |
| 97  | 4.800  | 1.43t  | 6.23t  | 23.900 |     |
| 98  | 4.800  | 1.19t  | 6.99t  | 19.100 |     |
| 99  | 4.800  | 9t     | 5.79t  | 14.300 |     |
| 200 | 4.800  | 7t     | 6.59t  | 9.600  |     |
| 201 | 4.800  | 4t     | 6.29t  | 4.700  |     |
| 202 | 4.700  | 23t    | 4.93t  |        |     |
| 계   | 33.600 | 11.710 | 44.210 |        |     |

# 경영계획

1. 번식사업은 위주로한다. (93년도 번식우 28두로 시작)

1) 자가 번식. 육성. 비육을 한다.

2) 일체 외부로 부러의 입식은 하지 않는다.

3) 암송아지는 번식용으로 하고 숫송아지는 비육하여 출하.

4) 출산되는 송아지는 육성우로 판매치 않고 비육후 출하한다.

2. 확보우수 및 사육계획

1) 계획초(년도)에 28두의 번식우로 출발하여 번식우 40~45두 확보.

2) 출산은 매년 겨울철에 출산되도록 조정.

3) 이듬해 봄 어미소와 송아지를 함께 방목.

(방목기간 4월말 ~ 11월초)

4) 방목된 새끼소는 방목 완료시점에서 170kg ~ 250kg 가 되며 겨울철에 축사에서 군사사육방법으로 비육중기 까지 비육.

5) 비육 발기에는 계류식으로 비육시켜서 양질의 육질이 형성되게 한다.

6) 번식우의 동계(축사) 사육은 축사와 운동장이 연결 되도록 하여 운동을 자유롭게 한다.

※ 따라서 매년 초리에 있는 방목우는 어미소 40-45두 와 새끼소 40~45두. 합계 80~90두가 되며 축사에서 비육중인 비육우는 (40~45두) 초지에서 방목중인 송아지를 비육하기 위하여 축사 사육을 시작할때인 겨울에 출하하게 되므로 총사육 두수는 120~130두가 된다.

### 3. 사료계획

- 1) 초지의 이용도 (17.3H<sub>2</sub>)를 극대화한다.
- 2) 확보된 초지와 (기존초지) 연결된 임야를 초지화한다.
- 3) 주위에 다량생산되던 버려지고 있는 옥수수공이(숙)와 땅콩껍질을 분쇄하여 저장량의 여분 또는 깻묵을 섞어서 조사료 생산.  
※ 본건은 전공분야에 종사하고 있으며 사료학을 전공한 권희자 (발효사료전문지식무한)의 자문을 받고 있음.
- 4) 주위에 인접한 사료포를 이용하여 저장량의 조사료 생산. (매년 시정에 따라 증.감)
- 5) 농후사료는 기존의 배합사료에 단미사료(수입옥수수)를 다량 혼합하여 kg당 단가를 최소화한다.  
※ 기존 확보된 초지는 분할목수가 완화된 상태이므로 방목 및 조사료 생산에 양호함.

### 4. UR 및 수입 개방에 대비한 경쟁력 강화.

- 1) 초지 이용도의 극대화와 단계적으로 확보된 임야를 초지화 시킴으로서 사료비 절감.
- 2) 영양가 높고 주위에 많이 생산되고 버려진 옥수수공이 등을 이용하는 등의 조사료 연구 개발.  
(농후사료 및 조사료비 절감)
- 3) 농후사료비의 절감을 위한 부단한 노력.
- 4) 시설의 단계적인 현대화.

5) 단계적으로 축산기기의 확보.

6) 축산용 전공하고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권위자에게  
계속적인 자문을 받고 이론적인 무장을 한다.

7) 자가 번식으로 송아지 가격이 최소화 되게 하고  
양질의 송아지를 확보하여 충분한 운동과  
조식으로의 공급과 합당한 비율으로서 육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가능한 자가 노동력으로 지출을  
억제한다.



'93 한우종합대책 사업  
한우목장사업신청 담보물건에 대한 의견서

1. 신청자

- 주소 :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계촌리 843번지

성명 : 박 정 각

2. 용자신청금액

- 33, 500, 000원

3. 현재지원받은 축산진흥기금 대출금 잔액

- '90기성초지보완자금 1, 500, 000원  
'90축산폐수처리자금 2, 000, 000원  
'92축사시설개선자금 35, 000, 000원  
계 38, 500, 000원

4. 담보물건의 검토의견서

- 물건의 소재지 : 평창군 방림면 계촌리 843번지의 11필지

- 물건의 종류및 면적 : 전 8, 499평

- 소유주 : 박정각

- 의견: 경지지역내에있는 밭이 8, 499평이므로 용자신청금액대비 150%이상 평가될수있는 토지이므로 용자실행에는 문제가없으니 한우목장으로 선정될수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김 용




'93 한우종합대책 사업

사업 계획서

(사업명 : 한우분장)

사업농가 주소 : 평창군 대화읍, 면 대화리 100/번지

성명 : 김종석 (인) 

# 사 업 계 획 서

## 1. 신청자 ( 김 종 석 )

| 성 명 | 연 령 | 학 력           | 축산경력 | 주 소                  | 사 업 장 소 제 지           |
|-----|-----|---------------|------|----------------------|-----------------------|
| 김종석 | 43  | 추천농업<br>고등학교졸 | //   | 경량군 대좌면<br>대좌리 100/1 | 경량군 대좌면<br>상안리 3리 517 |

## 2. 가축사육두수 및 시설현황

◦ 사육두수

| 농가별 | 성 축 |   | 육 성 축 |   | 자 축 |   | 합 계 |   |
|-----|-----|---|-------|---|-----|---|-----|---|
|     | 암   | 수 | 암     | 수 | 암   | 수 | 수   | 계 |
| 김종석 |     |   | 2     |   | 2   |   | 4   | 4 |

◦ 시 설

| 농가별 | 시 설 명 | 동 수 | 면 적    | 비 고 |
|-----|-------|-----|--------|-----|
| 김종석 | 방목장   | 1   | 3,000평 |     |
|     | 사료문   | 1   | 2,619평 |     |

◦ 장 비

| 능 가 별 | 장 비 명 | 규 격 | 보유대수 | 비 고 |
|-------|-------|-----|------|-----|
|       |       |     |      |     |

◦ 초지 및 사료포

| 능 가 별 | 이 용 별 | 면 적    | 소 유 형 태 별 |     |     | 비 고 |
|-------|-------|--------|-----------|-----|-----|-----|
|       |       |        | 자 가       | 임 대 | 기 타 |     |
| 김종석   | 사료포   | 2,619평 | 2,619평    |     |     |     |
|       | 초지    | 3,600평 | 3,600평    |     |     |     |

◦ 노동력

| 능 가 별 | 자 가 | 고 용 | 계 | 비 고 |
|-------|-----|-----|---|-----|
| 김종석   | 2   |     | 2 |     |

### 3. 사업추진실적

| 연도별 | 사업명 | 실적 |    | 비고 |
|-----|-----|----|----|----|
|     |     | 물량 | 금액 |    |
|     |     |    |    |    |

### 4. 투자 및 시설개선계획

○ 향후 사육계획

| 농가별 | 성   | 축   |    | 합  |   |     | 비고 |     |         |
|-----|-----|-----|----|----|---|-----|----|-----|---------|
|     |     | 암   | 수  | 암  | 수 | 계   |    |     |         |
| 김종석 | 93  | 10  | 10 |    |   | 10  | 10 | 20  | 송이리 비육우 |
|     | 94  | 15  | 10 | 20 |   | 35  | 10 | 45  | 10      |
|     | 95  | 60  | 5  |    |   | 60  | 5  | 65  | 15 10   |
|     | 96  | 80  | 5  |    |   | 80  | 5  | 85  | 26 20   |
|     | 97  | 100 | 10 |    |   | 100 | 10 | 110 | 35 30   |
|     | 98  | 100 | 10 |    |   | 100 | 10 | 110 | 35 40   |
|     | 99  | 100 | 10 |    |   | 100 | 10 | 110 | 35 50   |
|     | 200 | 100 | 10 |    |   | 100 | 10 | 110 | 35 50   |
|     | 201 | 100 | 10 |    |   | 100 | 10 | 110 | 35 50   |
|     | 202 | 100 | 10 |    |   | 100 | 10 | 110 | 35 50   |

○ 농가별 투자 및 시설계획

| 농가별 | 사업내용  | 사업량    | 사업비                |                 |         | 비고   |
|-----|---|--------|--------------------|-----------------|---------|------|
|     |   |        | 자부담                | 지원요구액           | 계       |      |
| 김종석 | 용수계발<br>전기시설<br>추간이축사<br>관리축사<br>거렁초지보완<br>정화용차 | 1,000m | 1,200 <sup>정</sup> | 10,800(2,400)   | 12,000  | )근원차 |
|     |   | 600m   | 2,700              | 24,300(5,400)   | 27,000  |      |
|     |   | 50평    | 10,500             | 24,500(24,500)  | 35,000  |      |
|     |   | 30평    | 3,000              | 7,000(7,000)    | 10,000  |      |
|     |   | 25평    | 12,000             | 28,000(28,000)  | 40,000  |      |
|     |   | 2ha    |                    | 5,000(2,500)    | 5,000   |      |
|     |   | 100㎡   |                    | 12,000(12,000)  | 12,000  |      |
|     |   | 1t     | 2,100              | 4,900(4,900)    | 7,000   |      |
|     |   |        | 31,500             | 116,500(86,700) | 148,000 |      |

○ 공동투자 및 시설계획

| 사업내용 | 사업량 | 사업비 |       |   | 비고 |
|------|-----|-----|-------|---|----|
|      |     | 자부담 | 지원요구액 | 계 |    |
|      |     |     |       |   |    |

○ 연도별 손익

| 구분         | '93    | '94    | '95    | '96    | '97    | '98     | '99     | 2000    | 2001    | 2002    |
|------------|--------|--------|--------|--------|--------|---------|---------|---------|---------|---------|
| 수입         | 조관매    | 19,000 | 34,000 | 64,000 | 92,000 | 111,000 | 130,000 | 130,000 | 130,000 | 130,000 |
|            | 주비     | 400    | 600    | 8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 계 (A)  | 19,400 | 34,600 | 64,800 | 93,000 | 112,000 | 131,000 | 131,000 | 131,000 | 131,000 |
| 지출         | 조구입    | 3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30,000  | 30,000  | 30,000  | 30,000  |
|            | 사료비    | 4,000  | 10,800 | 15,000 | 15,000 | 24,000  | 24,000  | 24,000  | 24,000  | 24,000  |
|            | 조사료비   | 3,000  | 6,000  | 10,000 | 12,000 | 14,000  | 14,000  | 14,000  | 14,000  | 14,000  |
|            | 구라제비   | 4,000  | 8,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            | 용차원리금  | 4,335  | 4,335  | 4,335  | 17,235 | 15,990  | 15,375  | 14,760  | 14,145  | 13,530  |
|            | 계 (B)  | 45,335 | 39,135 | 47,335 | 64,235 | 73,990  | 93,375  | 92,760  | 92,145  | 91,530  |
| 손익 (A - B) | 45,335 | 19,735 | 17,465 | 28,765 | 19,010 | 18,625  | 38,240  | 38,855  | 39,470  | 40,085  |

○ 지원자금 상환계획

| 연도별  | 상 환 액  |        |         | 잔 액    | 비 고 |
|------|--------|--------|---------|--------|-----|
|      | 원 금    | 이 자    | 계       |        |     |
| 93   |        | 4.335  | 4.335   | 86.700 |     |
| 94   |        | 4.335  | 4.335   | 86.700 |     |
| 95   |        | 4.335  | 4.335   | 86.700 |     |
| 96   | 12.900 | 4.335  | 17.235  | 73.800 |     |
| 97   | 12.300 | 3.690  | 15.990  | 61.500 |     |
| 98   | 12.300 | 3.075  | 15.375  | 49.200 |     |
| 99   | 12.300 | 2.460  | 14.760  | 36.900 |     |
| 2000 | 12.300 | 1.845  | 14.145  | 24.600 |     |
| 2001 | 12.300 | 1.230  | 13.530  | 12.300 |     |
| 2002 | 12.300 | 615    | 12.915  | 0      |     |
| 계    | 86.700 | 30.255 | 116.955 |        |     |

'93 한우종합대책 사업  
한우목장사업신청 담보물건에 대한 의견서

1. 신청자

- 주소 :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대화 9리 1001-20번지

성명 : 김 종 석

2. 용자신청금액

- 86,700,000원

3. 현재지원받은 축산진흥기금 대출금 잔액

-없음

4. 담보물건의 검토의견서

- 물건의 소재지 : 평창군 대화면 대화9리 1001-20번지

상안미리 481-1번지의 4필지

- 물건의 종류및 면적 : 대지 24평

건물 24평 (목조 스프레트지붕)

전 7,833평

- 소유주 : 김종석

- 의견: 대화면 시내 상가지역 중심지역에위치한 대지및 주택과 상안미 3리에 7,833평의  
전이 있으므로 상기담보물건을 평가하면 용자신청금액대비 150%이상 평가받을수  
있는 물건이므로 용자실행에는 문제점이 없을것으로 사료됨.

평창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김 용





'93 한우종합대책 사업

사업 계획서

(사업명 : 한우특장 )

사업농가 주소 : 평창군 용평읍, 연도사리 산 108-1번지

성명 : 이 부 한



# 사업 계획서

1. 신청자 : (한우목장)

| 성 명 | 년령 | 학 력 | 축 산 경 력 | 주소 (사업장 소재지)        |
|-----|----|-----|---------|---------------------|
| 이부환 | 32 | 고졸  | 9       | 충청남도 공주시 도사리 산108-1 |

2. 가축사육두수 및 시설 현황

0. 사육두수

| 농 가 별 | 성 축 |   | 육 성 축 |   | 자 축 |   | 합 계 |   |    |
|-------|-----|---|-------|---|-----|---|-----|---|----|
|       | 암   | 수 | 암     | 수 | 암   | 수 | 암   | 수 | 계  |
|       | 13  |   | 2     | 2 | 1   | 2 | 16  | 4 | 20 |

0. 시 설

| 농 가 별 | 시 설 명   | 동 수 | 면 적                | 비 고 |
|-------|---------|-----|--------------------|-----|
|       | 축 사     | 1   | 200 m <sup>2</sup> |     |
|       | 참 고     | 1   | 60 m <sup>2</sup>  |     |
|       | 관 리 사   |     |                    |     |
|       | 분뇨 처리시설 |     |                    |     |
|       | 기 타     |     |                    |     |

0. 장 비

| 항 가 명 | 장 비 명 | 규 격 | 보 유 대 수 | 비 고 |
|-------|-------|-----|---------|-----|
|       | 농용기   |     | 1       |     |
|       | 네트스   |     | 1       |     |
|       | 에취기   |     | 1       |     |

0. 촛지 및 사료포

| 항 가 명 | 이 용 별           | 면 적    | 소 유 영 터 별 |     |     | 비 고 |
|-------|-----------------|--------|-----------|-----|-----|-----|
|       |                 |        | 자 가       | 임 대 | 기 타 |     |
|       | 조 지             | 2ha    | 2 ha      |     |     |     |
|       | <del>임대영역</del> | 7.2ha  | 7.2ha     |     |     |     |
|       | 임 야             | 15ha   | 15 ha     |     |     |     |
|       | 사료포             | 2.5ha  | 2.5ha     |     |     |     |
|       | 계               | 26.7ha | 26.7ha    |     |     |     |

0. 노 동 력

| 자 가 | 고 용 | 계 | 비 고         |
|-----|-----|---|-------------|
| 3   |     | 3 | 보1. 부1. 표1. |

0. 사 업 추 진 실 적

| 기 보 별 | 사 업 명 | 실 적 |     | 비 고 |
|-------|-------|-----|-----|-----|
|       |       | 물 량 | 비 역 |     |
|       |       |     |     |     |

4. 투자 및 시설개선 계획

| 연도 | 연도   | 상 축 |   | 자 축 |   | 합 계 |    |    | 비 고       |
|----|------|-----|---|-----|---|-----|----|----|-----------|
|    |      | 암   | 수 | 암   | 수 | 암   | 수  | 계  |           |
|    | '93  | 13  | 3 | 7   | 7 | 20  | 10 | 30 |           |
|    | '94  | 35  | 5 |     |   | 25  | 5  | 40 | 종반우 사육 구입 |
|    | '95  | 45  | 5 |     |   | 45  | 5  | 60 | 송아지 판매 10 |
|    | '96  | 45  | 5 |     |   | 45  | 5  | 80 | " 70      |
|    | '97  | 45  | 5 |     |   | 45  | 5  | 80 | " 70      |
|    | '98  | 45  | 5 |     |   | 45  | 5  | 80 | " 70      |
|    | '99  | 45  | 5 |     |   | 45  | 5  | 80 | " 70      |
|    | '200 | 45  | 5 |     |   | 45  | 5  | 80 | " 70      |
|    | '201 | 45  | 5 |     |   | 45  | 5  | 80 | " 70      |
|    | '202 | 45  | 5 |     |   | 45  | 5  | 80 | " 70      |

0. 농가별 투자 및 시설계획

(농가용자)

| 농가별 | 사업내용      | 사업량                | 사업비      |                  |         | 비고 |
|-----|-----------|--------------------|----------|------------------|---------|----|
|     |           |                    | 자부담      | 지원요구액            | 계       |    |
|     | 기타시설(사육장) | 300 m              | 3,000 천원 | 27,000 (6,000)   | 30,000  |    |
|     | 기타시설(목초)  | 2.5 km             | 6,000    | 14,000 (4,000)   | 20,000  |    |
|     | 사육시설(축사)  | 200 m <sup>2</sup> | 6,000    | 14,000 (4,000)   | 20,000  |    |
|     | 조지조리(물장)  | 8 ha               |          | 13,170 (6,580)   | 13,170  |    |
|     | 사육시설(축사)  | 19 HP              | 4,000    | 36,000 (16,000)  | 40,000  |    |
|     | 기타시설(축사)  | 1 식                |          | 20,000 (20,000)  | 20,000  |    |
|     | 기타시설(축사)  | 1 대                | 4,500    | 10,500 (3,000)   | 15,000  |    |
|     | 계         |                    | 23,500   | 134,620 (89,660) | 158,120 |    |

0. 공동투자 및 시설계획

| 사업내용 | 사업량 | 사업비(천원) |       |    |   | 비고 |
|------|-----|---------|-------|----|---|----|
|      |     | 자부담     | 지원요구액 | 기타 | 계 |    |
|      |     |         |       |    |   |    |

0. 년도별 손익

| 구          | 분     | '93    | '94    | '95    | '96    | '97    | '98    | '99    | '200   | '201   | '202   |
|------------|-------|--------|--------|--------|--------|--------|--------|--------|--------|--------|--------|
| 수          | 자주세비  | 10,600 | 22,600 | 60,000 | 91,000 | 91,000 | 91,000 | 91,000 | 91,000 | 91,000 | 91,000 |
|            | 구 회   | 300    | 600    | 8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지          | 계 (A) | 10,800 | 23,000 | 60,800 | 92,000 | 92,000 | 92,000 | 92,000 | 92,000 | 92,000 | 92,000 |
|            | 농후사료  | 4,800  | 6,000  | 10,000 | 16,000 | 16,600 | 16,600 | 17,000 | 17,000 | 17,600 | 17,600 |
|            | 조 사료  | 2,600  | 4,000  | 6,000  | 12,000 | 12,600 | 12,600 | 13,000 | 13,000 | 13,600 | 13,600 |
|            | 회 회비  | 1,000  | 1,600  | 3,000  | 6,000  | 6,000  | 6,000  | 6,000  | 7,000  | 8,000  | 8,000  |
|            | 음자금이자 | 3,000  | 3,000  | 3,000  | 13,178 | 12,410 | 11,610 | 11,420 | 10,920 | 10,440 | 10,182 |
|            | 기 회   | 600    | 1,000  | 2,000  | 6,000  | 6,000  | 6,000  | 6,500  | 6,500  | 7,000  | 7,000  |
| 출          | 소구입자소 |        | 16,000 |        |        |        |        |        |        |        |        |
|            | 계 (B) | 11,818 | 20,618 | 24,018 | 51,178 | 52,410 | 51,610 | 54,400 | 53,920 | 56,440 | 56,182 |
| 손익 (A - B) |       | △1,018 | △7,618 | 36,782 | 40,822 | 39,690 | 40,390 | 37,600 | 38,080 | 35,560 | 35,818 |

0. 지원자금 상환 계획

(단위:천원)

| 구 분  | 상 환 액  |        |        | 잔 액    | 비 고                        |
|------|--------|--------|--------|--------|----------------------------|
|      | 원 금    | 이 자    | 계      |        |                            |
| '93  |        | 3.018  | 3.018  | 69.660 | 3%차금 23.000<br>5%차금 46.660 |
| 94   |        | 3.018  | 3.018  | 69.660 |                            |
| 95   |        | 3.018  | 3.018  | 69.660 |                            |
| 96   | 10.160 | 3.018  | 13.178 | 69.400 |                            |
| 97   | 9.900  | 2.510  | 12.410 | 49.500 |                            |
| 98   | 9.900  | 2.015  | 11.915 | 39.600 |                            |
| 99   | 9.900  | 1.520  | 11.420 | 29.700 |                            |
| 2000 | 9.900  | 1.025  | 10.925 | 19.800 |                            |
| 2001 | 9.900  | 694    | 10.494 | 9.900  |                            |
| 2002 | 9.900  | 297    | 10.197 | 0      |                            |
| 계    | 69.660 | 20.033 | 89.693 |        |                            |

'93 한우종합대책 사업  
한우목장사업신청 담보물건에 대한 의견서

1. 신청자

- 주소 :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도사리 산 108-1번지

성명 : 이 부 한

2. 용자신청금액

- 69, 500, 000원

3. 현재지원받은 축산진흥기금 대출금 잔액

- '86신규초지조성자금 1, 140, 000원

계 1, 140, 000원

4. 담보물건의 검토의견서

- 물건의 소재지 : 평창군 용평면 도사리 376번지의 9필지

- 물건의 종류및 면적 : 담 2필지 1, 209평

전 8필지 7, 714평

- 소유주 : 이부한 이종남 이주범

- 의견: 평창군 용평면 도사리 이부한 사업장 주위에있는 전및 담이며 사질양토에 도로  
및 자연하천을 접하고있어 농지로는 상급토지이므로 용자신청금액대비 150%이상  
평가될수있는 담보물건이므로 용자실행에는 하자가 없음것으로 사료됨.

평창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김 용



'93 한우종합대책 사업

사 업 계 획 서

(사업명 : 한우복장)

사업농가 주소 : 평창군 도암읍, ㉠ 차항리 산 1-13 번지

성명 : 김 경 래





# 사 업 계 획 서

## 1. 신청자 ( 한 우 목 장 )

| 성 명 | 연 령 | 학 령                  | 축산경력 | 주 소                      | 사업장 소재지                  |
|-----|-----|----------------------|------|--------------------------|--------------------------|
| 김경래 | 55세 | 중앙대학교<br>행정대학원<br>수로 | 30년  | 평창군 도암면 차항리<br>산 1-13 번지 | 평창군 도암면 차항리<br>산 1-13 번지 |

## 2. 가축사육두수 및 시설현황

◦ 사육두수

| 농가별 | 성 축 |   | 우 성 축 |   | 자 축 |   | 합 계 |   |    |
|-----|-----|---|-------|---|-----|---|-----|---|----|
|     | 암   | 수 | 암     | 수 | 암   | 수 | 암   | 수 | 계  |
| 김경래 | 3   |   |       |   | 10  |   | 13  |   | 13 |

◦ 시 설

| 농가별 | 시설명  | 동 수 | 면 적 | 비 고 |
|-----|------|-----|-----|-----|
| 김경래 | 축 사  | 1   | 50평 |     |
|     | 장 고  | 1   | 30평 |     |
|     | 관 리사 | 1   | 25평 |     |

◦ 장 비

| 농 가 별 | 장 비 명             | 규 격  | 보유대수        | 비 고 |
|-------|-------------------|------|-------------|-----|
| 김경래   | 트랙터<br>경운기<br>제초기 | 39HP | /<br>/<br>/ |     |

◦ 초지 및 사료포

| 농 가 별 | 이 용 별     | 면 적             | 소 유 형 태 별      |       |     | 비 고 |
|-------|-----------|-----------------|----------------|-------|-----|-----|
|       |           |                 | 자 가            | 임 대   | 기 타 |     |
| 김경래   | 초지<br>사료포 | 43 ha<br>5.000평 | 11 ha<br>5.000 | 32 ha |     |     |

◦ 노동력

| 농 가 별 | 자 가 | 고 용 | 계 | 비 고 |
|-------|-----|-----|---|-----|
| 김경래   | 2   | 1   | 3 |     |

### 3. 사업추진실적

| 연도별 | 사업명 | 실적 |    | 비고 |
|-----|-----|----|----|----|
|     |     | 물량 | 금액 |    |
|     |     |    |    |    |

### 4. 투자 및 시설개선계획

○ 향후 사육계획

| 농가별 | 성   | 축  |    | 자  | 합  |    |     | 비고      |
|-----|-----|----|----|----|----|----|-----|---------|
|     |     | 암  | 수  |    | 암  | 수  | 계   |         |
| 김경래 | 93  | 10 | 2  | 18 | 28 | 2  | 30  |         |
|     | 94  | 37 | 3  |    | 37 | 3  | 40  | 동아저장매15 |
|     | 95  | 45 | 5  |    | 45 | 5  | 50  | " 30    |
|     | 96  | 65 | 5  |    | 65 | 5  | 70  | " 40    |
|     | 97  | 83 | 7  |    | 83 | 7  | 90  | " 60    |
|     | 98  | 90 | 10 |    | 90 | 10 | 100 | " 70    |
|     | 99  | 90 | 10 |    | 90 | 10 | 100 | " 70    |
|     | 200 | 90 | 10 |    | 90 | 10 | 100 | " 70    |
|     | 201 | 90 | 10 |    | 90 | 10 | 100 | " 70    |
|     | 202 | 90 | 10 |    | 90 | 10 | 100 | " 70    |

• 농가별 투자 및 시설계획

| 농가별 | 사 업 내 용 | 사업량  | 사 업 비               |                   |         | 비고    |
|-----|---------|------|---------------------|-------------------|---------|-------|
|     |         |      | 자 부 담               | 지원요구액             | 계       |       |
| 김경래 | 전입로 개설  | 2Km  | 4,000 <sup>2천</sup> | 40,000 (8,800)    | 44,000  | ( )용자 |
|     | 추 사 신 축 | 85평  | 18,000              | 42,000 (42,000)   | 60,000  |       |
|     | 관 리 사 · | 15평  | 6,900               | 16,100 (16,100)   | 23,000  |       |
|     | 전 기 설 치 | 1 Km | 1,500               | 13,500 (3,000)    | 15,000  |       |
|     | 테수처리시설  |      |                     | 15,000 (5,000)    | 15,000  |       |
|     | 거설초저보와  | 43ha |                     | 30,000 (15,000)   | 30,000  |       |
|     | 싸이로 시설  | 100㎡ |                     | 10,000 (5,000)    | 10,000  |       |
| 계   |         |      | 30,400              | 166,600 (104,900) | 197,000 |       |

• 공동투자 및 시설계획

| 사 업 내 용 | 사업량 | 사 업 비 |       |   | 비 고 |
|---------|-----|-------|-------|---|-----|
|         |     | 자 부 담 | 지원요구액 | 계 |     |
|         |     |       |       |   |     |

• 연도별 손익

| 구 분        | '93    | '94    | '95    | '96    | '97    | '98    | '99    | 2000   | 2001   | 2002   |        |
|------------|--------|--------|--------|--------|--------|--------|--------|--------|--------|--------|--------|
| 수입         | 송아지 판매 |        | 17,000 | 36,000 | 48,000 | 72,000 | 84,000 | 84,000 | 84,000 | 84,000 |        |
|            | 주 비    | 300    | 500    | 800    | 900    | 1,000  | 1,100  | 1,100  | 1,100  | 1,100  |        |
|            | 계 (A)  | 300    | 17,500 | 36,800 | 48,900 | 73,000 | 85,100 | 85,100 | 85,100 | 85,100 |        |
| 지출         | 사료비    | 6,000  | 7,000  | 9,000  | 12,000 | 16,000 | 18,000 | 18,000 | 18,000 | 18,000 |        |
|            | 조 "    | 2,000  | 4,000  | 5,000  | 6,000  | 7,000  | 8,000  | 8,000  | 8,000  | 8,000  |        |
|            | 연 전 비  | 5,000  | 5,000  | 5,000  | 5,000  | 7,000  | 7,000  | 7,000  | 7,000  | 7,000  |        |
|            | 거라비용   | 2,000  | 3,000  | 3,000  | 3,000  | 4,000  | 4,000  | 4,000  | 4,000  | 4,000  |        |
|            | 용자원리금  | 4,945  | 4,945  | 4,945  | 20,445 | 19,070 | 18,325 | 17,580 | 16,835 | 15,638 | 15,347 |
|            | 계 (B)  | 19,945 | 23,945 | 26,945 | 46,445 | 53,070 | 55,325 | 54,580 | 53,835 | 52,638 | 52,347 |
| 손익 (A - B) | 19,645 | 16,445 | 9,855  | 2,455  | 19,930 | 29,775 | 30,520 | 31,265 | 32,462 | 32,753 |        |

○ 지원자금 상환계획

(단위: 천원)

| 연도별  | 상 환 액   |        |         | 잔 액     | 비 고                        |
|------|---------|--------|---------|---------|----------------------------|
|      | 원 금     | 이 자    | 계       |         |                            |
| '93  |         | 4.945  | 4.945   | 104.900 | 3%이자 15.000<br>5% " 89.900 |
| '94  |         | 4.945  | 4.945   | 104.900 |                            |
| '95  |         | 4.945  | 4.945   | 104.900 |                            |
| '96  | 15.500  | 4.945  | 20.445  | 89.400  |                            |
| '97  | 14.900  | 4.170  | 19.070  | 74.500  |                            |
| '98  | 14.900  | 3.425  | 18.325  | 59.600  |                            |
| '99  | 14.900  | 2.680  | 17.580  | 44.700  |                            |
| 2000 | 14.900  | 1.935  | 16.835  | 29.800  |                            |
| '001 | 14.900  | 738    | 15.638  | 14.900  |                            |
| '002 | 14.900  | 447    | 15.347  | 0       |                            |
| 계    | 104.900 | 33.175 | 138.075 |         |                            |

'93 한우종합대책 사업  
한우목장사업신청 담보물건에 대한 의견서

1. 신청자

- 주소 :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차항리 산 1-13번지

성명 : 김 경 래

2. 용자신청금액

- 104,900,000원

3. 현재지원받은 축산진흥기금 대출금 잔액

- '92기성초지보완자금 2,400,000원

계            2,400,000원

4. 담보물건의 검토의견서

- 물건의 소재지 : 평창군 도암면 횡계리 324-13번지

- 물건의 종류및 면적 : 대지 160평

- 소유주 : 김경래

- 의견: 도암면 로터리에 접하여있는 상업지역내의 대지이며 지상에 건물이없는 나지  
이므로 용자신청금액대비 담보평가액은 150%이상 감정받을수있는 물건이므로  
용자실행에는 문제점이 없을것으로 생각됨.

평창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김 용



'93 한우 종합대책사업

# 사업계획서

(부림 한우영농조합법인)

사업농가 주소: 평창군 평창읍 하 리 55번지

성명: 부림 한우영농조합법인



# 사업계획서

## 1. 신청자

| 성명  | 연령 | 학력 | 축산경력 | 주소                | 사업장소재지    |
|-----|----|----|------|-------------------|-----------|
| 전영  | 40 | 고졸 | 10년  | 평창군 평창읍 중리 250    | 평창군.읍.마지리 |
| 김진환 | 48 | 고졸 | 10년  | 평창군 평창읍 약수리 45    | 약수리       |
| 정경수 | 39 | 고졸 | 3년   | 평창군 평창읍 이곡리 406   | 이곡리       |
| 이창해 | 39 | 고졸 | 6년   | 평창군 평창읍 용황리 119   | 용황리       |
| 고선경 | 40 | 고졸 | 3년   | 평창군 평창읍 종부리 498-2 | 마지리       |
| 안광진 | 23 | 고졸 | 3년   | 평창군 평창읍 하리 146-4  | 마지리       |

## 2. 가축사육두수 및 시설현황

### ○ 사육두수

| 농가별 | 성축 |    | 육성축 |   | 자축 |   | 합계 |    |    |
|-----|----|----|-----|---|----|---|----|----|----|
|     | 암  | 수  | 암   | 수 | 암  | 수 | 암  | 수  | 계  |
| 전영  | 1  | 15 |     |   |    | 1 | 1  | 16 | 17 |
| 김진환 |    | 11 |     |   |    | 6 |    | 17 | 17 |
| 정경수 | 1  |    |     |   | 1  |   | 2  |    | 2  |
| 이창해 | 2  |    |     |   |    |   | 2  |    | 2  |
| 고선경 |    | 2  |     |   |    | 2 |    | 4  | 4  |
| 안광진 |    |    |     |   |    | 2 |    | 2  | 2  |

### ○ 노동력

| 농가별 | 자가 | 고용 | 계 | 비고 |
|-----|----|----|---|----|
| 전영  | 1  | 1  | 2 |    |
| 김진환 | 1  |    | 1 |    |
| 정경수 | 1  |    | 1 |    |
| 이창해 | 1  |    | 1 |    |
| 고선경 | 1  |    | 1 |    |
| 안광진 | 1  |    | 1 |    |



○ 시 설

| 농가별  | 시설명   | 동 수 | 면 적    | 비 고 |
|------|-------|-----|--------|-----|
| 전 영  | 축 사   | 2 동 | 229 m  |     |
|      | 창 고   | 1 동 | 29 m   |     |
|      | 관 리 사 | 1 동 | 16.5 m |     |
|      | 정 화 조 | 1 동 | 3.3 m  |     |
| 김 진환 | 축 사   | 2 동 | 198 m  |     |
| 정 경수 | 축 사   | 1 동 | 16.5 m |     |
| 이 창해 | 축 사   | 1 동 | 16.5 m |     |
| 고 선경 | 축 사   | 1 동 | 30 m   |     |
| 안 광진 | 축 사   | 1 동 | 16.5 m |     |

○ 초지 및 사료포

| 농가별  | 이용별 | 면 적     | 소 유 형 태 별 |     |     | 비 고 |
|------|-----|---------|-----------|-----|-----|-----|
|      |     |         | 자 가       | 임 대 | 기 타 |     |
| 부림목장 | 초 지 | 98,818m | 98,818m   |     |     |     |

3. 투자 및 시설개선계획

○ 향우 사육계획

| 농가별          | 성 축 |     | 자 축 |    | 합 계 |     |     | 비 고 |
|--------------|-----|-----|-----|----|-----|-----|-----|-----|
|              | 암   | 수   | 암   | 수  | 암   | 수   | 계   |     |
| 부림한우<br>영농조합 | 93  | 90  | 25  | 25 | 90  | 50  | 140 |     |
|              | 97  | 125 | 100 | 25 | 100 | 200 | 350 |     |

(별도첨부)

3. 투자 및 시설개선계획  
 o항후 사육계획

(단위: 두)

| 농가별 | 성 축  |     | 자 축 |    | 합 계 |     |     |     |  |
|-----|------|-----|-----|----|-----|-----|-----|-----|--|
|     | 암    | 수   | 암   | 수  | 암   | 수   | 계   |     |  |
| 부   | 1993 | 90  |     | 30 | 30  | 120 | 30  | 150 |  |
| 림   | 1997 | 232 | 53  | 63 | 63  | 259 | 116 | 375 |  |

( 1993년-2002년까지 항후계획은 별도첨부)

o공동투자 및 시설계획

(단위:천원)

| 사업내용   | 사업량  | 사 업 비  |           |         |         | 비 고 |
|--------|------|--------|-----------|---------|---------|-----|
|        |      | 자 부 담  | 지 원 요 구 액 |         | 계       |     |
|        |      |        | 보 조       | 용 자     |         |     |
| 진입로개설  | 500m | 5,000  | 45,000    |         | 50,000  |     |
| 전 기    |      | 500    | 4,500     |         | 5,000   |     |
| 용수개발   |      | 500    | 4,500     |         | 5,000   |     |
| 목도 시설  |      | 3,000  | 27,000    |         | 30,000  |     |
| 축 사    | 5 동  | 65,000 |           | 154,500 | 219,500 |     |
| 창 고    | 1 동  | 6,000  |           | 14,000  | 20,000  |     |
| 판 리 사  | 1 동  | 3,150  |           | 7,350   | 10,500  |     |
| 신규초지조성 | 15ha |        | 12,300    | 12,300  | 24,600  |     |
| 기성초지보안 | 25ha |        | 8,750     | 8,750   | 17,500  |     |
| 트랙 타   | 1 대  | 2,000  | 10,000    | 8,000   | 20,000  |     |
| 카 타 기  | 1 대  | 115    | 575       | 460     | 1,150   |     |
| 예 취 기  | 2 대  | 50     | 250       | 200     | 500     |     |
| 벗질수거기  | 1 대  | 600    | 3,000     | 2,400   | 6,000   |     |
| 되 비 사  | 5 동  |        | 4,500     | 10,500  | 15,000  |     |
| 수송차량   | 1 대  | 4,500  |           | 10,500  | 15,000  |     |
| 계      |      | 91,265 | 120,375   | 228,110 | 439,750 |     |

○ 지원자금 상환계획

(단위:천원)

| 연도별  | 상 환 액   |        |         | 잔 액     | 비 고 |
|------|---------|--------|---------|---------|-----|
|      | 원 금     | 이 자    | 계       |         |     |
| 1993 |         | 11,406 | 11,406  | 228,110 |     |
| 1994 |         | 11,406 | 11,406  | 228,110 |     |
| 1995 |         | 11,406 | 11,406  | 228,110 |     |
| 1996 | 32,630  | 11,406 | 44,036  | 195,480 |     |
| 1997 | 32,580  | 9,774  | 42,354  | 162,900 |     |
| 1998 | 32,580  | 8,145  | 40,725  | 130,320 |     |
| 1999 | 32,580  | 6,516  | 39,096  | 97,740  |     |
| 2000 | 32,580  | 4,887  | 37,467  | 65,160  |     |
| 2001 | 32,580  | 3,258  | 35,838  | 32,580  |     |
| 2002 | 32,580  | 1,629  | 34,209  | 0       |     |
| 계    | 228,110 | 79,833 | 307,943 |         |     |

○ 연도별 손익

(단위:천원)

| 구 분        |         | '93    | '94     | '95     | '96     | '97     | '98     | '99     | 2000    | 2001    | 2002    | 비 고 |
|------------|---------|--------|---------|---------|---------|---------|---------|---------|---------|---------|---------|-----|
| 수 입        | 소 환 계   |        | 54,000  | 54,000  | 85,200  | 95,400  | 149,400 | 145,800 | 195,200 | 201,600 | 286,800 |     |
|            | 위탁사육    | 15,000 | 59,000  | 59,000  | 59,000  | 59,000  | 88,500  | 88,500  | 88,500  | 88,500  | 88,500  |     |
|            | 계 (A)   | 15,000 | 113,000 | 113,000 | 144,200 | 154,400 | 237,900 | 234,300 | 283,700 | 299,100 | 374,300 |     |
| 지 출        | 원 금     |        |         |         | 32,630  | 32,580  | 32,580  | 32,580  | 32,580  | 32,580  | 32,580  |     |
|            | 이자      | 11,406 | 11,406  | 11,406  | 11,406  | 9,774   | 8,145   | 6,516   | 4,887   | 3,258   | 1,629   |     |
|            | 개합사료    | 13,500 | 15,600  | 21,000  | 25,500  | 31,000  | 37,000  | 42,500  | 52,000  | 61,500  | 74,500  |     |
|            | 조사료     | 16,500 | 20,000  | 25,000  | 31,000  | 24,000  | 45,000  | 44,000  | 53,000  | 76,500  | 90,000  |     |
|            | 경비      | 7,000  | 8,500   | 11,000  | 13,000  | 16,500  | 18,500  | 23,000  | 26,500  | 47,000  | 53,000  |     |
|            | 계 (B)   | 48,406 | 55,506  | 68,406  | 113,536 | 113,854 | 141,225 | 148,596 | 168,967 | 220,838 | 251,709 |     |
| 손익 (A - B) | -33,406 | 57,494 | 44,594  | 30,664  | 40,546  | 96,675  | 85,704  | 114,733 | 78,262  | 122,591 |         |     |

(별도첨부)

3. 투자 및 시설개선계획

o. 향후 사육계획

(단위:두)

| 농가별            | 상축   |     | 자축 |     | 합계  |     |     | 비고<br>(소 판매두수) |               |
|----------------|------|-----|----|-----|-----|-----|-----|----------------|---------------|
|                | 암    | 수   | 암  | 수   | 암   | 수   | 계   |                |               |
| 부림<br>한우영농조합법인 | '93  | 90  |    | 30  | 30  | 120 | 30  | 150            |               |
|                | '94  | 120 |    | 30  | 30  | 150 | 30  | 180            | 비육 30두        |
|                | '95  | 150 |    | 42  | 42  | 192 | 42  | 234            | 비육 30두        |
|                | '96  | 180 |    | 52  | 53  | 232 | 53  | 283            | 비육 42두 번식우12두 |
|                | '97  | 232 |    | 63  | 63  | 259 | 63  | 322            | 비육 53두        |
|                | '98  | 240 |    | 81  | 81  | 321 | 81  | 402            | 비육 63두 번식우45두 |
|                | '99  | 321 |    | 84  | 84  | 405 | 84  | 489            | 비육 81두        |
|                | 2000 | 350 |    | 112 | 112 | 462 | 112 | 574            | 비육 84두 번식우55두 |
|                | 2001 | 462 |    | 122 | 122 | 584 | 122 | 706            | 비육112두        |
|                | 2002 | 500 |    | 161 | 161 | 661 | 161 | 822            | 비육122두 번식우84두 |

1. 번식우 사업내역

(1) 1차년도 계획 <성숙 90두 자축 30두>

- . 수입 - 송아지생산 60두(암30 수30) 암30두 2차년도대비, 수30두 비육사업
  - (A) 자축 암30두  $30\text{두} \times 800,000\text{원} = 24,000,000\text{원}$
- . 지출 - (a) 1두당 1년치 조사료 및 기타경비  $120\text{두} \times 150,000\text{원} = 18,000,000\text{원}$ 
  - (b) 배합 사료  $120\text{두} \times 59,220\text{원} = 7,106,400\text{원}$
- . 손익 -  $24,000,000\text{원} - (1,800,000\text{원} + 7,106,400\text{원}) = -1,106,400\text{원}$

# 1일 1두 사료섭취량 1.5Kg # 사료1포=25Kg=4,700원  
 $1\text{두} \times 1.5\text{Kg} \times 30\text{일} \times 7\text{개월} = 315\text{Kg} / 25\text{Kg} = 12.6\text{포}$   
 $= 12.6\text{포} \times 4,700\text{원} = 59,220\text{원}$

(2) 2차년도 계획 <성숙 120두 자축 30두>

- . 수입 - 송아지생산 60두(암30 수30) 암30두 3차년도대비, 수30두 비육사업
  - (A) 자축 암 30두  $30\text{두} \times 800,000\text{원} = 24,000,000\text{원}$
- . 지출 - (a) 1두당 1년치 조사료 및 기타경비  $150\text{두} \times 150,000\text{원} = 22,500,000\text{원}$ 
  - (b) 배합 사료  $150\text{두} \times 59,220\text{원} = 8,883,000\text{원}$
- . 손익 -  $24,000,000\text{원} - (22,500,000\text{원} + 8,883,000\text{원}) = -7,383,000\text{원}$

(3) 3차년도 계획 <성숙 150두 자축42두>

- . 수입 - 송아지생산 84두(암42 수42) 암42두 4차년도대비, 수42두 비육사업
  - (A) 자축 암 42두  $42\text{두} \times 800,000\text{원} = 33,600,000\text{원}$
- . 지출 - (a) 1두당 1년치 조사료 및 기타경비  $192\text{두} \times 150,000\text{원} = 28,800,000\text{원}$ 
  - (b) 배합 사료  $192\text{두} \times 59,220\text{원} = 11,370,240\text{원}$
- . 손익 -  $33,600,000\text{원} - (28,800,000\text{원} + 11,370,240\text{원}) = -6,570,240\text{원}$

(4) 4차년도 계획 <성숙 180두 자축52두>

- . 수입 - 송아지생산 105두(암52 수53) 암52두 5차년도대비, 수53두 비육사업
  - (A) 자축 암 52두  $52\text{두} \times 800,000\text{원} = 41,600,000\text{원}$
  - (B) 1-3차년도 192두중 도태우 12두 판매  $232\text{두} \times 800,000\text{원} = 9,600,000\text{원}$
- . 지출 - (a) 1두당 1년치 조사료 및 기타경비  $232\text{두} \times 150,000\text{원} = 34,800,000\text{원}$ 
  - (b) 배합 사료  $232\text{두} \times 59,220\text{원} = 13,739,040\text{원}$
- . 손익 -  $41,600,000\text{원} + 9,600,000\text{원} - (34,800,000\text{원} + 13,739,040\text{원}) = 2,660,960\text{원}$

(5) 5차년도 계획 <성숙 232두 자축63두>

- . 수입 - 송아지생산 126두(암63 수63) 암63두 6차년도대비, 수63두 비육사업
  - (A) 자축 암 63두  $63\text{두} \times 800,000\text{원} = 50,400,000\text{원}$
- . 지출 - (a) 1두당 1년치 조사료 및 기타경비  $295\text{두} \times 150,000\text{원} = 44,250,000\text{원}$ 
  - (b) 배합 사료  $295\text{두} \times 59,220\text{원} = 17,469,900\text{원}$
- . 손익 -  $50,400,000\text{원} - (44,250,000\text{원} + 17,469,900\text{원}) = -11,319,900\text{원}$

(6) 6차년도 계획 <성숙 240두 자축81두>

- . 수입 - 송아지생산 162두(암81 수81) 암81두 7차년도대비, 수81두 비육사업
  - (A) 자축 암 81두  $81\text{두} \times 800,000\text{원} = 64,800,000\text{원}$
  - (B) 1-5차년도 295두중 도태우 45두판매  $45\text{두} \times 800,000\text{원} = 36,000,000\text{원}$
- . 지출 - (a) 1두당 1년치 조사료 및 기타경비  $321\text{두} \times 150,000\text{원} = 48,150,000\text{원}$ 
  - (b) 배합 사료  $321\text{두} \times 59,220\text{원} = 19,009,620\text{원}$
- . 손익 -  $64,800,000\text{원} + 36,000,000\text{원} - (48,150,000\text{원} + 19,009,620\text{원}) = 33,640,280\text{원}$

(7) 7차년도 계획 <성축 321두 자축84두>

. 수입 - 송아지생산 168두(암84 수84) 암84두 8차년도대비, 수84두 비육사업  
 (A) 자축 암 84두  $84\text{두} \times 800,000\text{원} = 67,200,000\text{원}$   
 . 지출 - (a) 1두당 1년치 조사료 및 기타경비  $405\text{두} \times 150,000\text{원} = 60,750,000\text{원}$   
 (b) 배합 사료  $405\text{두} \times 59,220\text{원} = 23,984,100\text{원}$   
 . 손익 -  $67,200,000\text{원} - (60,750,000\text{원} + 23,984,100\text{원}) = -17,534,100\text{원}$

(8) 8차년도 계획 <성축 350두 자축112두>

. 수입 - 송아지생산 224두(암112 수112) 암112두 9차년도대비, 수112두 비육사업  
 (A) 자축 암 112두  $112\text{두} \times 800,000\text{원} = 89,600,000\text{원}$   
 (B) 1-7차년도 405두중 도태우 55두판매  $55\text{두} \times 800,000\text{원} = 44,000,000\text{원}$   
 . 지출 - (a) 1두당 1년치 조사료 및 기타경비  $462\text{두} \times 150,000\text{원} = 69,300,000\text{원}$   
 (b) 배합 사료  $462\text{두} \times 59,220\text{원} = 27,359,640\text{원}$   
 . 손익 -  $89,600,000\text{원} + 44,000,000\text{원} - (69,300,000\text{원} + 27,359,640\text{원}) = 36,940,360\text{원}$

(9) 9차년도 계획 <성축 462두 자축 122두>

. 수입 - 송아지생산 244두(암122 수122) 암122두 10차년도대비, 수122두 비육사업  
 (A) 자축 암 122두  $122\text{두} \times 800,000\text{원} = 97,600,000\text{원}$   
 . 지출 - (a) 1두당 1년치 조사료 및 기타경비  $584\text{두} \times 150,000\text{원} = 87,600,000\text{원}$   
 (b) 배합 사료  $584\text{두} \times 59,220\text{원} = 34,584,480\text{원}$   
 . 손익 -  $97,600,000\text{원} - (87,600,000\text{원} + 34,584,480\text{원}) = -24,584,480\text{원}$

(10) 10차년도 계획 <성축 500두 자축 161두>

. 수입 - 송아지생산 322두(암161 수161) 암161두 다음년도대비, 수161두 비육사업  
 (A) 자축 암 161두  $161\text{두} \times 800,000\text{원} = 128,800,000\text{원}$   
 (B) 1-9차년도 584두중 도태우 84두판매  $84\text{두} \times 800,000\text{원} = 67,200,000\text{원}$   
 . 지출 - (a) 1두당 1년치 조사료 및 기타경비  $661\text{두} \times 150,000\text{원} = 99,150,000\text{원}$   
 (b) 배합 사료  $661\text{두} \times 59,220\text{원} = 39,144,420\text{원}$   
 . 손익 -  $128,800,000\text{원} + 67,200,000\text{원} - (99,150,000\text{원} + 39,144,420\text{원})$   
 $= 57,705,580\text{원}$

2. 비육우 사업내역

(2) 2차년도계획 <수30두>

. 수입 - 성우판매 30두  $\times 1,800,000\text{원} = 54,000,000\text{원}$   
 . 지출 - 사육경비 30두  $\times 400,000\text{원} = 12,000,000\text{원}$   
 . 손익 -  $54,000,000\text{원} - 12,000,000\text{원} = 42,000,000\text{원}$

# 성우판매기준 = 1마리 400 Kg 1,800,000원으로정함 =사육기간1년  
 # 사육경비 = 사료, 조사료외경비포함 = 400,000원으로정함  
 # 비육송아지입식은 자체생산으로 해결

(3) 3차년도계획 <수30두>

. 수입 - 성우판매 30두  $\times 1,800,000\text{원} = 54,000,000\text{원}$   
 . 지출 - 사육경비 30두  $\times 400,000\text{원} = 12,000,000\text{원}$   
 . 손익  $54,000,000\text{원} - 12,000,000\text{원} = 42,000,000\text{원}$

(4) 4차년도계획 <수42두>

. 수입 - 성우판매 42두  $\times 1,800,000\text{원} = 75,600,000\text{원}$   
 . 지출 - 사육경비 42두  $\times 400,000\text{원} = 16,800,000\text{원}$   
 . 손익 -  $75,600,000\text{원} - 16,800,000\text{원} = 58,800,000\text{원}$

(5) 5차년도계획 <수53두>

. 수입 - 성우판매 53두 x 1,800,000원 = 95,400,000원  
 . 지출 - 사육경비 53두 x 400,000원 = 21,600,000원  
 . 손익 - 95,400,000원-21,600,000원 = 73,800,000원

(6) 6차년도계획 <수63두>

. 수입 - 성우판매 63두 x 1,800,000원 = 113,400,000원  
 . 지출 - 사육경비 63두 x 400,000원 = 25,200,000원  
 . 손익 - 113,400,000원-25,200,000원 = 88,200,000원

(7) 7차년도계획 <수81두>

. 수입 - 성우판매 81두 x 1,800,000원 = 145,800,000원  
 . 지출 - 사육경비 81두 x 400,000원 = 32,400,000원  
 . 손익 - 145,800,000원-32,400,000원 = 113,400,000원

(8) 8차년도계획 <수84두>

. 수입 - 성우판매 84두 x 1,800,000원 = 151,200,000원  
 . 지출 - 사육경비 84두 x 400,000원 = 33,600,000원  
 . 손익 - 151,200,000원-33,600,000원 = 117,600,000원

(9) 9차년도계획 <수112두>

. 수입 - 성우판매 112두 x 1,800,000원 = 201,600,000원  
 . 지출 - 사육경비 112두 x 400,000원 = 44,800,000원  
 . 손익 - 201,600,000원-44,800,000원 = 156,800,000원

(10) 10차년도계획 <수122두>

. 수입 - 성우판매 122두 x 1,800,000원 = 219,600,000원  
 . 지출 - 사육경비 122두 x 400,000원 = 48,800,000원  
 . 손익 - 219,600,000원-48,800,000원 = 170,800,000원

(11) 다음년도계획 <수161두>

. 수입 - 성우판매 161두 x 1,800,000원 = 289,800,000원  
 . 지출 - 사육경비 161두 x 400,000원 = 64,400,000원  
 . 손익 - 289,800,000원-64,400,000원 = 225,400,000원

3. 위탁사육 사업내역

(단위: 두)

| 년도별 | 1993 | 1994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비 | 고 |
|-----|------|------|------|------|------|------|------|------|------|------|---|---|
| 마리수 | 50   | 200  | 200  | 200  | 200  | 300  | 300  | 300  | 300  | 300  |   |   |

# 1마리당사육비 - 월 25,000원

# 100마리 1년경비 - 연 500,000원

(별 표)

현물을 출자하는 조합원 의 성명, 출자현물과출자좌수  
(계 15 조 관련)

| 조합원 성명 | 현물출자좌수 | 금 액          | 비 고  |
|--------|--------|--------------|--|
| 전 영    | 300    | 15, 000, 000 | 한우현물출자 1두당평가액 1, 000, 000원<br><br>1인 출자두수 15두 x 6인<br><br>총 좌수=1, 300좌<br>총 금액=90, 000, 000원 |
| 김 진환   | 300    | 15, 000, 000 |  |
| 고 선경   | 300    | 15, 000, 000 |  |
| 정 경수   | 300    | 15, 000, 000 |  |
| 이 창해   | 300    | 15, 000, 000 |  |
| 안 광진   | 300    | 15, 000, 000 |  |

| 조합원의<br>성 명 | 출자한 농지의 표시      |    |          | 평 가 액         | 농지출자좌수  |
|-------------|-----------------|----|----------|---------------|---------|
|             | 지 번             | 지목 | 면 적      |               |         |
| 전 영         | 방림면 운교리 산 429번지 | 산  | 28, 380평 | 14, 000, 000원 | 280좌    |
| 김 진환        | 방림면 운교리 전 57번지  | 전  | 2, 125평  | 14, 000, 000원 | 280좌    |
|             | .. 전 43번지       | 전  | 591평     |               |         |
| 고 선경        | .. 전 60번지       | 전  | 1, 563평  | 14, 000, 000원 | 280좌    |
|             | 방림면 운교리 전 64번지  | 전  | 978평     |               |         |
|             | .. 전 76번지       | 전  | 129평     |               |         |
| 이 창해        | .. 전 75번지       | 전  | 1, 237평  | 14, 000, 000원 | 280좌    |
|             | .. 전 58번지       | 전  | 1, 410평  |               |         |
| 정 경수        | 방림면 운교리 전 80번지  | 전  | 8, 980평  | 14, 000, 000원 | 280좌    |
| 안 광진        | 방림면 운교리 전 62번지  | 전  | 1, 010평  | 14, 000, 000원 | 280좌    |
|             | .. 전 79번지       | 전  | 624평     |               |         |
|             | .. 전 74번지       | 전  | 775평     |               |         |
| 계           | 총 12필지          |    | 47, 802평 | 84, 000, 000원 | 1, 580좌 |



현금을 출자하는 조합원의 성명, 출자액과 출자좌수

| 조합원의 성명 | 현금출자좌수 | 금 액         | 비 고          |
|---------|--------|-------------|--------------|
| 전 영     | 40 좌   | 2,000,000 원 | 1 좌 50,000 원 |
| 김 진환    | 40 좌   | 2,000,000 원 | 1 좌 50,000 원 |
| 고 선경    | 40 좌   | 2,000,000 원 | 1 좌 50,000 원 |
| 정 경수    | 40 좌   | 2,000,000 원 | 1 좌 50,000 원 |
| 이 창해    | 40 좌   | 2,000,000 원 | 1 좌 50,000 원 |
| 안 광진    | 40 좌   | 2,000,000 원 | 1 좌 50,000 원 |

'93 한우종합대책 사업  
한우영농조합법인사업신청 담보물건에 대한 의견서

1. 신청자

- 주소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55

성명 : 부림 한우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전 영

2. 용자신청금액

- 228, 110, 000원

3. 현재지원받은 축산진흥기금 대출금 잔액

-없음

4. 담보물건의 검토의견서

- 물건의 소재지 : 평창군 평창읍 약수리 54-12번지의외 13필지  
· 종부리 498-2번지  
· 용항리 149번지의외 4필지  
· 이곡리 407의 3필지  
· 마지리 447번지  
· 중리 250번지 신라연립 205호 55. 56㎡  
· 방림면 운교리 43번지의외 11필지

- 물건의 종류및 면적 : 전 84, 665㎡  
담 9, 818㎡  
대 824㎡  
임 97, 159㎡  
연립 55,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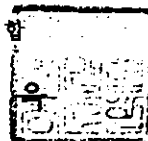
- 소유주 :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6명

- 의견 : 상기와같이 전조합원이 제공한 담보물건으로 용자신청금액 대비 150%이상

평가받을수있는 물건이므로 용자실행에는 하자가 없을것으로 생각됨.

평창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김 용



'93 한우 종합 대책 사업

# 사 업 계 획 서

< 한 우 목 장 >

사업농가 주소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차항2리 4번

성명 김 윤 정



# 사 업 계 획 서

## 1. 신청자

| 성 명 | 년령 | 학 령     | 축산경력 | 주소(사업장소재지)                |
|-----|----|---------|------|---------------------------|
| 김윤정 | 53 | 강릉농업고졸업 | 20년  |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횡계리 산 1-139번지 |

## 2. 가축 사육 두수 및 시설현황

### ◦ 사육두수

| 농가명 | 성 축 |   | 육 성 축 |   | 자 축 |   | 합 계 |   |    |
|-----|-----|---|-------|---|-----|---|-----|---|----|
|     | 암   | 수 | 암     | 수 | 암   | 수 | 암   | 수 | 계  |
| 김윤정 | 3   |   | 5     | 1 | 1   | 1 | 9   | 2 | 11 |

### ◦ 시 설

| 농가명 | 사 설 명  | 농 수 | 면 적   | 비 고                   |
|-----|--------|-----|-------|-----------------------|
| 김윤정 | 축 사    | 1   | 74 평  | 콘크리트 구조물<br>계방 옹벽 구조물 |
|     | 창 고    | 1   | 15 평  |                       |
|     | 안 리 사  | 1   | 3 평   |                       |
|     | 분뇨처리시설 | 1   | 2.2 ■ |                       |
|     | 사 이 로  | 1   | 145 ■ |                       |
|     | 기 타    |     |       |                       |

○ 장 비

| 농가명 | 장 비 명                     | 규 격                         | 보유대수        | 비 고 |
|-----|---------------------------|-----------------------------|-------------|-----|
| 김윤정 | 농용 트랙터<br>농업용 차방<br>경 운 기 | M F 68 HP<br>세 레 스<br>10 HP | 1<br>1<br>1 |     |

○ 초지 및 사료포

| 농가명 | 이용별 | 면 적     | 소 유 형 태 별 |      |     | 비 고                  |
|-----|-----|---------|-----------|------|-----|----------------------|
|     |     |         | 자 가       | 임 대  | 기 타 |                      |
| 김윤정 | 방목용 | 36.9 ha |           | 36.9 |     | 국유림 대부 면적<br>45.5 ha |

○ 노 능 력

| 자 가 | 고 용 | 계 | 비 고 |
|-----|-----|---|-----|
| 3   |     | 3 |     |

○ 사업 추진 실적

(단위:천원)

| 년 도 별 | 사 업 명 | 실 적 |     | 비 고 |
|-------|-------|-----|-----|-----|
|       |       | 물 량 | 남 액 |     |
|       |       |     |     |     |

#### 4. 투자 및 시설 개선 계획

##### ○ 향후 사육 계획

| 농가명 | 년도별 | 성 축 |   | 자 축 |    | 합 계 |    |    | 비 고       |
|-----|-----|-----|---|-----|----|-----|----|----|-----------|
|     |     | 암   | 수 | 암   | 수  | 암   | 수  | 계  |           |
| 김운정 | 93  | 9   | 1 | 1   | 1  | 10  | 2  | 12 | 숫소1마리 판매  |
|     | 94  | 15  | 1 | 6   | 6  | 21  | 7  | 28 | 성축압소 6두구입 |
|     | 95  | 21  | 1 | 9   | 9  | 30  | 10 | 40 | 12두 판매    |
|     | 96  | 30  | 2 | 12  | 12 | 42  | 14 | 56 | 18두 판매    |
|     | 97  | 42  | 2 | 18  | 18 | 60  | 20 | 80 | 24두 판매    |
|     | 98  | 42  | 2 | 18  | 18 | 60  | 20 | 80 | 36두 판매    |
|     | 99  | 42  | 2 | 18  | 18 | 60  | 20 | 80 | 36두 판매    |
|     | 200 | 42  | 2 | 18  | 18 | 60  | 20 | 80 | 36두 판매    |
|     | 201 | 42  | 2 | 18  | 18 | 60  | 20 | 80 | 36두 판매    |
|     | 202 | 42  | 2 | 18  | 18 | 60  | 20 | 80 | 36두 판매    |

##### ○ 농가별 투자 및 시설계획

(단위:천원)

| 농가명 | 사 업 내 용   | 사업당                           | 사 업 비  |        |        |         | 비 고  |
|-----|-----------|-------------------------------|--------|--------|--------|---------|--|
|     |           |                               | 자부담    | 지원요구액  |        | 계       |  |
|     |           |                               |        | 용자     | 보조     |         |  |
| 김운정 | 전기시설      | 700 m                         | 1,600  | 3,200  | 11,200 | 16,000  | 한전설계비<br>구간. 급수조<br><br>ha당 656원<br>보완사업신청 |
|     | 급수시설      | 30 ha                         | 2,000  | 4,000  | 14,000 | 20,000  |  |
|     | 목도시설      | 3000 m                        | 5,000  | 10,000 | 35,000 | 50,000  |  |
|     | 사료포조성     | 5 ha                          | 2,500  | 5,000  | 17,500 | 25,000  |  |
|     | 축 사       | 50 평                          | -      | -      | -      | 자부담     |  |
|     | 역비저장조및퇴비사 | -                             | -      | -      | -      | 자부담     |  |
|     | 목책시설교체    | 36.9 ha                       | -      | 12,000 | 12,000 | 24,000  |  |
|     | 기성초지보완    | 20 ha                         | -      | -      | -      | -       |  |
|     | 벗집압모니아    | 2 기                           | 32     | -      | 128    | 160     |  |
|     | 트랙터장비     | 토우더.도<br>져.비료살<br>포기.트레<br>일러 | 650    | 3,900  | 1,950  | 6,500   |  |
| 총 계 |           |                               | 11,782 | 38,100 | 91,778 | 141,660 |  |

○. 년도별 손익

(단위:천원)

| 구 분         |                | '93    | 94    | 95     | 96     | 97     | 98     | 99     | 2000   | 2001   | 2002   |
|-------------|----------------|--------|-------|--------|--------|--------|--------|--------|--------|--------|--------|
| 수<br>입      | 소 판 매          | 1,500  |       | 18,000 | 27,000 | 36,000 | 54,000 | 54,000 | 54,000 | 54,000 | 54,000 |
|             | 회 비<br>(두당 1t) | 420    | 980   | 1,400  | 1,960  | 2,800  | 2,800  | 2,800  | 2,800  | 2,800  | 2,800  |
|             | 계 (A)          | 1,920  | 980   | 19,400 | 28,960 | 38,800 | 56,800 | 56,800 | 56,800 | 56,800 | 56,800 |
| 지<br>출      | 소 구 입 비        |        | 6,000 |        |        |        |        |        |        |        |        |
|             | 사 료 비          | 500    | 1,000 | 2,000  | 4,000  | 6,000  | 8,000  | 8,000  | 8,000  | 8,000  | 8,000  |
|             | 약품및 진료비        | 100    | 200   | 300    | 300    | 400    | 500    | 500    | 500    | 500    | 500    |
|             | 인 건 비          | 2,000  | 2,000 | 2,000  | 4,000  | 5,000  | 6,000  | 6,000  | 6,000  | 6,000  | 6,000  |
|             | 광 열 비          | 50     | 50    | 50     | 50     | 50     | 50     | 50     | 50     | 50     | 50     |
|             | 기 타            | 500    | 5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 융자금및 이자        | 1,905  | 1,905 | 1,905  | 7,605  | 7,020  | 6,750  | 6,480  | 6,210  | 5,940  | 5,670  |
| 계 (B)       | 5,055          | 11,655 | 7,255 | 16,955 | 19,470 | 22,300 | 22,030 | 21,760 | 21,490 | 21,220 |        |
| 손 익 (A - B) |                | -3,135 | -     | 12,145 | 12,005 | 19,330 | 34,500 | 34,770 | 35,040 | 35,310 | 35,580 |

○. 지원 자금 상환계획

| 구 분  | 상 환 액  |        |        | 잔 액    | 비 고 |
|------|--------|--------|--------|--------|-----|
|      | 원 금    | 이 자    | 계      |        |     |
| '93  |        | 1,905  | 1,905  | 38,100 |     |
| 94   |        | 1,905  | 1,905  | 38,100 |     |
| 95   |        | 1,905  | 1,905  | 38,100 |     |
| 96   | 5,700  | 1,905  | 7,605  | 32,400 |     |
| 97   | 5,400  | 1,620  | 7,020  | 27,000 |     |
| 98   | 5,400  | 1,350  | 6,750  | 21,600 |     |
| 99   | 5,400  | 1,080  | 6,480  | 16,200 |     |
| 2000 | 5,400  | 810    | 6,210  | 10,800 |     |
| 2001 | 5,400  | 540    | 5,940  | 5,400  |     |
| 2002 | 5,400  | 270    | 5,670  | 0      |     |
| 계    | 38,100 | 13,290 | 51,390 |        |     |



'93 한우종합대책 사업  
한우목장사업신청 담보물건에 대한 의견서

1. 신청자

- 주소 :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횡계리 산 1-139번지

성명 : 김 윤 정

2. 용자신청금액

- 38, 100, 000원

3. 현재지원받은 축산진흥기금 대출금 잔액

- '87신규초지조성자금 5, 000, 000원

'90기성초지보완자금 3, 000, 000원

계 8, 000, 000원

4. 담보물건의 검토의견서

- 물건의 소재지 : 평창군 도암면 차항리 151-1번지

- 물건의 종류및 면적 : 전 21, 273㎡

- 소유주 : 김윤정

- 의견: 경지지역내의 전이며 차항리 도로와 접하여있고 자연하천과 인접하여있으며  
사질양토로 토질이 매우 좋은 토지이므로 용자신청금액에대한 평가금액이  
150%이상 상회할것으로 추정되므로 용자실행에는 문제가 없을것으로 생각됨.

평창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김 용



'93 한우종합대책 사업

# 사업 계획서

(사업명 : 무이 한우 영농조합법인 )

농어촌발전 특별 조치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계획서를 신청 합니다.

|    |                |    |
|----|----------------|----|
| 첨부 | : 1. 사업 계획서    | 1부 |
|    | 2. 토지 대장 등본    | 1부 |
|    | 3. 국토이용 계획 확인서 | 1부 |

사업농가 주소 : 평창군 동명(읍)면 무이 리 223 번지

성명 : 대표 이사 김 대 수



# 사 업 계 획 서

## 1. 신청자 (무이한우 영농조합법인)

| 성명  | 연령 | 학력   | 축산경력 | 주소             | 사업장소재지     |
|-----|----|------|------|----------------|------------|
| 김원거 | 34 | 초대졸  | 6    | 평창군 봉평면 무이리 55 | 봉평. 무이 223 |
| 김대수 | 46 | 중    | 20   | " " 223        |            |
| 김계보 | 54 | "    | 25   | " " 209        |            |
| 김기진 | 46 | 고졸   | 20   | " " 688        |            |
| 김영우 | 25 | 축산고졸 | 1    | " " 산2         |            |
| 김일태 | 25 | "    | 1    | " " 852        |            |

## 2. 가축사육두수 및 시설현황

### ○ 사육두수

| 능가별       | 성 축 |   | 우 성 축 |   | 자 축 |    | 합 계 |    |    |
|-----------|-----|---|-------|---|-----|----|-----|----|----|
|           | 암   | 수 | 암     | 수 | 암   | 수  | 암   | 수  | 계  |
| 무이한우 영농조합 |     |   |       |   | 18  | 37 | 18  | 37 | 55 |

### ○ 시설

| 능가별       | 시설명 | 동수 | 면적   | 비고          |
|-----------|-----|----|------|-------------|
| 무이한우 영농조합 | 축사  | 3  | 130평 | 내부 시설보충해야함. |

◦ 장 비

| 능 가 별 | 장 비 명 | 규 격  | 보유대수 | 비 고 |
|-------|-------|------|------|-----|
|       | 트랙터   | 78마력 | 1대   |     |

◦ 초지 및 사료포

| 능 가 별 | 이 용 별             | 면 적         | 소 유 형 태 별   |     |     | 비 고    |
|-------|-------------------|-------------|-------------|-----|-----|--------|
|       |                   |             | 자 가         | 임 대 | 기 타 |        |
|       | 2015<br>초지<br>사료포 | 12헥타<br>3헥타 | 12헥타<br>3헥타 |     | 사료포 | 벗진사드림. |

◦ 노동력

| 능 가 별 | 자 가 | 고 용 | 계   | 비 고 |
|-------|-----|-----|-----|-----|
|       | 14명 | 1명  | 15명 |     |

### 3. 사업추진실적

| 연도별 | 사업명 | 실적 |    | 비고 |
|-----|-----|----|----|----|
|     |     | 물량 | 금액 |    |
|     |     |    |    |    |

### 4. 투자 및 시설개선계획

○ 향후 사육계획

| 능가별                  | 성축  |    | 자축 |     | 합계  |     |     | 비고  |
|----------------------|-----|----|----|-----|-----|-----|-----|-----|
|                      | 암   | 수  | 암  | 수   | 암   | 수   | 계   |     |
| 분하<br>한우<br>영농<br>조합 | 93  |    | 18 | 37  | 18  | 37  | 55  |     |
|                      | 94  | 7  | 3  | 18  | 37  | 25  | 40  | 65  |
|                      | 95  | 10 | 5  | 25  | 40  | 35  | 45  | 80  |
|                      | 96  | 10 | 10 | 35  | 45  | 45  | 55  | 100 |
|                      | 97  | 30 | 10 | 45  | 55  | 75  | 65  | 130 |
|                      | 98  | 20 | 10 | 75  | 65  | 95  | 75  | 170 |
|                      | 99  | 10 | 20 | 95  | 75  | 105 | 95  | 200 |
|                      | 200 | 10 | 20 | 105 | 95  | 115 | 115 | 230 |
|                      | 201 | 20 | 10 | 115 | 115 | 135 | 125 | 260 |
|                      | 202 | 15 | 25 | 135 | 125 | 150 | 150 | 300 |

○ 농가별 투자 및 시설계획

| 농가별                        | 사업내용     | 사업량    | 사업비     |        |         |         | 비고 |
|----------------------------|----------|--------|---------|--------|---------|---------|----|
|                            |          |        | 자부담     | 융자     | 보조      | 계       |    |
| 무이<br>한우<br>영농<br>조합<br>법인 | 비료살포기    | 1대     | 90      | 360    | 450     | 900     |    |
|                            | 액취기용     | 1대     | 520     | 2,080  | 2,600   | 5,200   |    |
|                            | 추레라      | 1대     | 155     | 620    | 775     | 1,550   |    |
|                            | 로타       | 2대     | 1,290   | 5,160  | 6,450   | 12,900  |    |
|                            | 로타리      | 4대     | 1,385   | 5,539  | 6,924   | 13,848  |    |
|                            | 트랙타      | 4대     | 8,680   | 34,720 | 43,400  | 86,800  |    |
|                            | 과중기      | 1대     | 300     | 1,200  | 1,500   | 3,000   |    |
|                            | 폰하베스타    | 1대     | 750     | 3,000  | 3,750   | 7,500   |    |
|                            | 축사       | 109평   | 8,175   | 19,075 |         | 27,250  |    |
|                            | 정화조및 퇴비사 | 2개소    |         | 4,200  | 1,800   | 6,000   |    |
|                            | 축사       | 400평   | 30,000  | 70,000 |         | 100,000 |    |
| 퇴비사                        | 6개소      |        | 12,600  | 5,400  | 18,000  |         |    |
| 뽕질수거기                      | 1대       | 600    | 2,400   | 3,000  | 6,000   |         |    |
| 계                          |          | 51,945 | 160,954 | 76,049 | 288,948 |         |    |

○ 공동투자 및 시설계획

| 사업내용 | 사업량 | 사업비 |       |   | 비고 |
|------|-----|-----|-------|---|----|
|      |     | 자부담 | 지원요구액 | 계 |    |
|      |     |     |       |   |    |

○ 연도별 손익

(단위:천원)

| 구분      |       | '93     | 94      | 95      | 96      | 97      | 98      | 99      | 2000    | 2001    | 2002    | 비고 |
|---------|-------|---------|---------|---------|---------|---------|---------|---------|---------|---------|---------|----|
| 수입      | 장비사용료 | 8,875   | 16,148  | 20,387  | 24,626  | 20,639  | 16,728  | 15,533  | 14,914  | 14,872  | 15,306  |    |
|         | 구비    | 211     | 390     | 480     | 600     | 840     | 1,020   | 1,200   | 1,380   | 1,560   | 1,800   |    |
|         | 소사육   | 157,589 | 178,000 | 216,000 | 272,000 | 360,000 | 452,000 | 548,000 | 634,000 | 706,000 | 825,000 |    |
| 계(A)    |       | 166,675 | 194,538 | 236,867 | 297,226 | 381,479 | 469,746 | 564,733 | 650,294 | 722,432 | 842,106 |    |
| 지출      | 소구입자금 | 88,000  | 104,000 | 128,000 | 160,000 | 224,000 | 272,000 | 320,000 | 368,000 | 416,000 | 480,000 |    |
|         | 사료비   | 27,500  | 32,500  | 40,000  | 50,000  | 70,000  | 85,000  | 100,000 | 115,000 | 130,000 | 150,000 |    |
|         | 관리비   | 100     | 3,000   | 3,000   | 4,000   | 5,000   | 5,000   | 5,000   | 5,000   | 5,000   | 5,000   |    |
|         | 인건비   | 5,470   | 5,470   | 7,300   | 7,300   | 9,250   | 9,250   | 10,950  | 16,425  | 16,425  | 18,250  |    |
|         | 기타제비  | 765     | 960     | 1,245   | 1,575   | 2,385   | 2,955   | 3,375   | 3,865   | 4,365   | 4,950   |    |
| 응자원리금   |       | 8,047   | 8,047   | 8,047   | 31,061  | 29,887  | 28,736  | 27,588  | 26,439  | 25,289  | 24,140  |    |
| 계(B)    |       | 129,882 | 153,977 | 187,592 | 253,936 | 340,522 | 402,941 | 466,913 | 534,729 | 597,079 | 682,340 |    |
| 손익(A-B) |       | 36,793  | 40,561  | 49,275  | 43,290  | 40,957  | 66,805  | 97,820  | 115,565 | 125,353 | 159,766 |    |

○ 지원자금 상환계획

(단위:천원)

| 년도별  | 상 환 액   |        |         | 잔 액     | 비 고 |
|------|---------|--------|---------|---------|-----|
|      | 원 금     | 이 자    | 계       |         |     |
| '93  |         | 8,047  | 8,047   | 160,954 |     |
| 94   |         | 8,047  | 8,047   | 160,954 |     |
| 95   |         | 8,047  | 8,047   | 160,954 |     |
| 96   | 23,014  | 8,047  | 31,061  | 137,940 |     |
| 97   | 22,990  | 6,897  | 29,887  | 114,950 |     |
| 98   | 22,990  | 5,746  | 28,736  | 91,960  |     |
| 99   | 22,990  | 4,598  | 27,588  | 68,970  |     |
| 2000 | 22,990  | 3,449  | 26,439  | 45,980  |     |
| 2001 | 22,990  | 2,299  | 25,289  | 22,990  |     |
| 2002 | 22,990  | 1,150  | 24,140  | 0       |     |
| 계    | 160,954 | 56,327 | 217,281 |         |     |

상기와 같이 사업 계획서작성을 명확히 하기위해 사업 계획서 2층을 작성하고  
작성 이사는 다음과 같이 기명 날인한다.

1993년 4월 10일

\*----- 무이 한우 영농 조합 번인-----\*

\* 대표 이사 ----- 김 대수

480424 - [REDACTED]

\* 감사 이사 ----- 김 개봉

41049 - [REDACTED]

\* 상무 이사 ----- 김 원거

610201 - [REDACTED]

\* 총무 이사 ----- 태 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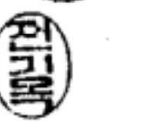
700302 - [REDACTED]

\* 이 사 ----- 손 국진

690419 - [REDACTED]

\* 이 사 ----- 권 개우

480606 - [REDACTED]





'93 한우종합대책 사업  
한우영농조합법인사업신청 담보물건에 대한 의견서

1. 신청자

- 주소 : 강원도 봉평면 무이리 223번지

성명 : 무이 한우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김 대 수

2. 용자신청금액

- 160,954,000원

3. 현재지원받은 축산진흥기금 대출금 잔액

-없음

4. 담보물건의 검토의견서

- 물건의 소재지 : 평창군 봉평면 무이리 629-1번지의 11필지

- 물건의 종류및 면적 : 전 66,682m  
                                  임 4,090m

- 소유주 :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6명

- 의견 : 상기와같이 전조합원이 제공한 담보물건으로 용자신청금액 대비 150%이상

평가받을수있는 물건이므로 용자실행에는 하자가 없을것으로 생각됨.

평창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김 용



'93 한우종합대책 사업

사업 계획서

(사업명 : 한우 사육조합 )

사업농가 주소 : 평창군 평창 읍, 면 하리 리 131-1 번지

성명 : 평창축산업협동조합장



# 사 업 계 획 서

## 1. 신청자 ( 평창축산업협동조합 )

| 성 명  | 연 령 | 학 력 | 축산경력 | 주 소                     | 사 업 장 소 재 지                                 |
|------|-----|-----|------|-------------------------|---|
| 평창축협 |     |     | 9년   | 강원도 평창군<br>평창읍 하리 131-1 | 평창읍 중부리 171번지<br>방림면 방림리 산 793-1<br>( 초 지 ) |

## 2. 가축사육두수 및 시설현황

### ◦ 사육두수

| 농 가 명 | 성 축 |    | 육 성 축 |     | 자 축 |   | 합 계 |     |     |
|-------|-----|----|-------|-----|-----|---|-----|-----|-----|
|       | 암   | 수  | 암     | 수   | 암   | 수 | 암   | 수   | 계   |
| 평창축협  | 54  | 34 | 12    | 121 | 13  | 9 | 79  | 164 | 243 |

### ◦ 시설

| 농 가 별 | 사 설 명  | 동 수                            | 면 적   | 비 고     |
|-------|--|--------------------------------|---|---------|
| 평창축협  | 축 사<br>초 지<br>간 이 우 사<br>관 리 사<br>정 화 조<br>분 처 리 장 | 1동<br><br>2동<br>1동<br>1기<br>1동 | 235평<br>21.01ha<br>60평<br>40평<br>174㎡<br>160㎡ | 축협 시범초지 |

○ 장비

| 농가별  | 장비명     | 규격         | 보유대수     | 비고 |
|------|---------|------------|----------|----|
| 평창축협 | 세레스 경운기 | 1t<br>10HP | 1대<br>1대 |    |

초지 및 사료포

| 농가별  | 이용별 | 면적      | 소유형태별   |    |    | 비고 |
|------|-----|---------|---------|----|----|----|
|      |     |         | 자가      | 임대 | 기타 |    |
| 평창축협 | 초지  | 21.01ha | 21.01ha |    |    |    |

노동력

| 농가별  | 자가 | 고용 | 계 | 비고 |
|------|----|----|---|----|
| 평창축협 |    | 2  | 2 |    |

### 3. 사업추진실적

| 년도별 | 사업명    | 실적   |            | 비고 |
|-----|--------|------|------------|----|
|     |        | 물량   | 금액         |    |
| '90 | 비육우 출하 | 150두 | 349,016 천원 |    |
| 91  |        | 85   | 170,138    |    |
| 92  |        | 113  | 266,354    |    |

### 4. 투자 및 시설개선계획

○ 향후 사육계획

| 농가별              | 성축   |   | 자축  |   | 합계 |   |     | 비고  |        |
|------------------|------|---|-----|---|----|---|-----|-----|--------|
|                  | 암    | 수 | 암   | 수 | 암  | 수 | 계   |     |        |
| 평<br>창<br>축<br>협 | 1993 |   | 300 |   |    |   | 300 | 300 | 판매 150 |
|                  | 1994 |   | 500 |   |    |   | 500 | 500 | .. 300 |
|                  | 1995 |   | 500 |   |    |   | 500 | 500 | .. 450 |
|                  | 1996 |   | 500 |   |    |   | 500 | 500 | .. 450 |
|                  | 1997 |   | 500 |   |    |   | 500 | 500 | .. 450 |
|                  | 1998 |   | 500 |   |    |   | 500 | 500 | .. 450 |
|                  | 1999 |   | 500 |   |    |   | 500 | 500 | .. 450 |
|                  | 2000 |   | 500 |   |    |   | 500 | 500 | .. 450 |
|                  | 2001 |   | 500 |   |    |   | 500 | 500 | .. 450 |
|                  | 2002 |   | 500 |   |    |   | 500 | 500 | .. 450 |

○ 농가별 투자 및 시설계획

| 농가별  | 사업내용   | 사업량               | 사업비    |         |        |         | 비고 |
|------|--------|-------------------|--------|---------|--------|---------|----|
|      |        |                   | 자부담    | 용자      | 보조     | 계       |    |
| 평창축협 | 진입로 개설 | 1.2km             | 5,000  |         | 45,000 | 50,000  |    |
|      | 용수개발   | 21.01ha           | 2,500  |         | 22,500 | 25,000  |    |
|      | 목도개설   | 1km               | 1,000  |         | 9,000  | 10,000  |    |
|      | 축사신축   | 600명              | 90,000 | 210,000 |        | 300,000 |    |
|      | 기성초지보관 | 21.01ha           |        | 10,000  | 10,000 | 20,000  |    |
|      | 싸이로시설  | 150m <sup>2</sup> |        | 10,000  | 10,000 | 20,000  |    |
|      | 분처리장   | 180m <sup>2</sup> |        | 25,000  |        | 25,000  |    |
| 계    |        |                   | 98,500 | 255,000 | 96,500 | 450,000 |    |

○ 공동투자 및 시설계획

| 사업내용 | 사업량 | 사업비 |       |   | 비고 |
|------|-----|-----|-------|---|----|
|      |     | 자부담 | 지원요구액 | 계 |    |
|      |     |     |       |   |    |

○ 연도별 손익

(단위:천원)

| 구분      | '93     | 94      | 95      | 96      | 97      | 98      | 99      | 2000    | 2001    | 2002    | 비고      |  |
|---------|---------|---------|---------|---------|---------|---------|---------|---------|---------|---------|---------|--|
| 수입      | 바육우출하비  | 285,000 | 570,000 | 855,000 | 855,000 | 855,000 | 855,000 | 855,000 | 855,000 | 855,000 | 400kg기준 |  |
|         | 구비      | 1,000   | 2,000   | 2,000   | 2,000   | 2,000   | 2,000   | 2,000   | 2,000   | 2,000   | 1,900   |  |
| 계(A)    | 286,000 | 572,000 | 857,000 | 857,000 | 857,000 | 857,000 | 857,000 | 857,000 | 857,000 | 857,000 |         |  |
| 지출      | 소구입자급   | 56,000  | 240,000 | 360,000 | 360,000 | 360,000 | 360,000 | 360,000 | 360,000 | 360,000 | 송아지     |  |
|         | 사료비     | 75,000  | 120,000 | 120,000 | 120,000 | 120,000 | 120,000 | 120,000 | 120,000 | 120,000 | 800기준   |  |
|         | 조사료비    | 48,000  | 90,000  | 90,000  | 90,000  | 90,000  | 90,000  | 90,000  | 90,000  | 90,000  |         |  |
|         | 인건비     | 24,000  | 36,000  | 43,000  | 43,000  | 45,000  | 48,000  | 50,000  | 53,000  | 55,000  | 58,000  |  |
|         | 기타제비    | 10,000  | 12,000  | 15,000  | 15,000  | 17,000  | 19,000  | 21,000  | 23,000  | 25,000  | 27,000  |  |
|         | 용자원리급   | 12,250  | 12,250  | 12,250  | 48,850  | 46,820  | 45,000  | 43,180  | 41,360  | 39,540  | 37,720  |  |
| 계(B)    | 225,250 | 510,250 | 640,250 | 676,850 | 678,820 | 682,000 | 684,180 | 687,360 | 689,540 | 692,720 |         |  |
| 손익(A-B) | 60,750  | 61,750  | 216,750 | 180,150 | 178,180 | 175,000 | 172,820 | 169,640 | 167,460 | 164,280 |         |  |

# 질의·서면답변서

|  |  |     |             |
|--|--|-----|-------------|
| 질의   | 이 치 욱 위원                                 | 답 변 | 평창군수 (축산과장) |
| 회의   | 제28회 평창군의회 (정기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 ('94. 12. 1) |     |             |
| <p>&lt;질의요지&gt;</p> <p>○ 한우경쟁력 사업에 관한 도의 지침이나 지시</p>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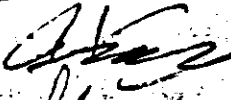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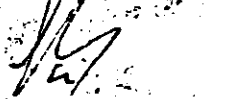
## <답 변>

- 지침 및 지시 : 따로붙임

畜産 51530-0111('93. 2. 15)  
 畜産 51530-131('93. 2. 15)

# 1993年度 畜産發展事業計劃及實施要領

| 담당자   | 계장  | 과장  | 부군수   | 군수   | 결재<br>일지  |
|---|---|---|---|--|---|
|  |  |  |  |  |  |

농능초지 계장   
 가축위생 계장 

江 原 道



# 다, 韓牛團地·牧場 및 營農組合法人 등 協業體 育成 示範事業

## (1) 目的

- 쇠고기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한우고기의 가격 및 품질 경쟁력 제고
- 한우사육농가 및 한우산업 기반 유지

## (2) 基本方針

- 한우사육에 적합한 입지와 유능한 경영주체의 확보
- 국내부존 사료자원의 이용 극대화
- 한우생산의 적정유지 및 양축농가 소득 안정

## (3) 事業計劃

- 사업주체 : 시장·군수
- 대 상
  - 한우사육농가
  - 한우영농조합법인 및 지역별 자생적인 한우사육 조직
  - 한우사육 단지를 조성하려는 개인, 단체, 조합등 법인
- 사업기간 : '93~'94(2년간)
- 사업비 (전국)
  - 총지원액 : 700억원
  - 축진기금 보조 또는 융자
  - 지원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 비율 및 지원조건은 「라. 세부실시요령(4) 지원기준」에 의함.

#### (4) 細部實施要領

| 추진내용  | 주관(협조)       |
|---|--------------|
| <p>(1) 사업개요</p> <p>〈한우단지 및 목장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우사육에 적합한 일정규모 이상 토지를 확보한(소유 또는 장기임차)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종합지원 체계를 도입, 한우를 제대로 사육할 수 있는 사람과 장소를 최대한 확보</li> </ul> <p>〈한우농가 영농조합법인등 협업체 육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업규모이하 양축농가들로 하여금 양축을 위한 농발법상의 「영농조합법인」(30두이하 농가로 구성)을 구성토록 유도하거나</li> <li>○ 지역별 자생적인 한우사육 조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한우사육 농민들의 협업체 촉진을 통한 경쟁력 제고</li> </ul> <p>(2) 대상자 구비요건</p> <p>〈한우단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지조건이 좋은 단지를 우선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육장의 규모가 크고, 조사료 생산기반 정비 및 용수 개발비가 적게 드는 곳을 우선 지정</li> <li>- 보다 장기간 소 사육을 할 수 있는 입지에 우선</li> </ul> </li> </ul> <p>※ 사육장 : 초지조성이 가능하거나 최소한 방목이 가능한 산지 내지는 평지</p> | <p>시장·군수</p> |

| 추진내용   | 주관(협조) |
|--|--------|
| <p>○ 과거 5년간 비육우 30두, 번식우 5두이상 평균적으로 사육을 한 경험자가 2인 이상일 것</p> <p>- <u>산목경험 확인 : 축산계장 또는 축협</u></p> <p>○ 단지가 실질적으로 공동투자에 의해 조성될 것</p> <p>- 1인의 지분이 단지참여자가 3人以下일 경우 단지 총 자산의 50%, 4인 이상일 경우 30%를 초과할 수 없음(이를 초과한 단지는 개인목장으로 간주)</p> <p>- 지분이 평등한 단지를 우선지정</p> <p>- 단지조성 투자분담 계획서 및 지분증명서 제출</p> <p>○ 번식우비율이 높은 단지에 우선</p> <p>○ 기왕에 소 두수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단지 및 충분한 소 구입자금을 확보하고 있는 단지에 우선</p> <p>- 사육두수 및 자금능력 확인 : 축협</p> <p>(한우목장)</p> <p>○ 가족노동력으로 사육하는 자</p> <p>○ <u>초지·사료포등 조사료 생산기반을 성우기준 두당 0.1ha이상 확보, 운동장은 번식우는 두당 3평이상, 비육우는 2평이상 확보</u></p> <p>○ <u>55세이하로서 5년이상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자</u></p> <p>- 단, 56세 이상일 경우 자녀가 같이 전업으로 종사할 경우 가능</p> |        |

| 추진내용  | 주관(협조) |
|---|--------|
| <p>○ 다음의 목장에 우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육규모가 번식우는 10-30두, 비육우는 30-100두인 농가로서 목표년도의 사육규모가 번식우의 경우 30두이상, 비육우의 경우 100두이상인 자</li> <li>- 경영일지를 기장하고 있는 농가</li> <li>- 현장훈련실시, 시범농장으로 개방등 다른 한우사육 농가를 선도할 수 있는 자</li> <li>- 번식사업</li> <li>- 평야지등 일반지역보다는 산간지대등 한우사육 여건이 좋은 지역</li> <li>- 위탁사육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목장</li> </ul> <p>〈한우농가 영농조합법인등 협업체〉</p> <p>○ 영농조합법인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기를 한 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합원자격을 가진 농민5명 이상이 작성한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등기소에 등기를 하면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우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자격은 ①당해 시군에서 3년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②조합법인사무소 소재지와 인접한 시군에 거주하면서 소 30두이하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농민으로 1가구 1인에 한함.</li> <li>• 정관의 작성은 농림수산부 고시 90-40호('90. 10. 17)의 「영농조합법인 정관례」에 따라 적절히 작성</li> </ul> </li> </ul> |        |

| 추진내용   | 주관(협조) |
|--|--------|
| <p>하되 ①명칭 ②목적 ③사업 ④사무소의 소재지 ⑤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⑥조합원의 가입·탈퇴 및 제명에 관한사항 ⑦조합원의 가입·탈퇴 및 제명시의 지분에 관한사항 ⑧출자액의 납입방법, 출자액의 산정방법 및 조합원 1인이 출자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에 관한사항 ⑨이익금의 처리 및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사항 ⑩적립금의 비율과 그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⑪회계년도와 회계에 관한사항 ⑫총회 기타의 의결기관과 임원의 정수·선출 및 해임에 관한사항 ⑬해산 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사유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정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립총회후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창립총회의사록」을 설립등기서에 첨부</li> <li>• 영농조합법인에의 출자는 농지, 농기계, 가축 및 기타 현물에 한하여 가능하며, 조합원 1인의 출자액은 총출자액의 1/3을 초과할 수 없음.</li> </ul> <p>- 설립등기를 마친 한우영농조합법인은 등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인설립 신고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p> <p>-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 감면, 부가가치세 면제, 지방세 감면등 법인에 대한 세제지원과 양도소득세 면제, 소득세감면, 상속세 면제등 조합원에 대한 세제지원을 함.</p> |        |

| 추진내용  | 주관(협조) |
|---|--------|
| <p>- 기타 영농조합법인에 관한사항은 구조27105-1445 ('91. 9. 2)의 「영농조합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참고(각도의 농어촌개발과 또는 농산과 비치)</p> <p>○ 협업체는 동일 목적추구를 위하여 자생적으로 모인 조직으로 상법에 의한 회사 설립등기를 하였거나 5인 이상의 농가가 회칙(운영규정)등을 규정하고 운영하는 모임체</p> <p>- 마을 공동목장등 공동사육장의 경우 제외</p> <p>○ 다음의 경우에 우선</p> <p>- 참여 농가중 번식사업영위 농가의 비율이 50%이상 이거나 참여농가 총사육두수중 번식우를 50%이상 사육하고 있는 법인 또는 협업체</p> <p>- 상표의 유명도 또는 대형 소비처에의 납품실적이 많은 법인 또는 협업체</p> <p>• 상표등록증서본과 대형소비처와의 계약서사본등 검증자료 제시</p> <p>- 한우사육여건이 좋은 지역에 위치한 법인 또는 협업체</p> <p>- 조직의 응집력이 좋은 법인 또는 협업체</p> <p>- 공동사육장</p> <p>○ 한우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공동활용시설 장비등의 지원은 「(4)의 (나)지원조건」의 지원한도에 불구하고 지원가능</p> <p>○ 협업체의 구성 농가가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한우 목장」의 대상자 구비요건에 적합하여야 함.</p> |        |

| 추진내용  | 주관(협조)                     |
|---|----------------------------|
| <p>(3) 대상자 선정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희망자는 「(4)의 지원기준」에 따라 별첨 「사업계획서 작성요령」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 지역의 <b>축협조합장</b>이 발행하는 사업계획서상 용자금 상당액의 <b>담보능력</b> 여부에 대한 의견서와 축산진흥기금의 사용여부 및 대출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의 축협은 사업희망자의 사업계획서 작성·수정·보완등에 최대의 협조를 하여야 하며, 담보능력에 대한 의견서와 신청시점에서 축산진흥기금 사용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할 경우 대출잔액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함.</li> <li>- 시장·군수·도지사 및 축협이 사업주체일 경우 직접 계획서 작성</li> </ul> </li> <li>○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시장·군수는 현지확인등을 통하여 대상자 구비요건의 충족여부, 사업계획의 타당성등을 검토한후 사업계획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계획서상의 지원기준 및 사업금액등이 타당한가를 검토하여 부적당한 경우 사업계획 조정</li> </ul> </li> <li>○ 도지사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한후 의견서와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여 농림수산부장관에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의회 개최등에 의한 관련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li> </ul> </li> </ul> | <p>도지사<br/>(시장·군수, 축협)</p> |

| 추진내용   | 주관(협조)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견서에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항목별 적정여부와 사업희망자의 사업수행능력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의견제시</li> <li>- 지방비 보조예산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3의 경우 추경으로 확보가능한 도 및 사업에 우선 지원(추경확보 가능여부 명시)</li> </ul> </li> <li>○ 농림수산부장관은 사업대상자를 확정후 해당 도와 축협중앙회에 통보</li> </ul> <p>(4) 지원기준</p> <p>(가) 지원내용 및 비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반시설 : 기금보조70%, 지방비보조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입로개설(사육장 10ha당, 진입로 0.5km한 지원), 전력, 용수, 목로개설등</li> </ul> </li> <li>○ 사육시설(축사, 창고, 관리동등) 및 장비 : 용자70%</li> <li>○ 초지조성 및 기성초지보완 : 보조50%, 용자50%</li> <li>○ 사료작물재배지원 : (종자대) 보조80%, 지방비20%<br/>(비료대) 보조50%</li> <li>○ 볏짚암모니아 처리지원 : 보조80%</li> <li>○ 사료작물저장용 사이로시설 : 보조50%, 용자 50%</li> <li>○ 조사료생산장비 : 보조30%, 지방비20%, 용자40%</li> <li>○ 조사료용 볏짚수거기 보급 : 보조50%, 용자40%</li> <li>○ 정화시설 : 용자100%, 간이정화시설은 보조30%, 용자 70%</li> </ul> | <p>시 장 · 군 수</p> |



| 추진내용  | 주관(협조) |
|---|--------|
| <p>○ 분노운반장비 : 보조50%, 용자20%</p> <p>○ 수송차량(생축 및 고기운반용) : 용자70%</p> <p>○ 한우고기전문판매장 개설비 : 용자70%</p> <p>※ 지원단가는 여타 축산사업의 지원단가를 준용하되 필요시 가감할 수 있으며, 위에 열거되지 않은 사업이라도 한우의 생산 및 유통등과 관련된 사업내용은 유사한 사업 지원비율에 따라 지원가능</p> <p>- 진입로 개설은 km당 100백만원, 사육장 ha당 용수는 9,700천원, 목로는 50백만원/km을 상한으로 함.</p> <p>※ 개인목장의 경우 기반시설 조사료생산장비, 분노운반장비 지원은 기금보조를 20% 줄이고 용자로 대체함.</p> <p>※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위탁영농회사등이 유희전담·한계농지·하천부지등 유희토지를 활용, 실수요자와 조사료생산·공급을 계약할 경우, 생산·저장·수송을 위한 시설 및 장비지원</p> <p>(나) 지원조건</p> <p>○ 용자조건</p> <p>- 용자금 금리는 년리 5%, 단 환경오염방지시설 및 장비는 년리 3%</p> <p>- 용자기간 : 3년거치 7년상환</p> |        |

| 추진내용   | 주관(협조)                     |
|--|----------------------------|
| <p>○ 용자지원한도</p> <p>- 개인은 1인당 2억원, 법인체는 자본의 200%, 축협 등 공공기관은 자기자본의 400% 한도내에서 지원<br/> 다만,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추가지원 가능</p> <p>※ 축산진흥기금을 기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농가, 법인체, 축협등에 대한 추가 지원은 상기 지원 한도내에 기용자액을 공제한 금액에 한하여 지원가능</p> <p>(5) 사후관리</p> <p>○ 시장·군수는 지원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산학협동등에 의한 지도방안 강구 추진</p> <p>- 수시방문 지도로 과도한 시설방지 및 사양관리지도</p> <p>○ 행정기관 및 축협은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10년이상 정상적인 사육상태 유지 의무 부여</p> <p>- 보조 및 용자금 교부시 조건 부여</p> <p>- 부여된 조건 위반시 지원금 회수조치</p> <p>○ 지원받은 농가에 대하여는 한우개량에 대한 정부등의 요구 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경영일지를 기장하도록 지도</p> <p>○ 관할 시·군 및 도에서는 10년간 사업계획서대로 사업이 추진되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p> <p>○ 축협에서는 사업추진 기성고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고 여신관계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p> | <p>시 장 · 군 수<br/>(추 협)</p> |



# 질의·서면답변서

|  |                                 |     |             |
|--|---------------------------------|-----|-------------|
| 질문   | 김낙운 위원                          | 답변자 | 평창군수 (산림과장) |
| 회의   | 제 28회 평창군의회 (정기회) 제 4차 행정감사 위원회 |     |             |
| <p>&lt;질의요지&gt;</p> <p>1. 솔잎혹파리 수간주사에 대하여 임업협동조합으로부터 하청 받은 작업단 내역은</p> |                                 |     |             |

<답변>

붙임 참조

# '94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작업단현황

(단위 : ha)

| 구분<br>조별 | 작업<br>조장 | 작업<br>인부             | 사업<br>면적 | 방제지역             | 비고           |
|----------|----------|----------------------|----------|------------------|--------------|
| 계        | 10명      | 남 : 136명<br>여 : 182명 | 2,500    |                  | 기간: 6.7-8.30 |
| 1조       | 최종영      | 남 : 20명<br>여 : 28명   | 387.28   | 평창읍 일원           |              |
| 2조       | 최종태      | 남 : 10명<br>여 : 8명    | 221      | 방림면 일원           |              |
| 3조       | 최종기      | 남 : 11명<br>여 : 14명   | 226.45   | 대화면 신리<br>용평면 일원 |              |
| 4조       | 윤용운      | 남 : 16명<br>여 : 16명   | 220      | 용평면 일원           |              |
| 5조       | 이상철      | 남 : 19명<br>여 : 14명   | 225.5    | 용평면 일원           |              |
| 6조       | 노득현      | 남 : 12명<br>여 : 16명   | 293.94   | 대화면 일원           |              |
| 7조       | 김승래      | 남 : 10명<br>여 : 20명   | 225.4    | 봉평면 일원           |              |
| 8조       | 김창용      | 남 : 9명<br>여 : 10명    | 123.33   | 진부면 일원           |              |
| 9조       | 김일하      | 남 : 15명<br>여 : 28명   | 359.49   | 도암면 일원           |              |
| 10조      | 박희열      | 남 : 14명<br>여 : 28명   | 217.61   | 진부면 일원<br>미탄면 일원 |              |